

第238回國會
(臨時會)

文化觀光委員會會議錄

第 1 號(附錄)

國會事務處

日 時 2003年4月15日(火)

場 所 文化觀光委員會會議室

【서면질의 · 답변서】

(질의서)

(문화관광부)

○高興吉 委員

<노 정부의 언론장악 의도, 정치기반 확대 목적>

○ 언론에 대한 악의적 선전 중지해야

최근 노무현 정부가 내놓은 일련의 대언론 방침들은 과거 5공 치하의 언론기본법 질서에서 진행되던 언론통제보다 더 심각하다는 지적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합브리핑룸 제도, 사무실 출입제한, 보도현황과악 보고, 오보사례보고, 취재응대 후 즉시 통보, 취재원 실명제, 오보대응 특별팀 구성 등 현 정부의 언론관과 방침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송두리째 뿌리 뽑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즉각 백지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창동 장관은 영화감독 출신이시니까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언론정책은 그것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했던 언론을 대상으로 했던 중요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극히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노무현 대통령과 이창동 장관의 발언에서 언론에 대해 상당히 왜곡된 그리고 편협한 사고에 사로잡혀 있다는 인상을 짙게 받았습니다. 대통령도 유사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특히 이창동 장관이 발표한 문광부 홍보업무 운영방안 말미에는 ‘기자와의 회식 등 자제’라는 항목이 있는데 ‘문광부 직원은 건전한 대언론 관계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장시간의 토론회 및 간담회 등)를 제외하고는 기자와의 회식 등은 가급적 자제하도록 함.’이라고 명시돼 있습

니다.

본 위원은 이 문구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언론인 출신 위원으로서 저부터가 모욕감을 느끼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창동 장관은 기자들은 회식이나 하면서 정보를 빼내고 또 그 기사를 가지고 거래나 하는 부도덕한 집단이라는 사고가 지배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것을 공식화시켜 그렇게 몰아가고자 하는 인식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일부 문제 있는 기자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언론 주무장관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지 마치 모든 언론이 그런 것처럼 공식문서를 통해 침소봉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창동 장관이야말로 언론에 대한 악의적 왜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창동 장관의 역작이라 할 수 있는 ‘박하사탕’이나 ‘오아시스’등이 전 국민적 관심을 끌 수 있었던 것도 그 영화들의 작품성을 외면하지 않고 높이 평가해 준 언론의 역할도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이러한 언론의 순기능은 외면한 채 장관에 대한 비판을 한다고 해서 또 그것이 고통스럽다고 해서 언론의 취재를 봉쇄하겠다는 발상을 하고 악의적 왜곡을 한다면 이창동 장관이야말로 통제받지 않는 독재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현재 언론에 대해 가해지고 있는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선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 비판 기능 상실한 언론은 ‘사진 들어간 회의록’에 불과

‘문광부 홍보업무 운영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방침이 이창동 장관이 취임한 지 보름만에 발표가 됐다는 것인데 좀더 정확하

게 표현을 하자면 장관은 이 방침을 나눌 동안 토론을 거쳐 직접 작성했다고 했으니까 취임하자마자 언론을 어떻게 손봐야 하나 하는 공리만 했다는 결론입니다. 그것도 노무현 대통령이 발표를 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발표를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설사 이 방침이 옳다 하더라도 그것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국정홍보처가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각 부처가 시행하는 것이 정상인데 오히려 문광부가 앞장서서 이런 방침을 발표했다는 것은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도 문광부는 애초부터 상주기자실이 없었고 문광부의 성격상 기자들은 현장취재 위주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문광부 출입기자들은 공연이나 영화, 스포츠 등을 직접 보고 그것을 기사로 쓰면 되기 때문에 주요 현안이 없을 경우에는 문광부의 입장은 브리핑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출입기자들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기자들이 무시로 사무실을 출입하는 경우도 거의 없을 뿐 아니라 현재도 문광부 방침과 별 차이 없이 취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광부가 나서서 그런 홍보방침을 세우지 않아도 상호간에 별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마치 언론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면서 그런 방침을 발표한 것은 언론과의 갈등만 부추기고 취재활동에 제약만 가해지고 있다는 주장이 일선 기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관은 오늘도 이 방침이 언론보다는 공무원들에 대한 지침이고 사실은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관료 사회는 서류로 말한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런데 문광부가 발표한 홍보업무 운영방안에는 장관이 주장하는 내용과 전혀 다르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결국 장관은 말로는 언론에 대한 개방과 공평, 정보공개를 주장하지만 공무원들이 느끼는 것은 취재에 응하면서도 상당한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취재시스템의 변경은 취재관행의 변경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취재시스템으로 바뀔 경우 기자들은 제한된 환경에서 취재를 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적극적인 취재보다는 정부가 걸러서 브리핑해 주는 정보만 다룰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 정부는 대언론관계 정상화라고 하지만 현실은 공무원

들이 취재자체를 거부하게 되고 언론은 공보관 브리핑 외에는 더 이상 심층취재가 불가능해 모든 언론은 정부가 주는 획일적인 기사만 받아쓰게 되는 것입니다. 비판기능을 상실한 언론은 '사진 들어간 회의록'에 불과한데 현 정부는 이러한 언론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언론의 취재시스템을 인위적으로 바꿈으로 인해 언론의 취재환경에 족쇄를 채우고 정부가 마음먹기에 따라 보도통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시입니다. 서울시가 대변인제로 전환한 후 대변인이 정책입안과 정상에 있었던 뒷이야기까지 상세하게 브리핑해 줌으로써 상당히 도움이 됐으나 반면에 공무원들의 눈치보기로 인해 심층취재가 거의 안 됐다는 것이 출입기자들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문광부는 한발 더 나아가 취재원에 대한 익명처리를 지양해 달라거나 취재에 응한 공무원은 공보관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는 등의 방침을 세움으로써 아예 취재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도 언론의 취재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요 지나던 소가 옷을 일입니다. 지금 일선 기자 대부분이 문광부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불만을 털어 놓고 있는 상황에서 장관만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는 것은 '우물 속에서 하늘을 보는 격'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지금 즉시 문광부의 언론홍보 운영방침 중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사무실 출입제한, 취재원 실명제, 취재응대 후 통보제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실명제 요구하면서 인터넷 매체 폐해는 외면

다음으로 취재원 익명성 지양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익명성의 폐해가 가장 심한 것이 인터넷 언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견해와 다른 글에 대해서는 테러에 가까운 극언과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얼마전 한 인터넷 신문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 본 위원의 홈페이지는 물론이고 해당 언론사의 사이트에는 욕설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위원에 대해서 단 1%의 근거도 없는 소설 이야기를 써서 본

위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 법적으로나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있는 것은 그 익명성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만만찮게 제기되고 있고 본 위원 또한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올초 피투성이라는 ID를 쓴 한 철공소 직원이 민주당 의원들의 살생부를 올려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고발을 당한 사건까지 있어 상당한 논란을 빚은 적이 있었습니다. 반면 우리당 의원들에 대한 살생부 역시 게재됐지만 저희 당은 인터넷에 익명으로 올린 글을 가지고 법적 대응을 한다는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창동 장관은 이러한 인터넷 매체의 폐해에 대해서는 별반 언급이 없고 오히려 특정언론에 대해서는 자신에 대한 부당한 공격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언론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조치들을 내놓았습니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과 이창동 장관이 주장하는 언론의 자유는 자신에게 유리한 보도를 하는 언론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이 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독립 저해하는 문광부 영상정책권 강화 방침 - 향후 방송통신위원회는 속빈 강정으로 전락할 가능성>

이창동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맞춰 가칭 방송통신위원회를 구성한 후 인허가·규제·심의 등 방송정책권은 방송통신위가 맡고 정부는 문화적·산업적 측면에서 영상 콘텐츠 진흥정책을 펼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핵심에 있는 방송통신위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결정도 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문광부에서 방송영상 콘텐츠 진흥정책을 담당하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기둥도 세우지 않은 집에 문짝을 달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위원회와 통신위원회를 통합하는 이유는 방송과 통신 그리고 영상콘텐츠의 경계가 모호해지기 때문에 함께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는 한 분야를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이고 전체적

인 큰 틀을 마련한 후 각 부처의 역할을 결정해야 하며 세부적인 역할을 규정할 때 역시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아직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시작되지 않은 시점에서 문광부가 방송영상 콘텐츠 정책을 담당하겠다는 것은 일단 챙기고 보자는 생각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현행 방송법을 제정할 때도 정부와 여당은 방송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문광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었던 원안을 문광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바꿈으로써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방송법의 취지를 왜곡하여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보였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본 위원은 문광부가 영상 콘텐츠 정책을 담당하겠다는 의도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어떻게 해서든지 현재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처사이며 나아가서는 방송통신위 자체를 속빈 강정으로 전락시키려는 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문광부는 지금이라도 방송영상 콘텐츠 정책을 담당하겠다는 주장을 철회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상적인 구성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월드컵 잉여금 배분 신중하길 - 총선 대비 선심용 오해 받지 않도록 해야>

최근 문광부에서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월드컵 잉여금을 월드컵 기념 사업에 집중하지 않고 축구 발전과 체육진흥사업에 투자하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잉여금을 집행하는 과정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태의연한 나눠먹기식 집행으로 끝나버릴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

이번 문광부 업무보고의 월드컵 잉여금 배분 계획을 보면 올해 6월까지 모든 잉여금을 배분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잉여금을 집행하는 주체인 월드컵조직위원회가 6월에 해체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과 2~3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각 기초단체의 계획서를 수집하여 검토하고 집행하기까지 제대로 시행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물론 이론적으로야 5월 초까지 지원서를 받고 5월 말에 심사하여 6월에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만 기간이 짧은 데다가 모두가 인정할만한 정확하고 공정한 심사의 기준이 모호해 자칫 특정 지자체에 대한 특혜 시비가 일수도 있는 만큼 잉여

금의 집행은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급하게 일정을 짜서 잉여금을 나눠먹기식으로 집행한다면 정부와 여당은 이번 잉여금의 집행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집행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급하게 잉여금을 집행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잉여금을 체육진흥기금에 포함시킨 뒤 천천히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문광부에서는 일단 기금에 포함시키고 나면 마음대로 쓸 수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문광부가 계획하고 있는 배분계획에도 유소년 및 여자축구 육성에 200억 원을 할당하고 이를 체육진흥기금에 편입하여 사용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또 월드컵 개최 결과로 1630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했다고는 하지만 월드컵 경기장 건설을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부터 차입한 2103억 원의 상환이 불가능해 졌고 코오롱 TNS월드의 부도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하청업체에 대한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1630억 원이 순수한 잉여금이라고 하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이상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본 위원은 현재의 월드컵 잉여금을 축구 인프라 조성 등의 축구발전과 체육진흥사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월드컵 잉여금 1630억 원을 체육진흥기금에 포함시켜 가계의 의견을 좀더 경청한 뒤에 신중하게 집행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저작권료 징수 규정 협의 더 필요하다 - 정부가 직접 개입해 가격을 정하는 방식 자체해야>

인터넷상에서 저작권이 문제된 이후 영화, 게임산업 등은 많은 인터넷 영역에 있어 유료화가 정착되었습니다. 그러나 음악산업은 출판이나 영상물에 비해 훨씬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어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하여 음반 산업 침체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침체된 음악산업의 활성을 위해 온라인 음악산업의 유료화와 저작권의 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허가된 신탁관리단체의 대표성과 사용료징수의 타당성에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신탁관리단체의 대표성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음원제작자협회(이하 음제협)는 음원권리자들에 의해 선출된 기관이 아닌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허가받은 기관입니다. 음제협이 음반 제작자들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음원권리자들과의 협의와 의사가 반영되어야 함에도 이런 기본적인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정부에 의해 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음원신탁문제는 향후 음반 산업계의 방향을 설정할 사안 중 하나이므로 그 처리과정과 음제협의 대표성은 명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음제협이 신탁관리단체로서 대표성을 획득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음원 사용료 징수의 객관성 문제입니다. 음원 사용료 기준은 기존 음악시장의 문제점이 온라인과 연계되면서 더욱 복잡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 간과되고 있습니다. 음원 사용료 징수는 차후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음악산업 통합의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범망을 피해 있는 모 음악사이트의 경우 mp3 교환에 대한 징수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나 mp3 서비스가 유료화 될 경우 네티즌의 반응이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업체의 현실을 반영한 시장조사없이 여론조사와 저심위의 심의결과만 반영되어 정부에 의해 임의적으로 정해진 사용료 징수는 타당성을 획득할 수 없다고 봅니다.

빠른 저작권 안정화를 위해 어느 정도 정부의 조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현재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진 사용료 징수 규정이 객관적인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 갑니다.

따라서 철저한 시장조사와 관계 업계의 여론 반영 등 조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정하는 방식은 자체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단기적으로 정부의 방침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장기적으로 음반산업의 활성화와 인터넷상에서의 안정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독립기념관, 민족기념관으로 명칭 변경 및 책임운영기관으로의 방향전환 모색 필요>

“외침을 극복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 온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에 관

한 자료를 수집·보존·조사·연구”하여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과 국가관을 정립”을 위해 설립된 독립기념관은 21세기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민족의 정체성 회복과 민족정신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민족혼을 교육하기 위한 독립기념관이 국민의 외면과 정체에 빠져 제 역할을 못하고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독립기념관의 문제점 중 2002년도 가결산에 따르면 결산 총액이 99억 7000만 원으로 정부 지원금과 자체 수익금 비율이 80:20 정도로 정부지원에 의존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20%에 불과합니다. 특히 운영기획의 부족으로 만성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립기념관 교육 프로그램과 현장이벤트가 활성화되지 않아 기념관을 여러 차례 방문할 메리트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 외에도 기념관 자체의 볼거리 제공부실, 시설이용의 불편과 피로감, 음식·숙박·관광 등 연관 요소부재, 전문인력 전문성부족, 공연전시 등 프로그램·이벤트 부족 등 자체 내 운영 미숙이 지적되고 있어 수입증대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으로 보입니다.

독립기념관으로 개원한 특성상 전시관 7개 중 민족전통관은 하나에 불과하고 그나마 선사시대부터 1850년대까지 우리 겨레의 역사와 문화, 국난 극복 등의 자료를 전시하고 있어 허술한데 비해 일제하 전시관은 무려 4개로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올바른 우리 역사의 인식이 될 수 없는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사의 올바른 인식을 위하여 현 전시관을 재배치해야 할 필요성이 다분하다고 보여집니다.

현 독립기념관은 1974년 ‘민족박물관’ 건립계획이 추진되다가 담보상태를 보이던 중 1982년 일본 교과서의 역사 왜곡사건을 계기로 ‘독립기념관’으로 수정 추진된 것으로 지금이라도 역사의 긴 안목에서 명칭을 변경하고 총체적 운영미비의 시점에서 독립기념관의 새로운 방향으로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독립기념관의 명칭을 “민족기념관”으로 변경하고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단체에 경영을 맡기는 등 생산성과 경쟁력을 갖춘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문광부 입장은 어떠한지 밝혀 주십시오.

또 구체적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적자재정

을 탈피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조선, 삼국시대, 고려, 조선 등 우리 한반도의 역사흐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의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교육 프로그램과 다양한 이벤트 등 소프트웨어의 활성화를 위하여 젊은 문화전문가와 기획자를 운영에 참여시켜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독립기념관이 국내인에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해외 교포 자녀에게 한민족으로서의 긍지를 심어줄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체험 관광명소로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

○金一潤 委員

<문화재 정책은 적극적인 보존과 복원을 하고 활용을 함께 해야>

○ 우리나라 문화재정책은 문화재보호법의 제정 이후 지금까지 일관되게 문화재의 원형보존 입장만 강조하는 폐쇄적이고 비능률적 정책만 고수해 왔다. 그 결과 국민들은 문화재라면 생명력이 없는 화석쯤으로 “보존은 곧 나에게서 피해”라는 인식을 갖게끔 했다.

어느 학자는 “문화유적이 정신적 문화자산으로나 문화산업적 재원으로 십분 발휘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원형성, 생동성, 장소성, 활용성이라는 네 가지를 겸비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문화선진국들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결론이다”라고 했습니다.

역사와 문화 그리고 자연 현장이 관광산업의 주요한 자원임은 누구나 인정하면서도 실제로는 보수 및 복원에만 급급하여 네 가지 중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결여되므로 인해서 문화유산과 관광이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 문화유산의 상품화는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더 이상 예산 타령만 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의 문화재정책도 폐쇄적인 보존에서 적극적인 보존과 복원을 포함하는 활용측면을 반영하여야 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한다.

○ 중국과 일본의 문화재보호정책은 ‘효과적 보호와 합리적 이용’이라는 방침으로 발전하고 있고 본 위원 역시 문화재는 인류의 문화유산인 만큼 문화재정책은 정부가 국가경쟁력의 측면에

서 적극 투자하여 보존하고 복원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조하고 활용하는 정책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문화재청이 인식의 대전환이나 정책의 전환 없이 현재 그대로 답습한다면 문화재청이 문화유산청으로 승격해야 하는 아무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문화재청 또한 문화재정책에 대한 인식 대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문화재청의 업무보고에 “문화재의 효율적 활용”을 정책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는 점은 다행스러우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나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청장, 문화유산의 적극적인 보존과 복원을 통한 적극적인 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수립과 관련하여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 청장, 문화유산이 국가의 상징과 경제의 수익원으로 당당히 자리를 잡고 있는 문화산업국가인 그리스, 이집트 등 외국의 경우를 보면 한결 같이 정부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 있다.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의 경우 복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현 정부의 대선공약인 황룡사와 미륵사의 복원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 바람.

청장, 문화재에 대한 인식은 달라지고 있다. 점의 개념에서 면의 개념으로, 문화재 보존에서 주변환경까지, 문화유산에서 자연유산을 포함하는 것이 문화선진국의 정책 방향이다.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고도보존및정비에관한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 우리나라의 전통건축을 비롯한 대부분의 역사유적은 주변의 자연환경과 어우러져 일체를 이룰 때 그 가치가 제대로 발휘되는 것입니다. 즉 장소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최근 역사유적의 보존 개념을 ‘점’의 보존에서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면’의 개념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타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 그래서 더 늦기 전에 고도부터라도 문화유산 보존뿐만 아니라 역사환경 및 자연환경을 함께 보존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이 고도보존 및정비에관한특별법이다. 더 이상 고도보존정책이 확립되지 않고 미룬다면 10년 이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것을 청장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청장, ‘고도보존특별법’에 대한 청장의 의지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鄭鎭碩 委員

<취재원 원천봉쇄는 언론의 존재이유를 무시하는 것이다! - ‘Deep Throat’ 미국의 민주언론을 수호했다! - 익명의 정보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 문화관광부의 ‘홍보업무 운영방안’의 ‘취재원 접근 제한’은 정부정책 결정에 대한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 무력화를 노린 것이다.

○ ‘국민의 알권리’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현 정부의 ‘취재원 봉쇄 정책’은 언론자유라는 민주적 정통성을 위배한 무책임한 권위주의적 발상이다.

○ 70년대 초반 미국의 민주주의를 강건하게 만든 워싱턴포스트지의 ‘워터게이트’ 특종보도는 익명의 정보원(source) ‘딥 스룻(Deep Throat)’의 제보에 따른 탐사적 추적보도를 통해 미국 대통령을 사임케까지 한 전대 미문의 사건이다.

○ 어째서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입사 2년차의 신참 기자 밥 우드워드와 칼 번스타인이 어찌하여 권력 최상층부의 은밀한 비밀을 파헤칠 수 있었을까?

○ 닉슨 대통령을 물러나게 만든 워터게이트 사건은 워싱턴포스트 기자에게 비밀정보를 흘려준 익명의 정보원(source) 이른바 ‘딥 스룻(Deep Throat : 깊숙한 목구멍)’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 ‘취재원의 중요성’을 인식시킨 워터게이트 사건은 발생 30년이 지난 지금도 ‘딥 스룻(Deep Throat)’의 정체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오늘날 미국 민주주의의 도약을 가져온 워터게이트 사건은 30년 동안 밝혀지지 않고 있는 취재원의 정보제공으로 나타난 것이며 무명의 워싱턴포스터지를 일약 세계 일류 신문으로 성장케 한 것이다.

○ 이번 문화부의 홍보방안에 적시한 취재원 원천봉쇄 조치는 언론존재 이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언론의 역할수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익명의 정보원(Source)에 대한 취재 봉쇄는 절대 있어선 안 될 것이다.

○ 취재 제한을 두어 언론접근을 사실상 봉쇄하는 이번 탁상지침은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언론본업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국민의 알권리 위해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원 접근과 정부의 성실한 정보공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자유 보장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가치다. 사회의 공기인 언론을 적대시하고 통제하고 편가르길 한다면 어떻게 국민통합을 할 것이며 국민 여론을 수렴할 것인가! 이는 국민 기만행위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답변을 바란다.

〈진정한 언론개혁의 시작은 ‘왜곡된 언론관’을 ‘정상적 언론관’으로 바로 잡는 것에서부터〉

○ 이스트 필름 명예남 대표와 현 문화부장관인 이창동 감독은 2001년 9월 영화인 안티조선운동 선언에 동참했다. 이에 따라 영화 ‘오아시스’를 찍을 때 조선일보에 보도자료를 제공하거나 취재협조를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조선일보와 관련된 문화행사에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장관의 ‘정부와 언론의 관계’에 대한 이데올로기는 무엇인가?

‘안티 조선이 곧 언론개혁’이라 생각하나?

사건적으로 특정언론에 대한 적대감이 노골적으로 깔려있는 장관의 견해를 갖고 언론정책의 주무 부서답게 모든 언론에 대해 편협적이지 않은 언론정책을 수행해 나갈 수 있겠나?

무릇 위정자란 어느 한쪽의 자기 생각만을 원칙이라 주장해선 안 된다. 친정권이냐 반정권이냐는 이분법적인 생각은 위험한 발상이다.

진정한 언론개혁은 참여정부의 관료사회가 ‘왜곡된 언론관’에서 정상적 언론관을 갖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홍보업무 운영방안 관련

청와대가 “대통령 지시”라며 ‘언론보도 성격을 초등학교 담안 고르듯 5지선다형으로 단순평가해 매일 아침 보고하라’는 지시를 정부부처 공보관실에 내렸다. 정권을 비판하고 치부를 밝히면 ‘악의적 비판’이 되고 ‘오보’가 되는 것인가? 장관의 생각은 어떠한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5가지로 분류 보고하라는 청와대 지시는 넌센스다. ‘공정’과 ‘단순’은 무엇이며 ‘건전 비판’과 ‘악의적 비판’은 누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결국 정권에 비판적인 특정언론을 감시하고 옥죄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 아닌가?

문화부가 앞장서 기자실 폐쇄, 브리핑룸 설치라는 홍보운영 방안으로 취재 제한 조치를 한 후 국정홍보처가 전 부처에 이러한 홍보방안을 명했고 아울러 국정홍보처 자체에 ‘신문보도 대응 태

스크 포스팀’구성을 하는 등 최근 일어나는 이 정권의 일련의 언론관련 조치들은 가히 ‘언론과의 전쟁선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이 정권의 언론정책과 관련하여

1. 대통령의 ‘오보와의 전쟁’발언과 때를 같이해 기자실을 폐쇄, 언론사의 개별 취재 금지 등을 규정한 문화관광부의 ‘홍보 운영방안’은 모든 언론매체들로 하여금 정부가 깔아놓은 보도지침의 레일 위로만 굴러가도록 예속시키려는 시대착오적인 언론압살정책이다. 언론의 주된 역할과 책무는 권력에 대한 감시·비판이라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는 상식이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나? 언론의 존재이유는 독자인 국민을 대신해 권력을 감시·비판하는 데 있다.

2. 지난 4월 2일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연설에서 ‘언론을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라고 했다. 장관께서는 대통령의 이 발언은 어떤 의미로 해석하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아래서 언론통제는 당연히 독자의 몫이다. 정권은 당연히 언론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엄중한 감시 아래서 국정을 잘 수행해 가는 것을 책무로 해야 한다. 권력이 비판에 대한 인내력 수용력을 잃으면 민주정치는 위태로워질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정권이 할 일은 비판이 아니라 정책이다. 언론개혁을 철학은커녕 아무런 정책도 없이 세무조사에 들어간 김대중 정권의 천박성은 산 교훈이다.

3. 여론의 획일화를 막는 언론정책은 유럽 여러 나라들에서 실천에 옮긴지 오래다. 엉뚱하게 홍보방안 따위로 언론권력에 설 때가 아니다. 노 대통령 자신은 물론 문화관광부장관, 국정홍보처장, 청와대 홍보수석 모두 과연 언론정책이라는 개념조차 지니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장관의 언론정책 이데올로기는 무엇인가?

사회의 공기인 언론을 적대시하고 통제하고 편가르면서 어떻게 국민통합을 할 것이며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현 정부의 언론정책은 국민대통합보다는 국가분열과 사회갈등을 더욱 부채질하고 증폭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크다. 현 정부가 참여정부가 아니라 갈등정부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떨쳐버릴 수 없다.

이같은 시대착오적인 언론정책은 언론을 담당

하고 있는 청와대, 문화관광부, 국정홍보처의 국정미숙의 산물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4. 노무현 대통령의 편향된 언론관이 상당히 걱정스럽다.

“국정원의 국내정치 보고를 받지 않겠다.”, “일부 기자들과 나가서 술마시고 헛소리하고...” 취임 후 짧은 기간 참 많은 어록과 행정을 남겼다.

젯빛 최루가스가 뒤덮은 거리를 질주하고 민초들의 팍팍한 삶을 보며 살아온 대통령에게 권력기관, 재벌, 언론 등 세상 힘있는 모든 객체가 개혁대상으로 보였을 법도 하다. 대통령의 사고 이면에는 사물을 흑백으로 도식화하는 그레야만 선명성이 부각되는 운동권 논리가 다분히 깔려 있어 보인다.

더욱 이해 못할 일은 노 대통령의 친정권이나 반정권이나는 이분법적인 생각에 편승하는 장관의 행태다. 대통령이 좀 튀더라도 참모나 각료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그런데 장관께서는 “특종을 찾으려 거든 이제부터는 쓰레기통을 뒤지라고?”, “이번 파문으로 공격받고 힘들어지고 하니 까 장관할 만 하다. 의욕이 생긴다.”고 기염을 토한 것으로 안다.

장관이란 자리가 도전과 응전으로 게임하듯 즐기는 자리라 생각하나? 직무에 건전한 생각을 갖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일 것이다. 장관이란 자리가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에 아무에게나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행정서비스를 개선해서 국민에게 보답할까를 궁리하는 것이 장관의 도리가 아닌가 싶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홍보업무 운영방안 관련 - 취재 지침 공급자 중심, 국민의 알권리 제한 우려

1. 이번 홍보방안은 실제로 주요 신문과 방송에만 공개되는 폐쇄적인 기자실 제도의 개선방향은 옳다고 본다. 인터넷 신문과 잡지 등 새로운 미디어와 군소 신문 방송의 기자들의 기자실 접근 자체가 용이하지 않기에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의 개방, 균형, 정보공개의 홍보원칙과 정례브리핑을 통한 취재지침은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각 부처에 제대로 된 홍보 교육을 받은 전문인이 부족하고 해당 공보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조직문화와 시스템 속에서 사전 신고제를 통해 기자의 공무원 접근을 막는 취재지침은

현실을 무시한 지나친 정보통제임에 틀림없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나?

청와대의 경우를 보듯이 송경희 대변인의 자질 및 훈련부족 문제 때문에 정례 브리핑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방안은?

2. 이번 문화부 ‘홍보업무 운영방안’의 기자 출입제한 방침은 뉴스 공급자 중심의 언론관이 투영된 발상이다. 신문사를 적대시하고 기자에게 자료제공하는 공무원을 적대시한다면 현 정부의 온갖 비판은 사라지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3. 취재시스템의 개선보다 정보공개와 행정절차 투명화가 우선이라는 고건 총리의 지적은 적절한 통찰이었다. 무엇보다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바람직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직무상 비밀이 아니라면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개할 수 없는 정보를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제한해 그 외의 정보는 모두 공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보공개 제한이 국익이 아니라 기자 취재 제한, 정권 안보, 권력층 비리 보호 차원에서 이뤄져선 안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4. 이창동 문화부장관이 내놓은 ‘홍보업무 운영방안’이 취재 현장에서 무차별 취재 거부로 현실화되어 공무원들 입에 자물쇠를 채우는 조치였음을 실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지난 3월 조선일보 기자가 통일문학전집 발간 소식을 취재해 사실 확인을 요청하자 문예진흥원 측은 “나중에 기자들을 부를 테니 그때 쓰라”고 보도시점까지 지정해가며 거부했다. 또한 문화재청 직원은 훼손이 우려되는 유물 수장고를 보여달라는 한국일보 기자에게도 ‘사무실 방문 불허’ 조항을 내세워 거절했다고 한다. 이 어이없는 사태는 이 장관이 내세운 ‘정보 공개’원칙이 그저 하기 좋은 말이라는 걸 단적으로 말해준다. 이에 대한 장관의 답변 바란다.

5. 기자들이 공보관을 통해서만 공무원을 만날 수 있도록 한 것은 자유언론 국가에서는 유례가 없는 정보 접근 제한 조치라는 비판이 있다. 공보관은 취재신청 폭주나 다른 일정 등을 이유로 공무원과 기자의 면담을 조정하게 될 것이고 이

는 다름 아닌 특정기자나 특정 사안에 대한 기피 혹은 선호 등으로 이어져 언론 통제의 결과를 낳을 것이 불보듯 뻔하단 말이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6. 해당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감시받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기자를 만나게 되므로 자연히 발언에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언론과의 긴장관계가 자칫 공무원들 복지부동의 핑계만 마련해 주는 것 아닌가? 이는 공무원으로서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국민으로서는 알권리를 각각 침해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7. 공무원을 만나는 장소를 사무실 이외의 장소로 제한한 것도 우리의 전반적인 행정기관 이용현실을 감안할 때 납득하기 어려운 차별 조치다. 현재 각종 민원인들은 규정된 신분확인 절차를 거치면 사무실 방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유독 언론인만 출입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언론인을 불순분자로 여기고 있거나 권력을 ‘비밀의 장막’ 아래 감추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8. 정례 브리핑제와 개방형 기자등록제 도입은 잘만 운영된다면 환영할 만한 일이다. 브리핑을 통해서만 정보가 공급될 경우 권력 감시보다는 정권 및 정책 홍보용 정보만이 넘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또한 기자 등록제 또한 등록취소 등을 남용할 경우 언론통제수단이 될 위험도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강제하지는 않겠다.’고 했으나 무시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취재응대 사후 보고제도’ 엠바고 제도 폐지 등도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에 대한 대책은?

9. 공보관을 통한 사전 예약제 자체가 사후 보고제와 같은 제약을 가져올 수 있다. 이는 취재를 사실상 봉쇄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취재의 자유가 제한되면 결국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방안은?

10. 우리는 많은 문제점을 가진 개편안이 일사천리로 강행되고 있는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의견을 갖고 있다. 정부가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는 관련 당사자 등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필수적 절차이며 여론수렴 과정을 거쳤더라도 준비부족 등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정책은 경과규정을 두거나 시행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상식적인 수순

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언론계, 학계, 시민 등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언론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방안은?

11. 대통령이 비판적인 몇몇 신문에 적개심을 표출하고 있다. 이번 문광부의 홍보운영방안에 대해 대통령과 가장 코드가 맞는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이 ‘안티 조·중·동 시스템’을 구축하려 한다는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안다. 문광부 방안의 배후가 대통령인가? 장관이 현 정권 언론 탄압의 나팔수를 자처했나?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12. 장관께서는 지난 10일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부당한 비판과 공격을 받아 피해가 크다”며 그 실태를 공개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안다. 그간 장관으로 재임기간동안 언론으로부터 어떠한 부당한 공격과 비판을 받았는지 답변해 주기 바란다.

13. 입법·사법부에 대한 언론접근은 거의 제한이 없다.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는 개방형이고 사법부도 재판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언론의 취재공간, 기자실이 유지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유독 행정부만 기자실을 없애 언론접근을 사실상 봉쇄할 방침이라고 한다.

국민입장에서는 입법·사법부보다 행정권력에 대한 감시가 더 중요할 수 밖에 없다. 국민 세금의 대부분을 쓰고 각종 인허가 업무를 독점한 행정권에 대한 견제·감시는 언론의 본령이자 의무다. 기자들의 발을 묶고 정부 대변인이 한두차례 브리핑으로 던져주는 정보로 만족하라는 것은 언론을 떠나 국민에 대한 도리라 보기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14. 통합브리핑제가 선진형이라는 주장은 틀리지 않다. 그러나 충실한 브리핑과 정직한 정보공개가 전제되어야 한다. 브리핑제도를 첫 도입한 청와대 홍보시스템의 혼선은 좋은 예다. “참여정부”라면서 언론에만 “차단”정책을 고집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이에 대해 답변 바란다.

15. 고건 국무총리가 정부중앙청사 통합 브리핑실의 별관 설치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전후 사정은 참여정부 총리의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차관급인 홍보처장도 언론대책을 직접 지휘하는 대통령의 뜻만 좇으면 된다는 생각뿐, 그 눈엔 총리 모습이 보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나랏일엔 대통령이 할 일이 있고 총리나 장·

차관할 일이 따로 있다. 국정 조정기능이 실종되면서 정부 정책이 잇따라 혼선을 빚고 있는 것도 각자 격에 맞는 국정 분담의 제자리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정홍보처라는 국가기관의 존재목적이 무엇이라 생각하나?

지난 3월 14일 장관께서는 문화부의 홍보운영 방안을 밝혔는데, 이는 국정홍보처의 정부홍보방안을 밝힌 후에 했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지 묻고 싶다.

문화부가 먼저 성급하게 홍보운영 방안 정책을 발표해, 각 정부부처의 홍보업무에 혼란을 부추겼고 부랴부랴 지난 3월 27일에 홍보처가 각 부처의 공보관회의를 주재한 것 아닌가? 대통령과 코드가 일치한다는 장관이 정권의 나팔수 역을 자초한 것 아닌가?

16. 언론의 기본은 취재인데 정부는 취재를 제한하면서 언론자유는 문제없다는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다. 취재를 이런저런 이유로 제한하다보면 그것이 언론탄압으로 발전하게 된다. 기자들의 직접 취재를 막아 정부의 브리핑만 받아 쓰도록 하고, 정보공개도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한다면 민주국가라 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견해는?

□ 독립기념관 이사회의 조선일보 윤전기 철거 결정 문제

○ 지난 17일 독립기념관 이사회(이사장 윤경빈 전 광복회장)가 사회문화운동전시관에 전시 중인 일제시절 조선일보 윤전기를 철거하고 미국 하와이 ‘대한인 국민회’가 1910년쯤부터 미주독립신문을 찍으며 항일운동에 사용한 윤전기를 대신 전시하기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 물겠다.

○ 한 나라의 역사를 후손과 미래에 증언하는 전시물의 운명이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과정에서 정부 당국과 독립기념관은 일관된 원칙도 소신도 없었다.

독립기념관 집행부 측이 지난 1년간 안티 조선 세력의 집요한 ‘철거’요구에 대해 사실상 ‘철거 거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던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틀 후인 2월 27일 명계남·문성근씨 등이 ‘조폭 언론 진압’등을 목표로 새로운 시민단체를 출범시키며 독립기념관 윤전기 철거를 활동 지침 중 하나로 내세운 것을 계기로 철거 압력은 급물살을 탔고, 3월 1일 높이 40m짜리 기증기를 동원한 시위가 있는지 16

일만에 전시자문위원회가 아닌 이사회에 의해 철거가 전격 결정돼버렸다.

○ 권력의 위세를 업은 시민단체에서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역사의 일면만을 들먹여 철거할 수 있다는 논리가 아닌가?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에 기여한 ‘노사모’ ‘조아세’ 등이 시위를 하는 가운데 이창동 문화관광부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특정언론 길들이기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짙다고 보는데? 독립기념관의 상급 지휘 감독 기관으로서 주요 쟁점들을 보고 받아온 문화관광부 장관과 무관치 않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 바란다.

○ 독립기념관 이사회가 독립기념관에 17년째 전시 중이던 조선일보 윤전기를 철거하기로 한 것은 국민의견 수렴과정이나 절차를 볼 때 매우 정치적 결정이라 생각된다. 이 안건은 이미 국회에도 청원이 되어 있는 만큼 국민적인 공론과 공감대를 형성해 재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독립기념관 전시물에 대해서는 ‘전시 자문위원회’에서 다루던 관행을 깨고 갑자기 이사회 안건으로 집어넣어 결정을 내린 것은 절차상 잘못된 것 아닌가?

○ 결국 이번 철거사건은 현 정권의 뜻에 맞추어 특정신문을 친일 매국신문으로 매도하려는 의도라고 본다. 역사가 한 정권의 자의와 편의에 의해 재단될 수 있다고 보는가?

□ 방송정책과 방송산업진흥정책 분리 방안 관련

○ 지난 8일 노무현 대통령의 업무보고에서 방송정책은 신설될 방송통신위원회(가칭)가 방송의 인허가, 규제, 심의 등 방송이 언론으로서 가져야 할 공공성과 관련된 사항을 감독하고 방송산업진흥정책은 문화관광부가 영상콘텐츠 진흥을 맡기로 한 것으로 안다.

○ 이날 또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방송은 지상파에 완전히 종속돼 있다며 문화부의 정책 수단이 제한돼 있지만 어렵더라도 문제의식을 갖고 지역언론 육성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안다.

○ 방송정책은 방송위원회의 소관이다. 일련의 이러한 사항들이 문화관광부의 방송정책권 회수에 대한 야욕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權五乙 委員

<미국에 발목 잡힌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건립>

○ 2005년 6월 개관 예정으로 용산에 신축 중인 국립중앙박물관이 박물관 전면에 위치한 주한 미군 헬기장 이전이 늦어지고 또한 미국은 헬기장 이전과 덕수궁 터에 대한 미대사관 및 직원아파트 건립문제를 연계시킬 것으로 알려져 순조로운 개관에 차질이 예상된다.

□ 현재 공정 58%(2003년 4월 현재)

▪ 미군 헬기장 이전 추진 상황

- 97년 5월 SOFA과제로 채택
- 40여 차례에 걸쳐 한미합동실무회의 개최
- 2002년 4월 문광부장관, 주한미군사령관 이전에 원칙적 합의
- 한미 고위합동실사단 구성, 현장조사 및 실무협의 결과 용산미군기지 내 미대사관 주택지로 이전기로 합의(소요비용 약 500억 원 : 공사비 200억, 용산기지 미군 시설이전 300억 예상)

○ 당초 2002년 10월까지 외통부, 국방부, 미대사관 및 주한미군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UNC부지 내 미대사관 주택신축과 임대조건에 대한 협의를 마치기로 했으나 대사관 주택임대료 문제로 타결이 지연되고 있음.

- 한미 간 세대당 연간 임대료 이견 (한: 4900만 원, 미: 2400만 원) → 임대료 산출근거나 협의 공문은 SOFA 규정을 들어 공개하지 않음.

○ 주한미군 측은 헬기장 이전합의서 체결 후 헬기장 부지 인계 시까지는 약 3년이 소요될 것-2002 국정감사 자료집-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미군 측의 이전 결정이 지금 내려진다고 해도 이전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2005년 6월 개관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더구나 미국은 헬기장 이전문제와 덕수궁터 미대사관 및 직원아파트 건립문제를 연계시킬 의도 표명하였음. → 협의 공문은 SOFA 규정을 들어 공개하지 않음.

○ 본 위원은 2002년 9월 국정감사 시에 덕수궁 터에 한일합방 직전인 1910년까지 그 자리에 15개 이상의 궁궐전각이 존재했고 현재까지도 이터의 지하에는 궁궐유물들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하루 빨리 사적지로 지정하고 상대국을 설득하여 복원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덕수궁 평면도와 항공사진을 통해 미대사관의

신축부지인 구 경기여고 부지에는 선원전, 사성전을 비롯한 15개 이상의 궁궐전각들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특히 미대사관 및 아파트신축 부지는 당시 역대 선왕들의 영정을 모셨던 선원전이 있던 바로 그 자리임이 입증되었음.

문광부는 덕수궁터 미대사관 건립문제에 대해 문화재청과 서울시에 협조를 구해 문화재 지표조사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문화재청과 서울시는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

- 3월 11일 문화재청 서울시에 덕수궁터 지표조사기관 추천 요청
- 3월 29일 서울시 문화재청에 지도감독 권한 없어 추천 곤란 회신
- 4월 4일 서울시 문화재청에 지표조사기관 추천 요청

○ 덕수궁터에 대한 미대사관의 신축 여부를 둘러싼 논란과 미국이 헬기장 이전문제와 덕수궁터의 대사관과 직원 아파트 문제를 연계시킨다는 데 대해 정부가 분명하고 책임있게 덕수궁터 미대사관, 아파트 신축반대 입장을 천명할 의향은 없는가?

헬기장 이전문제의 지연에 따른 국립박물관 개관 지연, 덕수궁터의 미대사관 숙소문제 등 현안의 복잡성은 문광부의 직무유기이자 무소신의 정책방향 때문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람.

○鄭範九 委員

<문화재 관리의 총체적 부실 - 동대문 균열부위 해체 및 국가지정 문화재 화재!>

□ 동대문 균열부위 해체! 과연 바람직한가?

문화재청은 최근 균열현상이 관찰된 보물 제1호 흥인지문(동대문)문제와 관련하여 지난달 26일 문화재위원 구조·지질 전문가, 정밀안전진단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현장 기술지도위원회를 열어 균열이 심화되고 있는 여담 부분 옹성을 지하 1단까지 완전히 해체하고 지반 개량공사를 한 후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균열발생의 원인이 지하수위 하락에 따른 지반 침하 때문이라고 분석결과를 발표했습니다.(별첨 1)

○ 그런데 지하 수위가 하락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는 규명하지 않은 채 균열 부위만을 해체 복원하는 단편적인 결정을 내림으로써 보물 제1호 흥인지문의 영구적인 보존 대책과는 거리가 먼 근시안적인 처방을 내리고 말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별첨 2)

조선태조 5년(1396년) 홍인지문을 축조할 때 홍인지문의 바닥이 청계천보다 낮아 바닥을 흙으로 돋우고 돌을 채워 지반을 다졌다고 하는 등의 기록에 비추어 이 지역의 지반이 이전부터 연약한 것으로 추측됩니다.(별첨 1)

○ 최근 동대문 주변에는 관광특구로 지정될 만큼 패션의 중심지로 떠오르면서 3~4년 새 20층이 넘는 초대형 쇼핑상가건물 4채가 들어섰고 지하철 6호선 환승역 공사 등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도 동대문 주변의 건물들이 하루에 취수하는 지하수량, 동대문 밑을 지나가는 지하철 1·4호선, 동대문 주변을 지나가는 6호선 등으로 인하여 동대문의 지반은 상당히 약해져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건물은 균열이 2.5cm 이상 되면 공학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상황으로 가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홍인지문의 일부 균열을 보면 그 폭이 10cm 이상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탈착현상이 20cm에 달하는 곳도 있어 기술지도위원회가 진단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실제로 홍인지문, 흔히들 말하고 있는 동대문은 체성과 옹성이 만나는 부분뿐 아니라 지하수위 하락에 의한 지반 침하 현상으로 전체가 부동 침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홍인지문의 균열은 부분적인 현상이 아니라 전반적인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문화유산에 관한 전문 건축가가 주장하고 있습니다.(별첨 2)

체성의 동벽과 서벽의 균열현상, 홍예석과 체성의 슬라이딩 이탈현상, 옹성의 균열 등 부동 침하에 의해 발생하는 전반적인 현상은 외면하고 서북 측 옹성에서 발생한 균열만을 문제삼는 것은 총체적이고 영구적인 문화유산 관리라고는 파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인지문 균열의 주범인 지하수위 하락의 원인이 분명히 규명되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치유책을 제시하며 우리의 문화유산이 더 이상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대문 해체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할 절차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더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 경남 함양 국가지정 문화재 소실!

또한 지난 2월 25일 밤 경남 함양에 위치한 ‘중요민속자료 제186호’인 일두 정여창 선생의 고택에 화재가 발생하여 400여 년 된 안채의 별당 3칸이 소실된 사실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별첨 3)

정여창 가옥은 안동 하회마을보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100여 채의 한옥 가옥이 있는 개평마을의 대표적인 고택으로 1984년 1월에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받아 지방자치단체(함양군)에서 관리해 오던 조상의 얼이 깃든 국가 유산입니다.

조선 성종때의 대학자 정여창(1450~1504)의 옛집으로 사랑채, 안채, 사당 등 14채의 건물과 일곽을 이룬 가묘, 일반적으로 후원을 중시하는 것과 달리 사랑채 앞마당에 꾸민 아름다운 인공산 등 여러 가지 구조적 특성과 함께 세간 및 살림살이들이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조선시대의 전형적인 양반집으로 당시의 생활상을 파악하는데 좋은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3000여 평이 넘는 고가옥 전부가 소실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다행입니다.

그러나 화재가 발생한 별당 3칸은 사당의 내부수리로 공사로 잠시 모신 가마모양의 감실(위패 등)과 후손들의 영정 등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유산의 소실은 5000여만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상의 손실뿐만 아니라 문화재 관리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측면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불을 처음 목격한 관리인에 따르면 초기 진압을 위해 소화기를 찾았으나 단 한 대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 중요문화재를 당국이 지정만 해놓고 소화기 하나 제대로 비치해 놓지 않은 상황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 문화재를 지키는 관리인이 있기는 하나 어디에서도 관리비를 주지 않아 형식적인 관리에 그치고 있을 뿐이며, 함양군의 문화재 담당 부서에서도 정기적 실태점검과 구조적 안전진단을 한다고는 하고 있으나 부족한 인력으로 많은 문화재를 관리하다 보니 집중적인 관리는 힘든 상황이라고 궁색한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 문화재청에서는 중요민속자료라고 지정해 놓고 지방자치단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닌지 걱정됩니다. 앞으로 문화재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중요민속자료 등에 대해서도 불시에 시찰을 단행,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고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관리에 대한 총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 문화재 교류의 실태>

우리 문화재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서 문화재의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이 문화재청의 또 다른 주요 업무일 텐데요. 그래서 지난 7일 일본과도 양국 간 교류와 상대국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문화재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별첨 1)

이렇게 문화재의 국제교류가 중요한 것처럼 특히 분단상황에서의 남북한 간의 문화재 교류가 무엇보다도 필요한데 문화적 차이와 정신적 이질감을 줄여 통일 후의 사회통합을 위한 기초작업이라는 점에서 남북 간 문화교류는 의미가 클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국정감사 때에도 문화재의 남북교류에 대하여 질의한 바 있습니다. 아직도 문화재청에서 국제교류를 담당하는 업무를 무형문화재과에서 하고 있지요? 존경하는 고흥길 위원께서 현안보고에 앞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 본 위원회에서도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별첨 2)

○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개정안이 의결되어 조직개편이 있을 때 국제교류를 담당하는 부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삼성동 코엑스에서 작년 12월부터 ‘평양에서 온 고분벽화와 유물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 2002년 2월부터는 선사시대 유적의 보고로 평가받는 서울의 강동구와 평양 강동군이 유적 비교연구를 통한 문화교류를 실시하고 있고 며칠 전에는 부산시와 북측 간에 문화 및 경제교류 등에 대한 협력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언론에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지난 2월 24일에는 평양에서 남북한 역사학자들이 공동학술연구를 진행하기로 합의서를 채택했다고 합니다.(별첨 3)

○ 이렇게 문화재 교류 및 공동학술연구 등 다각도의 남북한 간의 문화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남북관계에 많은 진전이 있어왔음을 느끼고 더 큰 발전 가능성에 대하여 기대를 하여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류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문화재청 당국에서 시행한 것은 거의, 아니 전무한

실정입니다. 본 위원의 자료요청에 대해서 문화재청은 북한 측의 소극적인 태도와 문화재 및 역사에 대한 남북한 간 기본인식의 상충 등으로 인하여 북한 당국과의 직접 협의를 통한 사업 추진 및 교류는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국제기구 및 관련 단체를 통한 간접교류 위주로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민간주도의 남북교류는 자유롭고 순수한 목적의 교류가 가능하다는 등의 장점이 있으나 남북한의 교류가 정치적·국제적 상황에 크게 의존한다는 특징으로 민간주도의 경우 계속성이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남북의 문화교류는 정치적 합의에 이르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 무계획하고 무질서한 단기적 안목의 교류는 예상치 못한 반목과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재청의 경우 남북한 관계를 규정하는 각종 제도와 법률을 정비하여 민간단체들과 북한의 문화재 교류 실행에 있어 현행법을 어기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하고 불안정하고 모순되는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은?

○ 실무적으로 문화재 복원기술에 대하여 북한이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갖추고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서로간에 과학기술 및 장비 교류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차원의 기술적 교류는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벽화 및 금속유물 보존처리용 전문 약품과 재료, 건축기법 등의 교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학술교류 외에 ‘남북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만주, 중국 등 해외에 우리 문화재가 있는 곳 및 서로간의 문화재들을 실제로 발굴, 조사할 계획은 없는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잘 되어가고 있는가?>

○ 문화유적의 쾌적한 관람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 1999년부터 올해까지 문화재안내판 정비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마지막 해로써 총체적인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질의와 함께 몇 가지 제언을 하려고 합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재 안내판의 설치는 현재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43조에 의해 시·도(시·군·구)에 위임하여 규격 등을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보다도 문화재의 주변 여건을 고려, 안내판 모형·재질 등은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별첨 1)

그럼에도 전국에 흩어져 있는 문화재 및 문화유적지를 찾을 때 도로변 안내표지판이나 문화재 안내판이 동일한 이미지 통합으로 만들어진다면 문화유산을 소중하게 관리하게 되고 찾는 이로 하여금 찾기 쉽고 산뜻한 느낌을 갖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문화재청에서는 2000년 8월 “문화재안내판 모형개발 용역연구”에 의한 모형집을 발간하여 문화재안내판 정비에 활용토록 통보한 바 있는데 이 모형집에 의거하여 통일성있게 교체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 모형집은 주로 안내판의 외관적인 디자인 부분에 치중하고 안내판 형성에 중요한 문안 내용, 색채, 규격, 설치장소, 보호안내판의 설치, 도로안내표지판 등에 관한 부분은 언급되어 있지 않고 설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따라 제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비사업이 완료된 후에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설치되었는가를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예전보다는 안내판의 규격이 많이 작아졌고 문화재 자체의 규격, 주변경관에 따라 규격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안내판은 크기가 큰 편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안내판 크기가 가로 53cm, 세로 37cm 정도로 대체로 우리나라의 반 정도이고 문화재 안내판도 문화재의 한 경관으로 자리잡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도 문화재안내판을 설치함에 있어 안내판이 문화재와 동떨어져 있게끔 설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방문객의 편의를 위한 시설로서 적절히 기능할 수 있도록 경관친화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무엇보다도 안내판의 내용에 있어 오류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철저히 확인, 검증하고 있고 또한 문화재 표기를 너무 전문적이고 어려운 용어로 표현하기보다는 쉽고 이해하기 쉬운 한글화 작업이 병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신문에 보도된 바 있는 전남 화순 쌍봉사의 불상 안내판을 소설가 정찬주 씨가 써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문용어조차 풀어쓴 사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별첨 2) 어려운 한자어로 포장된 문화재 안내판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획기적인 아이디어

가 많이 시도되기를 문화재청에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문화재안내판 정비사업에 제안하고 싶은 것은 문화재 안내판의 설치가 기본적으로 해당 문화재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따라 또는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설치하게 되더라도 시·군·구마다 각기 다른 규격 등을 달리 하여 만드는 것보다는 광역시와 도 단위로 안내판의 이미지 통합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떠한 안내판을 설치하고 어떠한 안내판 문안을 작성하는가에 대해 서로 상호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서로의 장점과 결점을 알고 보완하는 장을 문화재청 차원에서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문화재청)

○金秉浩 委員

<외국에 존재하는 우리 문화재 실태>

질의 1) 문화재청장은 우리나라 역사교과서에서 나올 법한 중요한 문화재가 외국에 얼마나 남아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 안건의 몽유도원도(일본의 천리시 천리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 직지심체요절(파리 국립도서관 보존, 2001년 9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
- 왕오천축국전(파리국립도서관 소장)
- 조선왕조 의궤 등 외규장각 고서(191종 297책, 파리국립도서관 소장, 이 가운데 휘경원 원소도감 1책은 1993년 9월에 환수)
- 금동제 관모 등(일본 동경국립박물관 소장)

이런 대표적인 문화재 외에도 외국의 유명한 국립박물관과 대학교 박물관 곳곳에는 우리나라의 뛰어난 문화재가 산재해 있다.(표 1)

(다음 페이지에 계속)

해외소재 주요 우리 문화재 목록

국가별	소 장 처	문 화 재 명	비 고
일 본	천리대학교(Tenri University)중앙도서관	몽유도원도	조선
	동경국립박물관(Tokyo National Museum)	금동투조관모	삼국
		국화문나전경함	조선
		아미타삼존도	고려
	대화문화관(Yamato Bunkakan Collection)	동제은상감유수금문정병	고려
		연사모종도	조선
	동경대학교(Tokyo University)	토기고족반	삼국
		토기발형	삼국
	경도 지적원(Kyoto chishakuin)	약사도	고려
	경도국립박물관(Kyoto National Museum)	종형단화문경	고려
		감지금자대보적경권32	고려
	나라국립박물관(Nara National Museum)	동제은상감향환	고려
		백의관음도	고려
		나전대모국당초문염주합	통일신라
	고려미술관(Koryo Museum of Art)	백자청화운룡문호	조선
		용호도	조선
		화조도자수십곡병풍	조선
	대판시립미술관(Osaka Municipal Museum of Art)	금동여래입상	통일신라
청자상감포도동자문표형주자		고려	
백자호문탁잔		조선	
미 국	메트로폴리탄 미술관(Metropolitan Museum of Art)	화청자모란당초문매병	고려
	브루클린박물관(Brooklyn Museum of Art)	백자진사포도문호	조선
		청자연관문주자	고려
	피바디박물관(Peabody Exssex Museum)	아미타삼존도	고려
		자개원반	조선
		유길준 유품 등	조선

국가별	소장처	문화재명	비고
미국	로스엔젤스 L.C.M.박물관 (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청자철상감모란당초문호	고려
		화각장생모란문합	조선
		목재나한상	조선
	보스턴박물관(Museum of Fine Arts, Boston)	청자투조향로	고려
		금동불감	고려
		은제도금화형주자	고려
샌프란시스코박물관 (Asian Art Museum of San Francisco)	청자상감국화절지문호	고려	
하와이 박물관(Honolulu Academy of Arts)	청자음각연화문과형병	고려	
하버드대학 새클러박물관 (Arthur M.Sackler Museum, Harvard University Art Museums)	청자상감매병	고려	
영국	대영박물관(The British Museum)	청자진사당초문대접	고려
		화엄경변상도	고려
		나전국화당초문경합	조선
		기사진표리진찬의궤	조선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 (Victoria & Albert Museum)	나전철모란당초문찬합	조선
		철화연화문백자항아리	조선
독일	켈른동아시아박물관 (Museum of East Asian Art. Cologne)	청자음각모란문장경병	고려
		청자음각연화절지문매병	고려
		수월관음도	고려
	함부르크미술공예박물관 (Hamburg Museum for Ethnology)	금동안장금구	삼국
프랑스	기메박물관 (Guimet National Museum of Asian Arts)	철조천수관음보살좌상	고려말~ 조선
		아미타여래도	고려
		감지금니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조선
		금동용봉고리장식칼	삼국
	파리국립도서관(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조선왕조의궤 등 외규장각고서	조선
		왕오천축국전	통일신라
		직지심체요절 1권	고려
러시아	모스크바 동양박물관 (State Museum of Oriental Art. Moscow)	청자철화국화절지문매병	고려
	피터대제인류학박물관 (KUNSTKAMERA)	금동연화·봉황장식 은입사춧대	조선
소장처: 5개국, 25개처		54점	

러시아 피터대제 박물관에는 금동연화·봉황장식 철제은입사 촛대, 행보석 등 궁중의 생활용품들과 해무리굽 대접 12세기 음양각화형잔탁, 철화문매병 등 633건의 우리 문화재가 있으며,

모스크바 국립 동양박물관에는 청자철화국화절지문매병과 함께 김일성 스탈린에게 선물한 것으로 전해지는 청자상감국화절지문과형주자와 구한

말 러시아공사 웨베르가 수집한 청자 양각연관문 대접, 청자상감국화문과형병, 청자음각화문잔탁 등 470건 등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문화재 중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를 제외하고 박물관이나 대학교 등 공개된 장소에 있는 우리 문화재는 총 20개국 7만 5266건에 이르고 있다.

외국소재 우리 문화재 국가별 현황

국 가 별	계	주요 소장처
일 본	34,157	동경국립박물관, 천리대학교, 동경대학교 등
미 국	16,112	스미소니언 프리어 미술관, 보스턴 박물관 등
영 국	6,610	대영박물관,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 등
독 일	5,289	쾰른 동아시아박물관, 함부르크미술공예박물관 등
러 시 아	3,554	모스크바국립동양예술박물관, 피터대제박물관 등
프 랑 스	1,960	국립기메동양박물관, 파리국립도서관 등
중 국	1,434	요령성박물관 등
덴 마 크	1,240	덴마크 국립박물관 등
캐 나 다	1,080	로얄온타리오박물관 등
네 델 란 드	820	국립라이덴박물관 등
스 웨 덴	804	동아시아박물관 등
오 스트 리 아	679	비엔나민속박물관 등
바 티 칸	500	바티칸민족박물관
스 위 스	457	스위스 민족학박물관
체 코	250	체코 국립박물관 등
폴 란 드	135	바르샤바 국립박물관 등
벨 기 에	82	왕립미술역사박물관
형 거 리	58	호프웨렌쯔동아시아박물관 등
호 주	28	뉴사우스웨일즈박물관 등
이 태 리	17	국립동양박물관
계	75,266건	

II. 문화재 환수대책의 문제점

질의 2) 문화재청 내에서 외국 소재 우리 문화재 환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이며 지금까지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두었는가?

외국에 있는 우리 문화재를 환수하는 일을 하고 있는 곳은 문화재청 매장문화재과 문화재사범단속계이다.

문화재사범단속계는 국내의 문화재 사범을 단속·관리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로서 2명의 공무원이 그 임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2002년 3월에 2명이 충원되어 현재 4명이 재직하고 있다.

문화재 사범을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외국 문화재 환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국내 문화재 도난, 도굴문제도 심각한 상황에서 4명이 외국 문화재 환수업무를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III. 정책제안

질의 3) 문화재청 또는 국립중앙박물관에 문화재환수국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

가. 문화재 환수사례

1. 그리스

엘진 마블(파프테논 신전)을 환수받기 위해 수십년 동안 영국대영박물관을 상대로 계속적인 노력하고 있다.

2. 아이슬란드

덴마크를 상대로 50년간의 노력 끝에 자국의 문화재 환수 받았다.

외국 소재 문화재 환수작업은 역사적, 민족적, 정치적인 문제가 걸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하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문화재청 내에 문화재환수국을 만들되 중앙국립박물관, 문화관광부, 외교통상부의 직원이 파견되고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 성격의 조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나. 환수방법

프랑스를 상대로 외교장각 반환에서와 같이 정부가 나서게 되면 외교적인 사안으로 역효과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할 일과 학계와 문화계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문화재환수국이 전체작업을 조절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국제법적 지식과 전문성을 갖추어 합법적인 환수작업과 외국의 경매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우

리 문화재의 목록을 작성하여 사들이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

IV. 범어사 문화재 도난 사건

질의 4) 문화재청장은 부산 범어사에서 문화재 1000여 점이 도난 또는 증발된 사건을 알고 있는가?

조계종 총무원에서 발간한 “불교문화재 도난백서”에는 범어사에서 증발된 보물 1000여 점 중 단 1점도 등록되어 있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문화재청장은 전통사찰의 문화재와 개인 소유의 문화재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현행법과 제도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는가?

1976년 1월 2일 팔상탱화 8점

1978년경 중종 3점, 소종 7점, 대원국 사군자도 8폭 병풍 1점

1980년경 운판 1점, 사자업경대 2점

1988년경 어병(왕실전용 병풍) 1점, 전의상대사 옥인 1점, 옥병(화병) 1점, 금강저(철퇴) 1점, 감로도탱화 1점, 역대조사(654명) 영정 300여 점, 12신상 탱화 등 20여 점, 여래 탱화 7점, 가섭조자탱화 2점, 아란존자탱화 1점 팔금강탱화 8점, 4보살 탱화 4점, 동자(목조입상도분) 8점, 신중탱화 2점, 목어 1점, 대웅전(보물 343호) 비천상 2점, 지장보살 1점, 지장보살 탱화 1점, 해명존자 1점, 무독귀왕(석조입상도분) 2점, 사직사자 4점, 장군 2점, 감제사자 2점, 직부사자 2점, 대운경(고려판) 1책, 공덕론(고려판) 1책, 어제비장진(고려판) 1책, 어제소요경(고려판) 1책, 어제연지(고려판) 1책 고승전(고려책) 1책, 불의경(고려판) 1책 등 계 415점

1997년경 신문찰요 3판(총 121개 판 중), 동명제증(떡시루, 부산시 지정문화재) 5점, 현재 동명제증 5점 중 큰 것 2개는 부산시립박물관에 소장

기 타

1976년경부터 2000년경까지 사이에 본사 및 내원암, 금강암 등 9개 산내 암자에서 소장하고 있던 불상, 탱화 등 사중 보물 1000여 점이 증발된 사실이 MBC 뉴스데스크에서 연일 집중 보도된 바 있다.

범어사의 문화재 도난 실태가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사찰문화재 도난은 37건에 80점에 불과하다.

연도별 사찰문화재 도난 및 회수 현황
(문화재청 제출자료)

연 도	도난수량	회수실적
1998	5건 10점	0건 0점
1999	13건 22점	1건 1점
2000	9건 22점	3건 11점
2001	7건 17점	1건 1점
2002	3건 9점	
계	37건 80점	5건 13점

V. 국내 문화재 외국 반출의 문제-문화재 감정관실의 문제

질의 5) 우리의 중요한 문화재가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각급 국제공항, 국제부두와 항구 터미널에 문화재감정관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전문가들은 그 실효성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그 이유가 무엇인가?

1998~2003년까지 문화재 해외 밀반출 사건은 총 7건에 48점에 구속 14명, 불구속 7명이며 미국인 1명과 일본인 4명이 포함된 이들이 해외로 가지고 가려 했던 문화재는 금동아미타여래입상, 분청사기 12점, 청자매병, 신라토기 3점 등 보존 가치가 매우 높은 문화재들이다.

문화재보호법 제76조 제2항에는 “일반동산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에는 “문화재청장은 법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2조에는 감정위원을 문화재청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다.

위 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10개 시·도 공항, 부두, 항구여객터미널 등 14개소에서는 문화재 감정관실을 운영하여 상근 18명, 비상근 14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2002년도 문화재감정관실별 비문화재 확인 실적을 보면 2만 2206건의 의뢰를 받아 106건의 반

출 불가 판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 중 부산국제여객부두에서만 1만 3629건 의뢰에 76건의 반출 불가 판정을 내렸는데 전체 통계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훨씬 상회한다.

그런데 부산국제여객부두에서 근무하는 감정관은 전체 32명 중 단지 2명에 불과하다.

매일 출근한다고 가정했을 때에도 하루에 37점을 두 사람이 감정했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과연 이렇게 하여 정확한 감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VI. 국내 문화재 관리의 문제

질의 6) 국립중앙박물관과 지방박물관 각급 대학박물관을 제외하고 개인 소장문화재 및 문화재 매매업체에서 거래되고 있는 우리 문화재의 종류와 실태는 파악하고 있는가?

관계기관의 업무 태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문화재는 안정적인 보존 상태에 있으나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와 매매업체에서 거래되고 있는 문화재는 문화재 보존의 사각지대이다.

따라서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거나 거래하고 있는 문화재의 실태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2003년 3월 현재 우리나라 문화재 매매업체는 서울 종로구 297개 업체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822개 업체이다.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43조와 제44조에는 문화재 매매업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화재 매매업 신고와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동 시행규칙 제45조에는 문화재 매매교환 등에 관한 장부는 별도의 대장을 만들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화재매입(매도)대장검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하고 검인받은 장부는 기제를 완료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검인자의 승인없이 이를 파기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문화재청이 각 시청, 구청, 군청 담당 공무원과 협조하면 국내의 문화재의 매매현황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담당기관의 업무 태만이다.

(문화관광부)

○尹鐵相 委員

<출판및인쇄진흥법에 규정된 도서정가제 관련 하여...>

□ 현 황

도서정가제 조항을 담은 출판 및 인쇄진흥법 시행령이 2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도서정가제가 지난 2월 27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발행된 지 1년 미만의 책에 한해서 도서정가제를 인정하고 온라인서점에서만 10% 이내의 할인을 다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됐던 인터넷 서점의 마일리지 및 사은품 제공에 대해서는 서점·출판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별도 문화부 부령(가칭: 출판된 간행물의 유통질서에 대한 고시)을 통해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출판및인쇄진흥법에 규정된 도서정가제 관련 규정은 지적 문화상품인 도서를 일반 공산품과 같이 취급하여 무분별한 할인에 의한 거품가격이 형성되는 등 출판문화의 발전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지역사회의 자생적인 기초생활 문화공간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중·소 서점들이 가격경쟁을 이기지 못하고 급속히 줄어드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서 이른바 도서정가제를 법제화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시행은 도서정가제가 양질의 다양한 책을 언제 어디서나 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유경쟁 시스템에 맞다는 도서상품의 특수성을 인정한 측면이 강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어 집니다.

문화관광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도서정가제 이후 서점이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시행해 온 마일리지 확대, 경품 제공 등은 간접적인 할인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일리지나 경품 제공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가 있는데도 문화부가 별도의 고시를 제정하려는 것은 이중규제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올해 초·중·고교 학생용 참고서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많게는 60%까지 오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물가상승률 2.8%에 비하면 상승률이 턱없이 높는데 내용이나 겉포장이 변한 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참고서 가격이 상승한 이유로 인터넷 서점의 할인경쟁을 막기 위해 대부분의 서적들이 15~20%의 가격거품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질의) 이에 대해 본 위원은 이제 도서정가제가 시행됐으므로 출판사들도 거품가격을 걷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출판된 간행물의 유통질서에 관한 고시

출판된 간행물의 유통질서에 관한 고시는 발행된 지 1년 미만 도서에 대해 인터넷 판매 시 10% 이상 할인판매 금지를 규정한 도서정가제와 별도로 마일리지 사은품 배송료 등에 대한 추가 규제에 관한 내용이다.

이는 애초 도서정가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으로 서점연합회 등이 이에 대한 포괄적 규제 등을 주장하면서 강력 반발하자 문광부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 고시안이 확정되면 인터넷 서점들은 앞으로 마일리지나 사은품 제공, 배송료 할인 등의 부분도 규제를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모닝365 등 3사는 문광부의 이같은 고시가 소비자의 가격 및 서비스 선택권을 뺏고 시장 고유의 마케팅 기능을 해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터넷 서점계는 특히 도서정가제가 인터넷 서점에 대한 지나친 규제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큰만큼 시장 본래의 기능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이오용

오마이뉴스 2003

▪ 동아일보 2003-03-14 (사회) 29면 45판 1462자 표지만 바꾼 참고서 가격 '껍충'...인상폭 최대 60%

올해 초·중·고교 학생용 참고서값이 지난해에 비해 많게는 60%까지 올라 학생과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지난해 물가상승률 2.8%에 비하면 상승률이 턱없이 높지만 내용이나 겉포장은 거의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참고서값 얼마나 올랐나 = K사 중학교 생물 문제집은 내용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작년 5000원에서 올해 9000원으로 올랐다. 영어 참고서는 1만 원이던 것을 1만 6000원으로 60%나 인상했다. 초등생들이 구입하는 D전과는 1만 6000원이던 것이 올해는 3권으로 분리되면서 1만 8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참고서업자들은 또 '나뉘찍기'를 통해 책값을 편법인상하고 있다. 7차 교육과정이 도입되며 각 교과과정이 이전보다 세분화되자 이를 빌미로 삼은 것. 대

부분의 고교생들이 사 보는 S출판사의 ‘공통수학’은 ‘10-가’, ‘10-나’ 두 권으로 나뉘며 한 권에 1만 7200원(풀이집 포함)이던 것이 각 권 1만 3000원씩에 판매해 실제로 같은 내용의 참고서를 사기 위해선 2만 6000원을 내야 한다. 곧 출판 예정인 ‘일반수학’도 당초 수 I, 수 II 두 권으로 나뉘던 것이 미적분, 확률통계, 이산수학 등 5권으로 세분화됐다. 지난해에는 3만 5000원(각권 1만 7500원)이 들었으나 올해는 같은 내용의 책을 사기 위해서는 7만~8만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서정가제 실시로 할인 혜택의 폭은 더 줄어 들었다. 인터넷 서점 ‘알라딘’ 편집부 정선희 씨(26)는 “참고서는 해마다 ‘새 책’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10~25% 가량의 인터넷 서점 할인 혜택도 받지 못한다.”며 “인터넷으로 참고서를 구매하던 고객들은 책값 인상률을 포함해 적어도 40%대의 실질 인상률을 피부로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 왜 참고서값만 크게 오르나=출판사들은 용지대금 인상, 인건비 상승 등으로 책값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 금성출판사 백남문 부장은 “내용은 안 바뀌었지만 개발비가 들기 때문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두산동아 안기룡 부장은 “안 팔리는 책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잘 팔리는 책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출판업계의 구조적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학교나 학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홍보용 책자’ 비용을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학원 등지에서 학습지로 채택될 경우 판매부수가 고정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출판사 측은 학원마케팅에 심혈을 기울인다.

디딤돌 김재광 차장은 “현행 출판업계 유통구조상 500원을 올려 봐야 300원 정도가 업계 몫이다. 표지 교체비용 등을 빼고 나면 100원 정도 남고 나머지는 마케팅 등 기타 비용”이라고 말했다.

도서정가제 대책위원회 이창연 공동대표는 “인터넷 서점의 할인경쟁을 막기 위해 참고서를 비롯한 대부분의 서적들이 15~20%의 가격저감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측면이 있다.”며 “도서정가제가 시행됐으므로 출판사들도 가격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직기자 cij1999@donag.com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와 관련하여...>

□ 현 황

지구촌 대학인들의 축제인 제22회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가 오는 8월 21일부터 대구와 경북 일원에서 11일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에는 세계 170여개국 1만 1000여 명의 젊은이들이 참가해 유니버시아드대회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 유니버시아드(Universiade)는 대학(University)과 올림피아드(Olympiad)의 합성어로 대학생들의 체육대회를 말함. 유니버시아드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의 주최로 만 17~28세의 모든 아마추어 대학선수가 참가하며 올림픽에 버금가는 규모의 국제적인 종합 스포츠 제전임.

이러한 유니버시아드는 종합 스포츠 대회이지만 올림픽과는 달리 순수 아마추어리즘을 추구하는 세계 젊은이들의 축제의 장이며 메달의 숫자보다는 문화와 학술, 친교 등을 더욱 중요시합니다.

이번 유니버시아드대회를 대구에서 유치하기까지는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 대회 유치를 결정해 놓고도 98년 IMF 외환위기로 대회 유치를 연기하였다가 지난 정부에서 IMF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해 2000년 4월 대회 유치를 재결정하는 등의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 대구·경북지역은 2월에 있었던 대구지하철 화재참사로 깊은 슬픔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대회의 성격과 개최지의 여건상 다른 국제대회보다 더욱더 문화행사와 각종 공연 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유니버시아드의 성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침체된 지역의 분위기를 띄우고 우리나라를 방문한 세계의 대학생들에게 우리 문화를 알리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 대회를 전후한 개최지역의 문화행사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현재 대구지역은 지하철 참사로 인한 충격으로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저조하여 대회 준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대구시민들의 분위기 전환과 행사에 대한 참여의식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는 범정부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이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계 각국의 대학인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체육의 프로그램과 한국의 이미지를 홍보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 북한의 유니버시아드 참가와 관련하여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 현재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으로 인해 국내 외적인 정세가 여러 면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일부에서는 미국이 이라크와의 전쟁을 끝내면 다음 목표로 북한을 주목할 것이라는 견해까지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행사에 북한이 참가한다면 국민들의 불안을 다소 덜어줄 수 있을 것이고 북핵 문제로 소원해진 관계도 대화를 계기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또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해 부산아시아게임에 참가한 장웅 북한 IOC 위원도 참가의사를 밝혔고 지난해 11월 미국 콜로라도에서 열린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GAISF)총회에서도 북측으로부터 확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그러나 이라크전과 북핵 문제 등의 현안으로 인해 북한의 대회 참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로 보입니다. 이에 북한의 대회 참가를 위해 장관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향신문 2003-03-28 () 17면 587자

지방종합 - 대구 U대회 약재 털고 기지개 세계 대학생 스포츠 축제인 '제22회 2003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8월21~31일)'가 역대 대회 중 가장 많은 국가가 참가한 가운데 치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 U대회 조직위는 대구지하철 방화참사, 미국의 이라크 침공 등 국내외 악재에도 불구하고 대회 참가 의향서를 제출한 국가는 27일 현재 168개국에 달한다고 밝혔다. 대륙별로는 아시아 39개국을 비롯해 아메리카 31개국, 아프리카 50개국, 유럽 42개국, 오세아니아 6개국이다.

이는 2001년 중국 베이징대회에 참가한 164개

국보다 4개국이나 많아 역대 최대 참가 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직위는 지난달 18일 대구지하철 참사 발생 전까지 참가의향서를 보내온 국가는 157개국이었으나 사고발생 이후에도 10개국이 참가의향서를 보내왔다고 말했다. 특히 전쟁 당사국인 미국과 이라크도 참가의향서를 제출, 이들 국가의 참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직위는 또 남북 간의 평화무드 조성을 위해 북한의 대회 참가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 북한의 참가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참가국이 당초 목표인 170개국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박태우 기자 taewoo@kyunghyang.com

▪ 조선일보 2003-03-19 (종합) 02면 40판 345자 지하철 참사 민심수습 내일 대구서 장관회의 정부는 지하철 참사로 인한 대구지역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20일 대구에서 고건 국무총리 주재 아래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대구지하철 전동차 내장재를 불연재로 최우선 교체하는 등 대구지하철을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시범 지하철'로 탈바꿈시키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오는 8월에 열릴 예정인 '2003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성공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조해녕 대구시장은 지하철 참사 현장 복구비용 500여억 원과 전동차 신규 구입, 불연재 교체비 620억 원 등에 대한 국고 지원을 요청키로 했다.

/한재현 기자 rookie@chosun.com

▪ 세계일보 2003-01-30 (특집) 기획연재 47면 50판 3083자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8월 달구벌엔 세계 젊음이 넘친다.

지구촌 대학인들의 스포츠 축제인 제22회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가 오는 8월21일부터 대구와 경북 일원에서 11일간 개최된다.

'벽을 넘어 하나로, 꿈을 펼쳐 미래로'라는 슬로건 아래 세계 170여 개국 1만 1000여 명의 젊은이들이 참가해 스포츠 축제의 장을 펼칠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는 대회 사상 최대 규모로 치뤄질 예정이다.

준비상황=95년 대회 유치 결정, 98년 IMF 경제위기로 대회 유치 연기, 2000년 4월 대회 유치 재결정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2000년 7

월 대구광역시가 개최지로 확정됐다. 이후 대구시는 2001년 5월 대회 조직위 사무처를 구성,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조직위는 대회 때 가장 중요한 경기장 시설을 새로 건설하지 않고 기존의 대구·경북지역 내 시설을 개·보수해 활용하고 각종 대회에 필요한 시상대, 카페트, 사무용 집기 등 각종 물자도 부산아시안게임 때 사용했던 것을 지원받아 경제적인 대회로 치른다는 전략이다. 일반 VIP 수송시에도 개인택시를 활용할 정도로 알뜰한 대회를 치르겠다는 것.

필수시설인 선수촌의 경우 대구시 북구 동서변 택지개발지구에 24개 동, 97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신축, 5월 중에 완공될 예정이며, 대구 전시컨벤션센터에 설치 운영할 국제 미디어센터는 25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첨단시설로 꾸며질 예정이다.

대회운영=육상, 수영, 축구, 테니스, 체조 등 13개 종목, 183개 세부종목이 펼쳐질 경기는 대구월드컵경기장을 메인스타디움으로 대구와 인접도시인 구미, 김천, 경주, 영천, 경산, 안동, 예천 등 8개 지역 29개 경기장에서 펼쳐진다. 또 대학인들의 축제답게 대학시설을 이용한 36개 연습장도 마련했다.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원만한 대회 운영을 위해 경기운영 요원 교육을 이미 끝냈고 오는 3월부터 7월까지 종목별로 프레대회를 개최해 경기장 시설과 경기 운영을 종합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집중 개선할 계획이다.

대학인들의 축제인 만큼 대구·경북지역 소재 47개 대학 총학생들이 유니버시아드대회에 대학의 참여·협조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했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대구유니버시아드 시민위원회가 설치됐다. 또 1만 6000여 명의 필요 인력 중 이미 1만 2000명의 자원봉사자를 선발, 실무교육에 들어갔다.

기대효과=대구·경북개발연구원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처음 개최되는 국제 스포츠 대회인 이번 유니버시아드대회가 5900여억 원의 생산 유발과 2만 9000여 명의 고용효과, 1900억 원의 소득 유발효과가 예상돼 낙후된 대구·경북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직위는 또 포스트월드컵 대책의 하나로 대구·경북지역민들이 세계와 접하면서 국제적

감성과 시야를 넓히게 되고 국제사회에 대한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리는 절호의 기회로 삼고 있다.

대구시는 대회 종료후에도 세계적인 이벤트를 계속 유치해 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한다는 전략을 세웠으며 지역 기반산업인 패션·섬유산업을 전세계에 알린다는 계획이다.

/박병헌 기자 bonanza7@segye.com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부지 내 미군 헬기장이전문제>

□ 현황 및 문제점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은 우리나라 5000년 역사를 상징하는 유물들이 한 장소에 집합된 문화역사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세계 6대 박물관의 규모를 갖추게 될 이 박물관은 당초 총 10개년동안 3291억 원을 투입하여 2002년 12월까지 건축공정을 완료하고 2003년 개관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설계 계획 변경, 부실공사, 예산부족 등으로 건축공정을 14개월 연장하고 총 사업비 802억 원이 증액되는 등으로 2002년 말 현재 공정이 50%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더욱이나 미군 헬기장이 공사장의 앞쪽 500m 거리에 있어 하루에 30~40회 가량 헬기가 이착륙하고 있는데 소음과 진동으로 공사에 큰 차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7년 5월부터 2001년까지 헬기장이전장소로 한미 상호간 7개 후보지를 검토하였으나 관계부처의 반대, 한미 양측 간의 이견으로 후보지가 선정되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강고수부지, 용산 가족공원, 한강대교 중지도, 노량진 정수장 부지 등이 거론됨)

그러다가 2002년 4월 한미 고위협상단의 협상결과 헬기장을 용산 미군기지 내의 미대사관 주택지로 이전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헬기장 이전 후보지 내 기존 지상건물(미대사관 직원주택 152세대)의 철거, 신축 방안 및 조건이 세부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이러한 상황에서 미군이 헬기장을 이전한다 해도 2005년 8월 이후로 잡고 있어 중앙박물관의 개관 예정일인 2005년 6월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장관은 가능하다고 보는지 답변 바랍니다.

질의) 그리고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도 미군 헬기가 하루에 수십번 이·착륙하고 있어 진동으로 인하여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만큼 횡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미군 측과 협의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질의)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의 공정을 보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설계변경이나 부실공사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446억 원의 예산이 이월되는 등으로 공기가 늦춰지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의 비효율적인 운용을 어떻게 시정해 나갈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은 새 박물관에 전시될 유물 수량을 1만 2000여 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확보되어 있는 전시유물은 1만 664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앞으로 미확보 유물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현재 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미정리 유물이 4300여 건에 8만여 점이나 된다는데 이러한 유물은 그대로 미정리 상태로 방치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정동일대를 문화재 보호지구로 지정해야 한다.>

□ 현황 및 문제점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부지 내의 미군 헬기장이 전문제와 관련하여 미군 측은 덕수궁 주변 미대사관 및 직원숙소 건립문제를 연계할 의도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화재 조사절차를 우리 정부가 진행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광부장관은 지난 8일 청와대 업무보고 시 “덕수궁 주변 미대사관 건립문제는 문화재청과 조사절차를 진행토록 하고 시민단체들의 반대는 적극적으로 설득할 것”이라고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실련, 문화연대 등 3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덕수궁 미대사관·아파트 신축반대 시민모임”은 지표조사를 하는 것은 결국 미대사관과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기 위한 수순이 아니겠느냐며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의 한가운데에 자리한 덕수궁은 400년 전 조선 선조 때부터 궁전으로 사용되었던 국가 중요문화재입니다.

1897년 대한제국이 선포된 곳도 이곳으로 서구화의 물결속에서 평가절하돼 왔던 대한제국이 최근 전통을 근본으로 하고 신문물을 받아들여

했던 세력으로 다시 평가되면서 덕수궁의 역사적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덕수궁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국가를 상징하는 정치 중심지로서의 왕궁이었기에 역사적 유적지로서 영원히 보존해 나가야 할 문화유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의 터전 가까이에 주한 미대사의 관저가 자리하고 있고 앞으로 대사관 직원용 8층 아파트와 15층의 대사관 공관을 신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정대로 1만 3000평의 대지에 공관과 관저, 아파트를 갖춘다면 미국 측의 종합 외교타운이 들어서는 것입니다.

문제는 건축예정지가 옛 덕수궁 터이고 이곳이 바로 조선 태조와 왕의 4대조의 어진을 모시는 선원전 자리였다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질의) 그러기 때문에 이곳에는 선원전을 비롯한 여러 문화재의 흔적들이 묻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역사적 규명을 통해서 보더라도 문화재가 존재한 터임이 분명한데 지표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바로 시민들의 주장과 같이 허용을 위한 수순이 아니겠는가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질의) 이제는 개발보다 문화재 보호가 우선시된다는 것을 경주고도 및 풍납토성의 보존정비 결정이 말해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문화재보호조례나 건교부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도 저촉되는 건물을 짓겠다면서 국내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행위가 과거 전례에도 있었던 일인지, 있다면 사례를 알고 싶습니다.

질의) 그리고 미대사관이 국립문화재연구소, 서울시립역사박물관 등 20여 개 지표조사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였으나 모두 거절하였습니다.

만일에 그곳이 과거 덕수궁의 뜰 정도였다면 유물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덕수궁의 뜰이라 해도 현 문화재보호법 43조2에 의하면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 500m 이내에는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릉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덕수궁은 국가지정문화재가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데도 건물을 짓기 위해서 사전 지표조사를 실시할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질의) 2002년 8월 7일 민간단체인 한국청년연합회가 주관하여 “정동 바로 알기”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문화관광부와 문화재청의 주관하에 문화재 관련 학자들과 역사가들이 중심이 되어 역사적 고증들이나 지리적 자료들을 근거로 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우리 국민들에게 정동 일대의 문화유적 현황과 그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답변 바랍니다.

○ 현재 경제정의실천연합 등 40여 개의 시민단체는 덕수궁 터 미대사관 및 아파트 신축 반대모임을 결성하고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이들 단체 역시 덕수궁을 비롯한 정동 일대를 문화재보호지구로 지정해 특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의) 한국 궁궐의 상징적인 정동 일대를 문화재청이 서울시와 협의하여 문화재보호지구로 지정하여 개발을 방지하고 문화재 복원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경위

미대사관 측은 1986년 10월 22일 서울시장과 ‘토지교환각서’를 통하여 구 경기여고 부지와 세종로 미대사관이 아닌 대사관의 부속재산인 미문화원과 교환하기로 합의함.

2000년 7월 미대사관 신축 이전 관련 서울시와 미대사관 간 협의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대사관 신축을 위해서는 서울시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함.

2001년 12월 미대사관 청사 교통영향평가 심의 신청에 대해 서울시는 주차장법 및 서울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위배되므로 반려시킴.

2002년 4월 16일 미대사관 직원 숙소 건축허가 신청 및 서울시문화재위원회 심의(2002년 4월 24일)를 하였음.

심의결과 건축예정지는 궁궐유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보존 및 보호대책이 필요함을 통보하였음.

2002년 5월 13일 서울시(중구청)에서 미대사관 측에 사전 문화재 존재 여부의 조사 실시를 통보했음.

미대사관이 국립문화재연구소, 서울시립역사박물관 등 20여 개 지표조사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였으나 모두 거절 당했음.

2002년 8월 5일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 개최, 문화관광부·외교통상부·건설교통부 차관, 문화재청장, 서울시 행정 2부시장 참석했고 회의결과는 문화재청 및 서울시와 협의하여 공동조사단 구성, 조사시기 등을 검토, 협조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음.

2002년 8월 10일 외교통상부는 문광부에 건립 예정지 지표조사기관 선정에 대한 공식 협조 요청을 하였음.

□ 대사관 및 직원숙소 건립 불가 원인

미대사관 및 숙소를 건립할 수 없는 법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봄.

첫째, 현재 미대사관지를 건립코자 하는 곳은 덕수궁 경계로부터 약 10m, 구 경기여고 부지는 78m 거리임.

서울시가 지난 7월 16일 문화재보호조례를 개정했는데 이 조례에 의하면 국가 지정 문화재의 보호범위를 100m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건립이 불가함.

둘째, 미대사관 건립 연면적은 5만 3600㎡에 15층 규모인데 이 경우 서울시의 건축법 조례에 따르면 최소 529대의 주차면적을 확보해야 하는데도 미대사관 측은 160여 대에 불과하다며 업무시설이 아닌 기타 시설로 분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기타 시설은 170대의 주차면적만 확보하면 되나 대사관 건물을 기타 시설로 분류할 경우에는 건교부가 주차장법을 개정해야 함.

셋째, 현행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은 20가구 이상의 모든 공동주택은 주차장과 어린이 놀이터 같은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공개청약을 통해 일반 분양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 대사관 측 계획은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채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 외교시설에 대한 특례조항을 삽입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건설교통부는 특례조항을 삽입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였음.

□ 외국의 고도 보존사례

영국은 유적보존법과 개발보상법 등 20여 개의 문화유산 보호 관련 법률이 있어 일단 문화재가 사적으로 지정되면 보수나 주변지역의 개발 등은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영국에서 중요문화재로 지정돼 특별 관리되는 문화유산은 1만 5000여 건이며 50여만 군데의 건축물이 중요건축물로 지정·보호되고 있음. 특히 중요유적은 그 환경도 중요시해 “중요유적지”로 지정하는데 캔터베리, 체스터, 엑스터, 요크 등은 역사도시로 도시 전체가 사적으로 지정돼 보호되

고 있음.

유네스코가 7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세계문화유산 등록제에 등록된 문화유산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경우도 중앙정부에 문화재환경부를 두고 철저히 문화유적을 보호하고 있음.

로마는 밤거리의 네온사인도 없고 옥상 대형광고판의 설치도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 대법원의 외벽 물 청소작업도 도시 전체의 풍치를 훼손한다는 주민들의 반대로 중단될 정도로 문화재에 대한 시민의식이 투철함.

□ 덕수궁의 역사

1901년에 만들어진 한성부 지도를 보아도 지금의 정동지역이 경운궁 즉 덕수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고 1910년의 자료도 이 지역이 모두 덕수궁이었음을 나타내 주고 있음.

일본인 학자 오다 쇼오고가 쓴 덕수궁사에 나오는 지도에도 선원전이 표시되어 있다고 함.

또한 공관 예정지에도 영성문, 양화당 등 옛 덕수궁에 속한 건물들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함.

1897년 10월 12일 대한제국이 탄생하면서 경운궁은 명실공히 대한제국의 정궁이 되었던 것임.

그러나 제국주의의 열강앞에 대한제국은 너무나 무력하기만 하였음. 경운궁은 1910년 국권이 상실되면서 건물들이 황폐화되어 갔고 일제는 1931년 덕수궁의 일부분인 약 1만 평을 유원지로 만든다고 발표하였음. 당시 덕수궁은 2만 100평의 부지를 갖고 있었는데 일제가 공원화하겠다고 발표한 평수는 덕수궁의 절반에 달하는 것임.

이에 따라 덕수궁 내 각전을 수리하고 정원을 만들었고 궁안에는 일본 도호쿠산에서 직수입한 사쿠라(벚나무)나무를 심었음. 이렇게 하여 1933년 10월 1일 이왕직의 명의로 덕수궁을 일반인에게 공개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덕수궁을 완전히 격하시킨 것임.

고종황제 승하가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덕수궁에서 3·1운동이 일어났으며 해방 후인 1946년 덕수궁 석조전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미·소공동위원회 예비회담(1월 16일)과 제1차 본회의(3월 20일)가 열린 곳임.

1922년 일제가 이른바 덕수궁 돌담길을 뚫으면서 돈덕전이 헐리고 선원전 영역도 모두 헐렸던 것이고 일제는 덕수궁 선원전과 그 일대를 헐고 식민지 교육기관들을 차례로 지었음.

일제는 1922년 엄비의 혼전을 헐고 그 자리에

경성제일여자고등학교를 짓고 1923년 길 건너편에는 경성여자공립보통학교를 지음. 이뿐만 아니라 1926년 경성방송국 1층 본관과 부속건물을 세우기도 하였음.

□ 미대사관 및 직원숙소 건립부지

경기여고 부지와 현 하비브 하우스(영빈관) 북쪽을 포함한 지역에 위치했던 선원전은 조선왕조와 대한제국시대에도 궁궐 안에 자리잡고 있어 가장 존귀하게 받아들여지며 일상적으로 기념되던 공간이었음.

미대사관이 덕수궁 내에 지으려는 복합단지에는 조선총독부의 약 1.8배에 이르는 것으로 일제시대에 일본 정부가 당시 경복궁 내에 총독부를 세워 민족적 자존심을 짓밟았듯이 미대사관 축의 행위는 이보다 더한 국권침탈행위로 볼 수 있음.

정동지역이 처음 변화하기 시작한 것은 미국 공사가 이곳 땅을 매입하기 시작한 1883년 5월 20일 즈음인데 1880년 초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은 4대 문안에 거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으며 외국사절단들도 4대문 밖에 건물을 지어야만 했음.

한미 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된 1882년 이후 미국 21대 아더 대통령은 1883년 3월 7일 조선주재 초대 미국특명전권공사로 푸트(H.Foote)를 임명했음.

영국과 독일이 정식 외교사절이 아닌 영사만을 임명하고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지위의 외교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이것만 보아도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가늠해 볼 수 있음.

1883년 한양으로 들어온 푸트공사는 조선해관 총세무사로 있는 필렌도르프(독일인)의 집에 머무르다 1883년 5월 20일 민씨 일가의 민계호 소유의 사저를 구입하여 미공사관을 개설했음.

‘경성부사’의 기록에 의하면 푸트 공사가 1883년 당시 중부 정동에 있는 민계호 소유의 사저를 구입하였다는 기록이 나옴. 미국의 덕수궁 터 구입문제의 시발이라고 볼 수 있음.

미국의 정동지역 땅 매입은 1883년 5월인데 조선에서 외국인의 땅 매입이 가능했던 것은 1884년 10월부터임. 이를 보아도 미국인이 조선의 땅(정동)을 불법 취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미대사관저는 원래 덕수궁 소유였던 것이 여흥민씨 일가의 것으로 넘어간 것임. 민씨 가문은 조선조 말에 고종과 혼례를 올린 명성황후의 집

안으로 명성황후시대에 경운궁은 명성황후 민씨 집안의 소유물이나 다름없었음.

미대사관의 기록에 의하면 미대사관저 자리는 민계호, 민영교의 사저였는데 푸트 공사가 1884년 8월 14일에 구입한 걸로 되어 있음. 또한 같은 해에 김감역 소유의 토지를 매입했으며 1890년 김영보의 토지를 매입해 총 3차례에 걸쳐 정동지역의 토지를 매입하였음.

1905년 을사보호조약으로 대한제국의 국권이 일제에 넘어가자 미국은 일방적으로 국교를 단절하고 본국으로 복귀하여 미국공사관은 동양척식주식회사로 넘어가기도 하지만,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으로 경운궁 석조전에 본부를 삼고 경운궁에 미군이 주둔하면서 옛 미국공사관은 다시 미국에 넘어가게 됨.

고종황제가 경운궁을 신궁으로 정해 옮긴후 황궁 500m 내에서는 높은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칙령을 내렸는데 1902년 5월 한성부와 외부(현 외교통상부)사이 오고간 보고서 내용을 보면

“궁궐 인근지역에는 외국인과 본국인을 막론하고 마음대로 서로 팔고 살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혹 외국인이 양옥을 높이 지어 궁중을 내려다 보니 그때마다 공무수행에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이에 각 궁궐을 열거 기록하여 보고하오니 살펴보고 각 궁궐 담장으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에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마음대로 새집을 짓지 못하도록 할 것이며 만약 옛집을 매매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공서의 허락을 받은 후에 팔겠다는 의사를 각 공관에 먼저 알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토록 대한제국 황실은 경운궁으로부터 500m 이내 지역에 대한 개발제한을 가하고 있었으며 집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었음. 또한 정동 일대의 옛집을 매매할 경우 한성부와 외부의 허락을 받도록 했음.

<문예진흥기금 확충의 문제>

□ 현황 및 문제

순수한 문화예술의 활성화와 국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1973년부터 시작한 문예진흥기금 모금제도는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하여 2003년 12월이던 폐지됩니다.

현재 조성된 4800억 원이 95년 기금조성 목표 설정 당시에는 12% 수준의 금리에 준해서 이자만을 가지고 문화예술계의 지원재원을 삼고자 했

으나 현재 금리가 4~5% 수준에 불과하여 문화예술의 지원수요 증가를 감당해 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문예진흥기금은 금액상으로는 총 지원금 신청액의 30%내외, 건수상으로는 35% 정도밖에 지원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계에서는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참여정부의 정책의지가 문예진흥기금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것이었고 문광부장관은 기금조성정책을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국고지원정책으로 전환하여 향후 5년간 250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질의) 그러나 과거 정부가 이룬 국가 전체 예산 속에서 문광부의 예산 1% 확보라는 업적을 지켜 나가면서 문예진흥기금 부족분 연간 500억 원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 그리고 문화관광부장관께서는 청소년육성기금과 관광진흥개발기금 등을 청소년 문화예술사업과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기본법 제66조의 청소년육성기금의 용도를 보면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지원, 청소년 교류의 지원, 기타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 전용문화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청소년 육성프로그램의 개발뿐만 아니라 지도자 양성문제도 예산이 부족하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의) 특히 청소년 보호 및 일탈 청소년 재활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 등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데도 청소년육성기금을 운용 외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가용예산은 또 어디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 다음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의 기금 용도를 보면 관광호텔·가족호텔 등 관광숙박시설의 건설 지원, 관광숙박시설, 휴양콘도미니엄업 등 관광시설의 개보수 지원, 국민관광시설 확충 지원, 일반 여행업, 카지노업, 기념품 판매업 등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지원, 외래관광객 유치 지원 사업보조, 관광연구기관 운영비 및 연구사업

비 보조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와 2010년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 2010년 세계 해양박람회 개최 등 외래 관광객 1000만 명 유치를 위해서는 관광 인프라 확충과 관광사업체의 경쟁력 제고에 치중해야 할 뿐만 아니라 특히 수도권외의 관광 숙박시설은 현재에도 약 3000실이 부족하고 2010년에는 약 1만 7000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의) 이토록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이 기금을 이용하여 순수한 지역문화 예술 활성화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무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나라의 순수 문화예술에 대한 공공지원액은 국민 1인당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0개국 평균치의 2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토록 문예진흥기금의 모금이 중단된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또한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된다면 문화예술 수요는 증대 일로에 있어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문예진흥기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문화정책개발원이 연구정책자료로 2001년에 내놓은 '문예진흥기금 적정규모 산정 및 재원확충방안'이라는 자료집에 의하면 OECD 주요국과 비교할 때 1조 8000억 원 가량을 적정 규모로 제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2011년까지 1조 4000억 원 가량의 문예진흥기금을 확보해야만 문화예술 지원 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질의) 문광부는 향후 5년간 사업비 부족액 2500억 원의 예산확보만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후의 문화예술 활성화와 국민들의 문화향수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예술정책과 예산확보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지금부터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 기획예산처가 내놓은 향후 경륜·경정 수익금 매출자료에 의하면 2004년에 2834억 원, 2005년 2528억 원, 2006년 3020억 원 등으로 이러한 수익금에 대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 시행경주는 15%, 지방자치단체 시행경주는 2.5%, 배분기준으로 문예진흥기금을 확보해 낸다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2363억 9100만 원을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질의) 그래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륜·경정법을 개정하여 그 수익금의 일부를 기금 조성에 활용하자는 논의도 우리 위원회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문예진흥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구성문제>

□ 현황과 문제

문광부 주요현안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기존의 문예진흥원을 문예진흥위원회로 개편하여 위원회가 정책입안 및 집행기능 등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정부는 정책승인, 사후 결과 분석·평가 및 제도개선을 담당하게끔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별로 문예진흥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자율기구로 정착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임·음반·애니메이션 등 여타의 분야도 위원회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광부는 또 문화행정혁신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정부 산하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지난 3월 12일 감사원의 조사에 의하여 지적된 바 있습니다.

현재 중앙행정기관은 18부 4처 16청 등 38개 기관입니다.

이에 비해 법적으로 독자적 행정기능을 가진 행정위원회만 35개로 숫자상 중앙부처와 같다고 봅니다.

이밖에 각급 국가기관 산하의 각종 위원회가 325개,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에 1만 500여 개의 위원회가 있음. 그래서 우리나라의 행정조직을 보고 위원회공화국이라고 불려질 정도입니다.

우리 문광부 산하에도 위원회가 5개의 위원회(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간행물윤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행정의 민주화, 다원화 사회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다수의견을 통한 의사결정이 행정부의 폐쇄주의, 관료들의 독선과 편견에 제동을 걸고 다양한 의견과 전문지식을 반영시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집단의 대립으로 의사결정의 신속성이 떨어지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다수 의원을 통한 이권개입이 많아지는 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의 1만여 개가 넘는 위원회를 보면 일부에서는 파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예산의 낭비뿐만 아니라 부처 간의 갈등, 정부조직의 비대화로 행정부에 대한 불신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급 산하기관과 지자체의 경우는 밥만 먹고 헤어지는 위원회, 회의록도 없는 위원회,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등 제 기능을 못하는 위원회가 부지기수입니다.

질의)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현실을 보면서 어느 일간지의 경제부 기자가 쓴 컬럼을 보면 “책임있는 정부는 위원회를 만들지 않는다.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에서 위원회 제도의 비극이 출발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을 민간 자율기구에 맡긴다는 명분하에 이토록 새정부 들어 우리 문광부에서도 각종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은 재고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답변 바랍니다.

지난해 9월 부산에서 개최된 아시안게임에 북한을 포함한 43개국에서 총 1만 1250여 명의 선수와 일행들이 참가하여 사상 최대규모를 자랑하였습니다.

특히 350여 명의 북한 선수와 우리나라 선수들이 공동 입장하였고 북한의 응원단이 참가하는 등으로 남북 체육교류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계기로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의 실상을 알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북한 선수들이 참여함으로써 남북 간의 긴장완화와 평화유지의 확신을 세계에 심어주게 되어 아시안게임이 열린 10월 한 달 동안에 17만여 명의 외국 관광객이 부산을 찾아 약 4700억 원의 관광수익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1조 8000억 원의 투자와 소비지출이 발생하고 이를 통해 6조 2000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18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금년 8월에 대구에서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가 개최됩니다. 이 대회 또한 지구촌 대학생들의 스포츠 축제로 세계 170여개국에서 1만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대회에 북한의 대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다면 부산 아시안게임 때와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북한에는 4년제 대학이 290개가 있으며 대학생의 숫자도 31만 명이나 됩니다.

앞으로 21세기 통일을 지향하는 젊은 세대들이 한 자리에서 만나 스포츠와 문화예술을 통해 동질성을 회복해 나간다면 우리의 앞날은 밝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특히 동료 의원이신 김원웅 의원께서 평양을 방문하여 오는 7월 제주도에서 열리는 남북통일 민족평화체육축전에 북한이 참여하기로 합의를 봄으로써 민족축제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질의) 아시안게임에 북한 선수들이 참여함으로써 엄청난 효과를 보았듯이 금년 8월에 개최되는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에도 북한의 대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장관께서는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창덕궁 토끼 방사와 문화재 보호 문제>

□ 현황 및 문제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인 창덕궁 내의 곳곳에 토끼들이 두세 마리씩 떼지어 몰려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창덕궁 관리소에 따르면 2~3년 전 당시 관리소 직원들이 수십 마리의 토끼를 궁궐 안에 풀어 놓았다고 합니다.

또한 관리소 측은 관람객이 좋아할 것으로 보고 방사했고 실제로 일본 관광객들이나 어린이들이 관람을 하다 토끼를 보면 무척 좋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끼는 땅을 파고 나무를 갹아먹는 습성과 강한 번식력으로 자칫하면 창덕궁 안의 문화유산을 해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어느 시민은 지난해 말부터 창덕궁 토끼 방사 문제에 대해서 문화재청에 시정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민은 창덕궁 내에 토끼 방사로 인하여 문화재를 관람하는 정숙한 분위기를 깨뜨리고 번식력이 뛰어난 토끼의 개체수가 무한정 늘어나 창덕궁 내의 생태계 혼란이 있을 수 있으며 창덕궁 전각 등의 훼손이 우려된다고 청구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한 시민의 민원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이토록 시민의 민원에 대해 문화재청이 경미한 사항으로 치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의) 현재 창덕궁 내에서 번식하고 있는 토끼 수는 몇 마리인지 아십니까?

질의) 언제 누구에 의하여 방사되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질의) 국가지정문화재 안에 동물의 사육이나 번식 등의 행위가 문화재보호법상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까?

※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18조2의 3항에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구역 안에서 행하여지는 행위의 금지사항이 나와 있는데 사항을 보면 “동물의 사육·번식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 창덕궁 내에 토끼를 방사한 행위가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얻은 사항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하남시 백제유적지 그린벨트 해제 문제>

□ 현황 및 문제

경기도 하남시는 한성백제 500년의 도읍지로 추정되는 가운데 그동안 대학교 박물관 및 문화재 연구소가 지표조사를 실시하면서 수많은 유적과 유물을 발굴해 냈습니다.

이러한 유적지가 그동안 제대로 조사 및 관리되지 못했던 것은 문화재청의 열악한 예산 형편과 관할 행정기관의 의식 부족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남시의 공식 통계만 봐도 유적지는 천왕사지 등의 대형 건물터와 사찰터 23개소, 이성산성 등 토성 5개소, 고분 170기, 유물산포지 24개소 등 200여 곳이나 됩니다.

※ 1995년부터 하남시 유적지에 대한 지표조사를 줄곧 해 왔던 세종연구원은 하남시 일대는 한국 최대의 매장문화재의 보고임이 틀림없으며 도시공학적으로도 거대한 고대도시의 흔적이 여러 군데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이나 하남시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유적지를 방치하거나 파괴행위를 방조 및 허용해 왔다고 말하고 있음.

지난 3월 31일 하남시는 고대 토성과 도시 건물 터가 발견되고 있는 춘궁동, 교산동, 하사창동 일대 그린벨트 180만 평을 해제하려고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남시는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 취락지역 용역

검토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고하고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르면 6월 늦어도 8월쯤 그린벨트를 해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남시는 과거 90년대부터 2000년 8월까지 유적지 내의 26만 2000여 평의 부지에 축사 6000여 동을 허가해 왔는데 앞으로 하남시가 그린벨트로 묶인 이 지역을 해제하고 가축사육조례까지 폐지하려 하고 있어 앞으로 유적지 내가 광범위한 가축사육장으로 변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동안 그린벨트로 묶여 있던 곳에는 교산동 토성(왕궁 추정지), 춘궁동 동사지, 백제 외편이 발굴된 천왕사지와 백제 초기 왕릉으로 추정되는 춘궁동 능너머 고분 등의 많은 유적지가 발굴되었는데 그린벨트의 해제로 이들 유적지가 무차별 훼손된다면 제2의 풍납토성과 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이 우려됩니다.

질의) 만일 하남시가 그린벨트를 해제하게 되면 문화유적지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즉각 해제를 중지하고 이 지역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궁 터 대리지표조사 문제>

□ 현황과 문제

2002년 8월 10일 외교통상부는 문광부에 건립 예정지 지표조사기관 선정에 대한 공식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후 이 문제를 관계부처 간 협의하에 문화재청이 떠맡게 되어 현재 문화재청이 지표조사기관을 선정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덕수궁터 미대사관 및 아파트 신축반대 시민모임”을 결성하고 우리의 옛 왕궁터에 외국 대사관 부속건물이 들어선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저지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 대사관 및 직원숙소 건립 불가 원인

미대사관 및 숙소를 건립할 수 없는 법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첫째, 현재 미대사관지를 건립코자 하는 곳은 덕수궁 경계로부터 약 10m, 구 경기여고 부지는 78m 거리입니다. 서울시가 지난 7월 16일 문화재보호조례를 개정했는데 이 조례에 의하면 국가 지정 문화재의 보호범위를 100m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건립이 불가합니다.

둘째, 미대사관 건립 연면적은 5만 3600㎡에

15층 규모인데 이 경우 서울시의 건축법 조례에 따르면 최소 529대의 주차면적을 확보해야 하는데도 미대사관 측은 160여 대에 불과하다며 업무시설이 아닌 기타시설로 분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기타시설은 170대의 주차면적만 확보하면 되나 대사관 건물을 기타시설로 분류할 경우에는 건교부가 주차장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셋째, 현행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은 20가구 이상의 모든 공동주택은 주차장과 어린이 놀이터 같은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공개청약을 통해 일반분양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대사관 측 계획은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채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 외교시설에 대한 특례조항을 삽입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건설교통부는 특례조항을 삽입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넷째, 문화재보호법 제43조2에 보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외곽경계에서 500m 이내에는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현재 정릉 일대가 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그리고 국가 지정문화재가 있는 덕수궁터 내에 대사관과 직원숙소를 건립한다는 것은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도 위반하는 일입니다.

질의) 엄연히 법규에 어긋나는 건물을 짓겠다는 데 대해서 과연 지표조사를 한다는 게 타당한 일인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과거 조선시대의 궁궐이 있었던 터에 외국 대사관을 짓도록 허용한다는 것은 국가적 수치일 뿐만 아니라 유구한 역사를 가진 문화국민의 수치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지표조사는 물론 미대사관 신축과 직원숙소 건립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소견을 묻고자 합니다.

<사적 원구단 훼손문제>

□ 현황 및 문제

1897년 고종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세운 원구단(사적 157호)이 위탁관리업체인 조선호텔의 보수, 복원으로 오히려 원형을 잃어버린 일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지난해 조선호텔이 시행한 조경공사에서 원구단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헐려 원형을 잃은 채 복원되었고 황궁우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깔아 놓았던 바닥의 옛 돌도 파헤쳐졌으며 이 돌들을 가

져다가 다른 진입로를 보수하는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한 황궁우 한편에 쌓아 놓았던 옛 부재들도 멋대로 용도변경되어 쓰이거나 폐기되었다는 것입니다.

조선호텔 측은 이 공사가 지난 2001년 8월 문화재청 문화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당시 문화재청이 내려보낸 공문에는 “황궁우 출입문을 보수토록 할 것”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을 뿐 출입문의 원형을 없애고 복원하라는 내용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출입문의 경우 원래는 155cm의 높이였는데 조선호텔 측은 외국인들을 비롯한 관람객의 머리에 자꾸 부딪친다는 이유로 190cm 정도로 높였으며 옛 부재들은 다 없애고 새로운 부재로 문을 조성하는 바람에 원형을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황궁우의 문이 낮은 이유는 황제가 제사지내는 곳이므로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라는 뜻으로 낮춘 것인데 외국인들을 위해 문을 높였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질의) 문화재청은 이러한 국가 문화재의 보수, 복원사업에 대해 허가만 해 주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으며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비일비재로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사전에 설계도면의 점검과 공사 감독을 실시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문화관광부)

○金秉浩 委員

김병호 위원은 4월 15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문화관광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이창동 문화관광부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했다.

<새정부의 언론관>

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대통령 비서실 워크숍에서 “언론은 그야말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데 누가 견제하나, 없다. 특히 구조적으로 대단히 집중된 권력을 갖고 있다. 언론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국민으로부터 검증, 시험, 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 내부적 통제도 봉쇄돼 있다. 통제되지 않은 권력, 검증받지 않은 권력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언론관을 피력했다.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언론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그대로 나타난다. 따라서 언론은 곧 국민이다. 언론을 권력으로 보는 시각도 이상하지만 굳이 권력으로 본다면 국민이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격이 되는데 누가 국민을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인가?

대통령은 또 언론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즉 언론인들은 국민으로부터 검증, 시험, 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언론인 그 자체가 국민인데 누구에게 검증, 시험 감사를 받는다는 것인가?

대통령은 아울러 언론기관은 내부적 통제도 봉쇄돼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기관에 주어지는 정보청구권, 취재의 자유, 취재원 보호권, 보도할 권리 등은 일반 국민의 권리이며 언론기관은 그 같은 권리의 수탁자이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검증, 감시, 통제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 속에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다른 견해가 있는가?

<권력과 소유와 경영으로부터의 자유>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4일 KBS 창립기념리셉션에서 “앞으로 방송사에 전화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방송사가 정권의 눈치를 살피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 밝혔고 지난 7일 신문의 날 기념식에서는 “언론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시대는 지났고 이제는 언론자본과 광고주로부터 자유를 생각해 볼 시기”라고 말했다.

한국 언론의 역사는 권력으로부터의 자유와 자본으로부터의 자유를 위한 투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언론인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자유다. 단언컨대 아직 어느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만약 대통령의 의지가 진정이라면 대통령은 방송위원회, KBS, MBC, EBS, YTN, 연합뉴스 등에 대한 직·간접적인 개입을 중단함으로써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실현시켜 주고 또 경영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한국방송광고공사로부터도 정부가 손을 떼야 한다. 그래야 권력과 자본과 광고주로부터 이들 방송사와 통신사가 자유스럽게 되지 않겠는가?

<새정부의 언론정책>

본 위원은 새 정부의 언론정책이 뭔지 아직 파악 못 하고 있다. 현재 청와대, 문화관광부, 국정홍보처가 취하고 있는 일련의 조치 등을 언론정책이라고 칭하기에는 너무나 지엽적이다.

우선 새정부는 언론과 홍보를 혼동하고 있다고 본다.

문화관광부장관이 취임 후 첫 언론개혁 조치로 내놓은 것이 “홍보업무 운영방안”이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행정정보 서비스 개선방안”정도

로 해야 올바른 명칭이고 올바른 행정 자세로 본다. 그런데 언론에 대한 시각이 사시로 되어 있기 때문인지 언론기관을 “홍보기관”으로 보았거나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리려 한 정보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접근해 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가?

브리핑제도란 좋은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기본적인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언론은, 즉 국민은 다양한 관심과 핵심적인 내용에 항상 배고파한다. 따라서 정부는 공식적인 브리핑과 보충취재의 자유는 언제나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언론은 취재 제한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만약 앞으로 언론과의 관계가 악화될 경우 브리핑 거부 사태도 예상치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장관은 “특종은 쓰레기통 뒤져서 쓰라”고 했지만 기자는 쓰레기통 아니라 난지도를 거쳐서 지구 끝까지라도 가서 뒤진다. 이라크전 종군기자들을 보라. 기자들은 독자를 위해, 시청자를 위해 목숨까지 건다.

오보와의 전쟁이라는 명분으로 실제적으로 취재를 제한하는 조치는 철회되어야 한다. 오보를 막으려면 더 자유롭게, 더 광범위하게 취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가?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일 국정연설에서 “개인이나 집단이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진보도 있을 수 있고 보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공존할 줄 아는 보수, 공존할 줄 아는 진보의 시대를 가야 합니다. 더 이상 생각이 다른 사람이나 집단을 타도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됩니다.”라고 좋은 말씀을 하면서 정부도 언론도 정도로 가자고 역설했다. 정말 좋은 제의이다.

이 말씀은 국민에게보다도 정부 자신에게 또 대통령 자신에게 더 깊이 더 무게를 두고 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한다. 장관은 이같은 대통령의 말씀에 따라 언론에 대해 지금까지의 입장을 조정할 의사가 없는가?

<언론감시국의 오명을 벗을 수 있는가?>

국제언론인협회(IPI)의 2003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을 여전히 언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해 놓고 있는데 언론감시국에 포함된 국가는 러시아,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스리랑카, 한국 등 정치 후진국 5개국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한국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음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하

며 현 정부의 언론정책으로 볼 때 금년 6월에 열릴 IPI총회에서 우리나라를 언론탄압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히라고 질의했다.

<문광부의 방송정책권 회수>

문화관광부가 지난 4월 8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방송통신 융합에 대비한 방송영상산업 지원정책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설립할 계획으로 보고하면서 영상콘텐츠 진흥정책을 문광부에서 관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인·허가, 규제, 심의 등의 방송정책은 방송통신위원회(가칭)가, 영상콘텐츠 진흥정책은 문광부가 관장하겠다는 것으로 방송위의 주요 기능의 하나인 영상콘텐츠 진흥정책을 문광부로 이관하겠다는 발상임.

문광부의 방송정책권 회수기도는 문광부의 인수위 업무보고 시에도 제기되었으며 정부출범 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문광부가 주장하는 근거는 방송법 제27조 “방송영상정책에 관련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악용한 사례임.

현행 방송법은 비록 내용에 있어서 시대변화에 따라 개정되어야 할 조항이 많지만 제정 이유가 방송에 대한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독립을 보장한다는 원칙에 따라 제정되었음.

○ 업무보고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영상콘텐츠 정책을 방송위로부터 문광부로 이관하겠다는 것은 방송법 제27조를 악용한 것이 아닌가? 이것이 방송정책권을 회수하려는 의도로도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 국내 방송, 통신산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하고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관계기구의 일원화 및 방송통신관계법을 정비해야 한다. 현재 관계부처 간의 협의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 방송통신위원회(가칭)가 구성된다면 문광부는 방송관련 기능(방송법상 영상정책의 협의조항, 방송광고정책 등)의 폐지 및 이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문광부의 견해는 ?

<신문고시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지난 3월 4일 미 국무부가 발표한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의 신문사의 세무조사는 언론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하고 있고 동 보고서에서 “지난해 한국 정부는 주요 언론사에 대해 대규모로 세금 및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를 실시해 정부에 대한 언론의 비판을 억제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의혹을 촉발했다.”고 지적했음.

이처럼 지난 정권에서는 언론을 길들이기 위해 1999년에 폐지된 신문고시 제도를 2001년에 부활시켰으며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등 전방위적으로 언론을 압박하였음은 공지의 사실임.

다행히 정권 말에 이르러(2002년 12월 30일) 공정위는 언론사 과징금 취소 결정을 내렸고 인수위도 12월 31일 더 이상 이를 문제삼지 않겠다고 발표했으나 당시 노 당선자의 과징금 취소 결정에 대한 재검토 지시로 공정위는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받게 되었다. 당선자의 이러한 조치는 언론에 대한 불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언론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언론의 자율경쟁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임.

신문고시를 이용하여 비판언론에 제재를 가하려는 시도가 재개되고 있다. 지난 3월 17일 박종웅 위원이 신문고시 개정에 대한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고건 총리는 “신문협회의 자율감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공정위에서 신문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직접적으로 처리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신문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신문고시 11조’를 개정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신문고시 11조 : 과다경품 등 불공정행위는 신문협회가 자율조치하고 그래도 안되면 공정위가 나선다.)

신문시장의 경쟁에 대한 제재는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대로 시행을 하면 되는 것인데 언론사의 세무조사를 위해 갑자기 부활되어 그 목적이 신문사 간의 자율적인 공정경쟁 유도라기보다는 권력자의 비판언론 길들이기로 이용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문고시는 폐지되어야 함.

○ 신문의 자율경쟁이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 공정위의 과징금 부가 취소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공정위 과징금 취소는 공정위 스스로 그 행위가 비정상임을 인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고시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장관의 견해는?

<부산국립국악원 건립에 따른 추가 예산확보에 문화부는 앞장서라>

부산국립국악원은 부산, 경남지역에 전승되고 있는 토속민요를 비롯한 중요무형문화제, 민속자원 등의 연구, 보존을 위해 부산진구 미군 숙소 부지(유숙)에 총 사업비 458억 원을 투자하여 2002년~2007년까지 건축하며 현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에 있음.

기본설계를 실시한 결과 사업비 증가(458억 원~650억 원)로 추가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며 국립국악원건립추진위원회에서 주변경관과 교통소통 등 국악원 예정부지 주변지역 매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나(1179평, 약 40억 원 소요)문화부는 부지매입을 부산시에 떠맡기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추가부지 매입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6억 원의 국비가 추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음.

○ 국립국악원 업무보고서에 동 현안에 대한 설명이 왜 누락되었는가? 국악원장은 현재 부산국립국악원 건립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람.

○ 아울러 문화부장관은 부지 추가 매입을 위해 부산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국제영화제 전용관 건립이 시급하다>

부산 국제영화제는 7회를 거치는 동안 규모와 내용면에서 국제영화제에서 8대 영화제로 평가받고 있음. 앞으로 부산 국제영화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영화전용관 건립이 시급한 실정임.

영화진흥위원회 업무보고에 따르면 금년도 예산 중 예술영화 및 시네파크 지원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며 영화진흥위원회가 매입 또는 임차하여 운영하는 예술영화 전용관으로 서울 2개 관, 부산의 1개 관을 추진 중에 있음.(소요예산 60억 원)

동 사업과 관련하여 부산 국제영화제 전용관 건립을 위한 영진위의 예산지원 방향과 문화관광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서비스시장 개방 양허안에 대한 장관의 소신은 변함이 없는가?>

○ 지난 3월 31일 정부는 도하개발아젠다(DDA) 서비스 시장 개방 1차 양허안을 확정하였으며 영화-비디오 상영서비스, 라디오-TV 서비스, 뉴스 제공업 등은 양허안에서 일단 제외하고 개방 여부를 더 검토키로 했음.

양허안 제출 보류는 문화시장 개방 절대 불가

라는 이창동 장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인가? 양허안 제출 연기 외에 문화시장 개방 불가 입장을 장관직을 걸고 견지할 수 있겠는가?

○ 문화의 정체성과 다양성을 위한 국제적 연대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특히 46개국 장관들이 참여하는 세계문화부장관회의(INCP)와 새로운 문화기구 창설에 참여할 계획이 있는가?

○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 당시 시청각서비스 양허 협정에는 ‘케이블 TV방송 공급업을 제외한 영상 및 비디오 제작 및 배급 서비스’분야는 어떠한 시장제한도 두지 않는다고 양허협정을 맺었음.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인 “제작, 배급(CPC 96112, 96113)”이 PP(프로그램 공급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해석을 둘러싸고 방송위원회와 문화관광부 및 외교통상부 사이에 의견이 차이가 있다. 양허협정에 PP(프로그램 공급업자)가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란다.

<문예진흥기금 폐지에 따른 대책>

4월 8일 문광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3년 문화관광부 주요 현안 업무보고”에서 금년 말로 종료되는 문예진흥기금은 (현재 4800억 원 적립) 이자율의 하락으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기금조성정책을 재검토, 향후 5년간 필요한 문예진흥사업비 지원액 2500억 원을 국고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음.

○ 학계 및 문화예술계의 주장에 따르면 적정 문예진흥기금의 규모가 1조 6000억 원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예진흥기금의 적정규모는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고 있는가?

○ 문예진흥기금 중 현재 1억 원인 ‘독립문화기금’의 비율을 5%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문예진흥기금이 폐지되는 마당에 독립문화기금이 보장될 수 있는가?

○ 지금까지 문예진흥기금이 이자수입으로 운용되었다는 점은 이자율에 따라 가용할 수 있는 범위가 탄력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기금 운용의 탄력성은 지속적인 정책수립을 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데 지난 4월 10일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창동 장관은 “그 정책의 기저에는 문화예술 진흥에 정부가 예산을 지속적으로 쓰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감이 깔려 있다.”고 직접 발언한 부분에서도 알 수 있음.

따라서 기금을 폐지하고 국고보조금의 형태로 지원한다는 점은 정부가 문화예술 진흥의 필요성

을 절감하고 있다는 점을 역설하는 것이지만 지속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비탄력적인 운용계획 즉 어떠한 상황에도 외압을 받지 않는 절대적인 운용계획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 문예진흥기금의 폐지와 국고보조금의 충당을 청소년육성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등을 청소년 문화예술 사업과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재원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들 기금의 부족분은 무엇으로 충당할 것인가? 이는 아랫돌 빼서 윗돌 끼는 격 아닌가? 경륜 수익금 중 일부를 문예진흥기금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경륜법 개정안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문화관광부)

○李允盛 委員

<저작권 위탁관리업 관련>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문광부는 2003년 2월 초 한국음반산업 협회소속 30개 음반기획·제작 및 유통업체들이 벅스뮤직, 나인포유 등 2개 스트리밍서비스업체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한 것과 관련, 지난 3월 17일 온라인상 음악 사용에 대해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으로 2002년 12월 13일 ‘한국음원제작자 협회’가 신청한 “저작인접권 위탁관리안”을 저작권법 제78조에 의거 허가했음.

○ 그러나 이에 대해 전국 10개 음반기획 및 제작, 유통사로 구성된 ‘음반회사 협의회’가 위탁관리 허가조치에 반대 성명을 발표(3월 18일)에 이어 음악관련 시민단체들까지 위탁관리를 반대하고 있는 실정임.

※ 한국음원제작자협회

- 음반제작자의 음반에 관한 저작인접권의 위탁관리를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여 음반산업 협회, 연예제작자협회, 문광부 합의하에 설립되어 2001년 11월 17일 문광부로부터 비영리사단법인으로 허가받았고 2001년 12월 17일 판매용 음반의 방송보상금 수령 및 분배단체로 지정되었음.(보상금 25% 이내)

cf. 현재 112개 음반사가 회원으로 가입.

※ 음악 스트리밍서비스

- 인터넷 접속을 통해 실시간으로 음악감상을 할 수 있는 시스템

※ 제78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① 저작권위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저작권위탁관리업자”라 한다)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 그밖의 관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 다만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질 의

○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탁관리업 허가는 문광부 위임전결규정에 의해 국장 전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당시 장관에게 간이보고 형태로 보고되었음.

○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안은 장관 결재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닌가? 장관은 보고 받을 당시 어떠한 입장을 취했는가?

- 위탁허가는 온라인 음악서비스 업체의 생명력을 좌우하는 조치라 생각하는데 특정단체에 집중적인 권한을 부여했던 사안 아닌가?

허가조치 후 음제협이 스트리밍서비스업체에 곡당 40원의 이용료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며 벅스뮤직에서 하루 3200만 곡이 네티즌들에게 제공되는 현실을 감안할 경우 1년에 4600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사후처리가 시급함.

※ 허가조치 후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자가 지불해야 할 음악저작물 사용료

▷ 스트리밍서비스의 경우

가입자당 월 500원×가입자수 또는 매출액의 20% 중 많은 금액

▷ 다운로드의 경우

음원당 단가(출반 3개월 이내 150원, 이외 80원)×다운로드 횟수 또는 매출액의 20% 중 많은 금액

▷ 통화 연결음·벨소리의 경우

매출액의 20% 등 4월 1일부터 적용

cf. 단, 음원제작자협회가 저작인접권을 관리하지 않는 음악은 제외.

○ 만약 현행대로 추진된다면 음제협에 가입되

지 않은 단체와 스트리밍 업체들의 경제적 손실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해결책은 있는가?

○ 이와 관련 음반회사협의회와 기획제작사협의회 회원사가 주축이 된 「민간 음원관리 대행업체 선정위원회」가 “인터넷업체와 통신사업자들이 온라인 음악시장을 관리하려는 움직임이 분주한데 비해 음반업체들은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오늘 음반유통업체 10개 사, 기획제작업체 28개 사 등 총 38개 사가 회원으로 등록되는 ‘민간 음원관리 대행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 민간 음원관리 대행업체가 선정되고 이들이 신탁관리 수수료를 징수하게 될 경우 위법성은 없는 것인지를?

○ 이에 따라 인터넷 음악사이트의 음원관리를 둘러싸고 문광부로부터 저작권접권 신탁관리를 받은 한국음반제작자협회와의 소위 ‘밥그릇싸움’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해결방안은 있는가?

<청소년 예체능교육 관련>

□ 현황

○ 지난 4월 9일 교육부는 사교육비를 줄이는 방안의 하나로 중등학교에서의 예체능계 교과목의 평가방식을 다섯 단계로 성취도를 매기거나 과목석차를 내는 기존의 방식 대신 학습수준을 글로 적는 “서술형 평가” 또는 과목이수의 여부만 기록하는 “성패(Pass/Fail)평가”로 검토할 것이라 했음.

○ 민감한 사안인 만큼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최종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어찌됐든 예체능 과외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판단됨.

□ 질 의

○ 사교육비 절감 차원의 접근법에서는 교육부의 방침에 동의함. 현대의 학교 교육은 인간으로서 바람직한 넓은 교양과 건전한 인격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전인교육을 지향하고 있음.

전인교육을 위해서는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예체능 교육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함. 그래서 국어·영어·수학 등의 과목 못지 않게 예체능계 교과목의 교육이 현대에서는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함.

이렇게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강조되어야 할 영역의 교육이 오히려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건전한 청소년 육성정책을 담당하는 문광부장관으로서의 견해는 무엇인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는 수능시험 제도의 개선, 대학입시의 자율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함.

그리고 전인교육을 위해서, 특히 현대 사회에서 강조되어야 할 정의적·창조적 영역의 교육 즉 예체능 교육을 강화할 방안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일선 예체능 교사의 목소리는 “지금도 학생들이 국·영·수 등 입시에 필요한 도구과목 위주로 공부한다.”며 “예체능 과목을 형식적으로 평가하면 아예 등한시하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며 걱정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음.

우리의 청소년 교육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는가? 그동안 말뿐이던 “인성위주의 교육”으로의 실질적인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문예진흥원 출판저작권 거래 관련>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문예진흥원은 남북한 공동의 ‘통일문학전집’ 발간사업과 관련 북한 문학작품 976편에 대한 출판권 확보를 위해 작년 2002년 12월 중국 민간중개업자를 통해 문예진흥기금 일부 1억 5000만 원을 북측에 지급, ‘문학전집’사업 추진과정에서 2003년 3월 4일 출판권 관련 증빙자료 3통(북한 조선문학예술출판사 관권위임 확인서, 북한 출판지도국 확인서, 북한의 중국 심양 총영사관 확인서)을 확보 북측과 출판권 계약 업무를 완료한 바 있음.

○ 이에 3월 24일자 주요 일간지(조선)를 통해 ‘돈이 북한 측에 전달되지 못하고 저작권도 사들이지 못해 발간에 중대한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

또한 만수기획 대표가 중국 선양에서 북한 문학 출판계의 고위실력자를 만났을 당시 “우리는 다른 나라 어느 중개상에도 우리 문학출판 저작권을 위임한 적이 없으며 민간 출판사도 아닌 공공기관인 한국 문예진흥원이 우리 측 저작권 양도도 받지 않은 채 무단도용해 ‘전집’을 내려는 행위에 대해 당에서까지 조사 중”이라는 발언을 들었다고 전한 바 있음.

※ 이에 현재 진흥원이 조사 중에 있음.

※ 추진개요

- 사업추진기간: 1999~2003년

- 사업추진예산: 현재 총 7억 6000만 원

- 수록대상작품: 1945.8.15~2000.12.31. 기간 중 남북한에서 발표된 문학작품.
- 수록대상: 작가 1004명(남 746, 북 258)/ 작품 5382편(남 4406, 북 976)
- 제작형태: CD롬 발간
- 제작일: 2003년 5월(예정)
- ※ 추진경위
 - 통일문학전집 기본계획 수립: 1999년 4월
 - 남북한 문학자료 목록화 작업: 1999년 5~8월
 - 남북한 수록대상 후보작품 조사연구 및 선정: 2000년 5~7월
 - 남북한 문학작품 원전 수습 완료: 2000년 12월~2002년 3월
 - 남북한 작품 게재 동의절차 추진: 2001년 7월~2002년 12월
 - 북한 출판권 확보 추진
 - 북한작품 출판권 관련 증빙자료 확보: 2003년 3월 4일
(북한 조선문학예술출판사 판권위임 확인서, 북한 출판지도국 확인서, 북한의 중국심양총영사관 확인서)
 - 통일부 반입 승인 : 2003년 2월 27일
 - 출판권 계약금 지급 : 2003년 3월 17일
(대훈서적/장지민 3000만 원, 조선문학예술출판사 1억 5000만 원)
- ※ '통일문학전집 발간'추진 과정
 - 북한 작품의 원전수습은 2001년 10월 30일 '만수기획'과 수의계약을 통해 추진완료(계약금 3800만 원 지급)
 - 북한 작품의 출판권 확보는 2002년 12월 30일 '대훈서적'과 계약체결(계약금 1억 8000만 원)
 - 이에 대훈서적이 수록대상 작품의 출판권자인 북한의 '조선문학예술출판사'의 판권위임을 받은 중국 민간중개업자 '장지민'과 수의계약 체결(계약금 중 대훈서적/장지민 3000만 원 분배 수령, 나머지 1억 5000만 원 조선문학예술출판사 전달)
 - 2003년 3월 4일 대훈서적이 장지민으로부터 출판권한을 재위임받고 진흥원에 위임 계약업무 완료
- 질 의
 - 진흥원은 지난 2002년 12월 30일 계약금 1억 8000만 원을 대훈서적과 민간중개업자(장지민)에게 지급, 이들을 통해 1억 5000만 원을 북

- 한 조선문학예술출판사에게 송금한 후 지난 3월 원전수습을 완료 발간제작 중
 - 현재 진흥원은 발간업무와는 별도로 북한측이 제기하고 있는 '조선문학예술출판사의 출판권 계약 거부 발언'에 대해 어떠한 입장인가?
 - '북측으로부터 거래금 1억 5000만 원이 수령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가? 계약금 송금의 경로는 어떻게 이뤄졌는가? 적법성 있는 절차였는가?
 - 이와 관련 현재 장지민은 중국 민간중개업자로서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신분인 것으로 아는데 사실인가? 대훈서적으로부터 장지민을 통해 계약금이 북측에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통보를 받았는가?
 - 또한 북한 조선문학예술출판사의 원전수습을 맡은 만수기획은 중국소재의 대리업체를 통해 문학작품을 반입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전수습 경위를 설명하라?
 -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만수기획은 국정원 북한도서도 납품했던 것으로 아는데 원전수습 절차와 수습행위에 위법성이 없었는지?
 - (통일부 승인 전에 원전수습을 위해 북측과 거래했다면 위법 아니냐?)
 - 액수가 크지는 않으나 '문예진흥기금'으로 북한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확실한 사실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중개상에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것은 사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
 - (참고로 이러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남북관계기본법 등이 발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측과의 저작권 거래에 대한 법안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진흥원의 입장임)
 - <월드컵대회 잉여금 배분 관련>
 - 현황 및 질의
 - 최근 문광부는 월드컵대회 잉여금 관련 '월드컵대회 조직위원회 정관 제26조(잉여금 처리) 및 제28조(재산의 관리)근거'에 따라 축구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재원배분에 대하여 관련기관·단체와 외부 전문가 협의를 거쳐 배분계획(안)을 수립
 - 향후 배분계획(안)에 대하여 월드컵조직위원회 집행위원회가 심의 의결하고 문광부장관의 승인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 월드컵 잉여금 활용방안(총 1630억 원 추산)

- 개방형 축구 종합훈련장 4개 권역별 1개소 건립(500억 원)
- 12개 도시 인조잔디구장 조성(150억 원)
- 유소년·여자축구 육성(200억 원)
- 2006년 월드컵 등 대비 국가대표축구팀 경기력 향상 지원(200억 원)
- 월드컵 개최도시 경기장 활용도 제고 및 체육진흥을 위한 지원(개최도시별로 30억 원씩 총 300억 원 지원)
- 프로축구 시민구단 창단 지원(대구 20억 원, 대전 10억 원)
- 장애인복지(체육)기금 출연(150억 원)
- 서울상암경기장 내 '월드컵자료관' 설치(50억 원)
-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대비 대표선수 경기력 향상 특별지원(50억 원)

cf. 일본 월드컵 잉여금 총 1380억 원 추산.

○ 그러나 올 6월 조직위가 해체될 예정이어서 향후 사업 추진에 대한 관리감독 및 책임소재에 대한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잉여금 배분이 장기적인 검토없이 지방자치단체 소관별로 '나뉘먹기식 행정처리'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음.

○ 4월 현재 월드컵 조직위 집행위원회가 잉여금 배분에 대한 책임권을 갖고 계획한 만큼 해체되는 6월 이전에 모든 배분안을 확정짓는다는 방침인데 가능한 것인가?

- 현행대로 문광부 승인으로 잉여금 배분방침

을 결정짓되 잉여금 수령이 가능한 구체적인 지자체들에 대해 장기적인 인프라 조성을 위한 타당성 검토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 한편 월드컵대회 공식상품화권자로 선정된 'Kolon TNS World'의 부도 및 월드컵상품의 판매 부진과 관련 지난 3월 17일 '월드컵 상품 중소기업인 피해대책 협의회' 총회에선 피해보상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토론회가 있었음.

○ 과거 88올림픽에서는 98개 업체가 회장사업에 참여하여 96개 업체가 부도, 월드컵에서는 2000여개 업체 참여로 전체 부도 그리고 부산 아시안게임에서는 48개 업체 참여가 전체 부도를 말하는 반복적인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데 장관은 알고 있는가?

※ 세계 주요행사의 중소기업 업체 도산현황

- 88서울올림픽 (98여개 업체 참여 96개 업체 도산)
- 2002 World Cup(2000여개 업체 이상 참여 전부 도산)
- 2002 부산 아시안게임(46개 업체 참여 전부 도산)

○ 현재 조직위원회에서는 FIFA의 지원금 1억 달러(1200억 원)와 수익금을 포함한 1630억 원을 집행위와 문광부 승인하에 배분결정하기로 계획안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 이 계획안을 통해 이들 중소기업체의 피해를 (186억 원 상당, 50% 수준 요구) 구제할 방법은 없는가?

항 목	금 액		비 고
지 원 금	1억 \$ (1200억 원)		2002.9.30. FIFA에서 조직위에 지급
코오롱TNS월드 OEM업체피해현황	부도어음	176억 상당	코오롱TNS 월드 부도시점 자료
	미지급채무	9억 8000	
	TOTAL	186억 상당 (현재 50%요구)	
지급 로열티	194억 상당		OEM+라이선스 계약서 근거
TOTAL	381억 상당		

※ 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manufacturer]주문자 상표생산(자)

<문예진흥기금 관련>

□ 현황

○ 문광부는 올해 말 문예진흥기금 모금제도의 폐지가 확정된 상황에서 시중금리의 지속적 하락으로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기금조성정책을 재검토하여 문화예술계 지원정책을 문예진흥기금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국고지원정책으로 전환한다고 했음.

○ 이는 문화예술계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비 국고지원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문예진흥기금 대폭 확충이라는 대통령 선거공약의 실질적 이행차원이라 함.

□ 질 의

○ 조성기금의 이자수입에 의한 문예진흥사업비 조달정책은 재검토가 불가피하여 청소년 육성기금과 관광개발진흥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라 했음.

○ 이는 역으로 청소년과 관광관련 예산이 축소될 수도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한 보완책은 무엇인가?

○ 향후 5년간 국고에서 연 500억 원씩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 예술원 관계자들은 매년 국고지원은 예산 확보의 불확실성 때문에 문화예술활동에 위축이 올 수도 있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륜·경정법 개정을 통한 예산지원이 더 안정적이라 판단하고 있음.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LOTTO복권에서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선의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사행산업의 힘을 빌어 순수 예술분야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까지 온 것은 오늘날의 세태를 반영하는 것 같아 개탄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다른 해법이 있는지?

※ 현재 문예진흥원의 자체 수입은 378억 원 정도이고 연간 현재 필요 예산은 연 500~600억 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음.(이자수입 249억 원, 골프장 등 129억 원 등)

그리고 2011년경에는 연 1004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됨. 이렇게 된다면 갈수록 증가하는 연 예산을 국고로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됨.

그래서 더욱 안정적인 재원 확보책이 필요함.

<방송영상산업 진흥정책 관련>

□ 현황 및 질의

○ 최근 문광부는 방송영상산업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지상파방송의 외주제작 비율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한국형 외주제작 전문채널인 'Indi Channel'을 설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음.

※ 한국형 외주제작 전문채널 'Indi Channel' 설립 검토

○ 취지: 지상파 3사의 독점구조 견제, 독립제작사 활성화 지원 등

○ 운영방안: 별도의 공익재단 설립, 주파수는 정통부와 협의

○ 편성: 모든 프로그램을 외주제작물로 편성

○ 향후계획: 2003년 타당성 연구, 2004년 설립 추진

cf. 영국 외주전문공영채널 '채널 4' 운영사례

영국 BBC, ITV 등 기존 지상파방송의 시청률 경쟁 등 폐해에 대한 대안으로 다양성, 실험성 제고 및 독립제작사 지원을 위해 81년 설립.

○ 문광부는 외주제작 전문채널을 설립하여 지상파방송의 외주제작률을 연차적으로 하향조정함으로써 지상파방송의 방송권 장악을 적정수준에서 견제할 수 있고 독립제작사들의 전문채널을 집중 육성할 수 있다고 함.

○ 이것은 지난 2월 이후 '방송위의 방송정책권을 문광부로 이양한다.'는 기본 방침에 따라 나온 것으로서 방송정책권에 대한 기본적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칭) 조차 설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첫 번째 정책이라 생각되는데 방송위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는 것 아닌지?

현행대로라면 타당성 검토와 사업자를 허가하는 것은 방송위가 하는 것인데 방송위와 협의가 된 사안인가?

○ 문광부는 하나의 외주제작 전문채널을 설립함으로써 오히려 독립제작사들의 지상파방송 진출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는가?

○ 경제적으로 어려운 독립제작사들에게 단기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 독립제작사의 행동범위를 제약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오히려 그동안 위성방송, 케이블, 디지털방송에서 전송·재전송되던 지상파방송의 방송권 장악을 합리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은 아닌가?

○ 이를 두고 문광부가 방송위로부터 방송정책

권을 이관하기 위한 “시작”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이에 대한 문광부의 입장은?

※ 문광부는 지상과방송의 독점구조를 견제한다는 취지로 본 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오히려 지상과방송의 독점구조에 대한 독립제작사들의 경쟁적인 방송시스템 요구를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

이러한 정책방향은 방송위의 방송정책 권한과 연계되어 있고 협의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문광부도 판단하고 있는 만큼 방송정책권에 대한 기본적 개념 정립을 마련한 후 처리해야 할 것임.

<영상콘텐츠산업 진흥정책을 완전히 분리 관련 - 장관의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 4월 8일>

□ 현 황

○ 국내 방송영상산업 특히 그 제작·공급기반으로서 콘텐츠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국내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반 대책이 장기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준비돼야 함.

○ 최근 세계는 미디어 시장이 통합되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고 방송·통신 융합에 따라 전반적인 산업구조가 재편과정을 겪고 있음. 따라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다각적인 노력들을 기울여야 함.

○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가칭)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등 관련 산업의 구조개편 방향 및 이에 따른 국가적 대응방안 등 어떠한 논의도 현실적으로 전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질 의

○ 문화관광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는 새로 출범하게 될 ‘(가칭)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할 방송정책과 문화관광부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영상콘텐츠산업 진흥정책을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 있음.

○ 아직 관련 기구가 출범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문화관광부가 콘텐츠산업 지원기능을 중심으로 한 관련 정책 권한 일반을 일방적으로 행사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부처 이기에 의한 업무선점을 위한 욕심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가?

○ 문광부가 향후 출범할 (가칭)방송통신위원회를 단순한 인허가·규제·심의 기능 중심의 규제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방송에 관한 총괄기관으로서의 방송위원회의 위상과 권능을 무시하고 문광부(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 아닌가?

○ 문광부의 영상진흥정책 분리 앞으로 구성될 ‘(가칭)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에서 부처가 협의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문화재청)

○李允盛 委員

<문화재 관리 조직기능 강화 관련>

□ 현황 및 질의

○ 문광부는 지난 4월 8일 대통령 업무보고 시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및 활용방안의 일환으로 1급 청인 문화재청을 차관청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보고했음.

○ 그리고 문화재청도 문화재보호기금 신설 및 문화재 정책의 민·관 협력체제 구축과 함께 차관청 승격을 골자로 한 문화재 정책 개편 방향을 준비해 왔음.

※ 문화재 관리 기능강화 방향

○ 문화재청 조직개편

· 현행 1급 기관 2국 체제 → 차관급 기관, 4국·기획관리관

· 정책기획 및 전문행정 기능 보강(문화정책국 문화재기술국 신설 등)

○ 국립문화재연구소 조사연구 기능 확충

· 분야별 전문조사연구체제 구축(전통건축, 수리복원, 자연문화재 연구실 설치)

· 서울·충주·나주 지방연구소 증설로 권역별 조사연구 기반 마련

○ 문화재 현장관리 강화를 위한 지자체 문화재 관리인력의 단계적 확대

· 문화재 전담과 (광역단체) 및 전담계(기초단체) 설치

○ 문화재 보존관리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기반 구축

· 문화재 분야 각계 종사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통문화연수원’설치

▷ 문화재청이 차관급 기관으로 승격할 경우 문화재 관리 및 보존에 있어서 어떤 면이 효율적일 것이라 생각하는가?

○ 한편 문화재 정책은 문화재청과 국립박물관 두 기관으로 이원화돼 있어 원활한 업무교환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박물관의 경우 학예직이 다수를 이루고 있어 행정성이 결여되고 문화재청의 경우 행정직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음.

▷ 문화재청이 구상하는 조직기능 강화 방안을 위해 전문성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관료를 중심으로

로 충원 확대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 과연 문화재청의 차관청 승격만으로 보완할 수 있겠는가?

- 일각에선 이에 대해 구체적 방안으로 문화재청과 국립박물관의 “선 통합”방안을 거론하기도 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

□ 덧붙여서

○ 최근 노태섭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청의 차관급 승격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협조해 달라는 명목으로 일부 기자들과 저녁식사를 마련했다는 보도가 논란을 빚은 바 있고

○ 이에 이춘근 문화재기획과장이 문화재 보존을 위한 시민단체의 참여방안을 듣기 위해 자연스럽게 마련한 자리라 해명한 바 있음.

▷ 청장, 기자들과 자리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 보도내용이 맞는가? 문화재청의 해명이 맞는 것인가?

<문화재연구소 유치 관련>

□ 현황 및 질의

○ 지난 3월 28일 신정훈 나주시장이 국립문화재연구소 유치를 놓고 성명을 발표, 문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수도 육성방침이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음.

○ 성명서에서 나주시장은 “광주시가 문화수도 건설을 빙자, 국립문화재연구소와 국립극장 건립 등 마구잡이식 사업을 추진, 인접 자치단체와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경우 나주지역이 지난 2002년 4월 문화재청으로부터 설치지역으로 이미 반영됐는데도 광주시가 뒤늦게 뛰어들어 이를 뒤엎으려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낡은 발상”이라고 비난하였음.

▷ 서울·충주·나주로 문화재연구소를 증설할 것이라고 공식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광주의 요구에 의한 것인가? 문화재청의 판단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상급기관의 의견이 있었던 것인가?

▷ 문화수도 육성방안으로 인해 지역 간 감정과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예견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문화수도”라는 개념은 광주보다는 경주가 더 어울린다는 시각에 대해 국가문화재정책을 총괄하는 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현대미술관 건립 관련

○ 또한 최근 광주시가 문화수도의 일환으로

현대미술관 건립사업을 추진하며 인접지역 건물(동구 중앙초등학교)의 문화재 등록 가능성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데 이어 문화재청은 4월 말 열리는 1차 문화재위원회 심의와 1개월간의 등록예고를 거쳐 오는 6월 말 문화재 등록 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임.

○ 사정이 이러함에도 광주시 관계자는 “동(중앙초등학교) 건물의 문화재 지정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확정 때까지는 현재의 미술관 건립계획과 절차를 그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광주시와 동구, 시 교육청 관계자들이 최근 문화재청을 방문해 문화재 등록을 재고해 달라고 협조 요청한 바 있음.

▷ 이것이 사실이라면 문화재청을 상대로 지자체가 로비를 한 것 아닌가?

어떤 이유로 문화재 등록 재고 요청을 한 것인가? 역사적 유물의 문화재 등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저지하는 것은 전적으로 지역이 주의에서 나온 발상 아닌가?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당시 문화재청은 “광주시의 난처한 입장은 이해하지만 문화재 등록 여부는 전적으로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에 달려있다.”하여 직접적인 해결방법을 강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아는데 사실인가?

▷ 문광부의 광주의 문화수도 육성안은 최종결정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자체 관계자들이 적극 대응하는 이유는 무엇이나? 정부 측의 광주시 문화수도 육성에 대한 지침이 하달된 것 아닌가?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문화재 보존 관리를 무엇보다 우선으로 해야 할 기관이 정치적 이유에 따라 직무유기한 것 아니냐?)

<백제 유적지 그린벨트 해제 관련>

□ 현황 및 질의

○ 최근 경기도 하남시가 경주에 버금가는 국내 최대 유적지인 시 외곽(춘궁동·교산동·하사창동 일대) 그린벨트 약 180만 평의 해제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 3월 31일 ‘취락지역 용역검토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고,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르면 6월 중 결정할 방침임.

○ 이와 관련 지난 2월 국립문화재연구소가 2차례에 걸쳐 춘궁동 능너머고분 지하매장 유구에 대한 지하탐사를 실시, 최소한 4곳에 석실 고분으로 추정되는 석물 등 유물 징후가 포착되었다

는 발표에 따라 ‘백제문화연구회’와 ‘문화연대’ 등의 시민단체들은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할 경우 유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임.

※ 하남시는 백제관련 유적 외에 고인돌 등 선사시대 유적과 청동기·고구려·신라·고려시대 유물·유적이 분포된 야외 박물관으로 학계의 인정을 받고 있는 곳으로 문화재청은 미사리 선사유적지와 이성산성·동사지 등 단 3곳만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있음.

▷ 해제추진 지역은 학계 전문가들에 의해 한성백제 왕성터로 추정을 받고 있으며 최근 3~4년 사이 백제 관련 유물·유적이 집중 발굴되고 있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문화재청은 어떠한 관리계획을 마련했는가?

○ 또한 문화재청은 현재 발굴 중인 한강유역 최대 목조건물터로 확인된 교산 동토성을 비롯해 지표조사 등을 끝낸 천왕사지, 능너머고분 등 주요 유적지에 대해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을 미루고 있는 실정임.

▷ 지표조사 결과는 무엇인가? 조사결과에 문화재위원회에서 수립한 보존대책은 무엇인가? 이를 하남시에 통보했는가?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을 연기하고 있는 근본적 이유는 무엇인가?

※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문화재지표조사)

-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 시 당해 공사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 및 분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지표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문화재보존대책을 수립하고 문화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③ 문화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보존대책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채 그린벨트가 해제될 경우 건물 신축 등으로 인해 백제 유적지 등 하남시 문화유적이 무차별적으로 훼손될 수 있는데 문화재청의 대책은 무엇인가?

<한일 문화재교류 약정 체결 관련>

□ 현황 및 질의

○ 문화재청은 2000년 4월 이후 제8차 한일 문화교류 실무자 협의를 갖고 지난 4월 7일 문화재청장은 가야이하야오 일본 문화청 장관과 함께 ‘한일 문화재 교류협력에 관한 약정(ROD. Record of Discussion)’을 체결

○ 그동안 두 나라 문화재 분야 교류는 발굴 및 문화재 복원기술 습득을 위한 직원연수, 민속예능인 교류 등 산발적인 인적 교류였으나 이번 ROD 체결을 통해 국가 간 문화재 교류의 물꼬를 공식적으로 열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음.

※ 체결 주요경위

- 2000년 4월 한일 문화교류 실무자 회의에서 한국 측에서 안건 제의
- 2001년 12월 한국 문화재청장 방일 당시 문화청 장관 사시끼로부터 체결 동의
- 2002년 6월 및 12월 2차례의 한일실무협의회에서 ROD 내용 협의

※ 체결 주요내용

- 문화재 분야 전문가 및 행정관 교류추진
- 유형문화재의 효과적 보존 및 활용 위해 정보교환·공동연구 실시
-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보유단체의 정보교환·공동연구 실시
- 자국의 법령 및 예산 허용범위 내에서 적당한 수단 통해 협력
- 5년간 시행, 5년 이내 수정 가능, 종료를 요구하지 않는 한 협력 계속
- 실무자 레벨의 화합을 조직하여 정기적으로 개최

▷ 이번 약정 체결을 통해 유·무형 문화재 교류협력 국제기구와의 공동 교류협력 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약정 체결에 따른 한일 양국 간 문화교류의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 ROD가 규정하는 주요 협력 사업분야로는 인적교류 외에 유·무형 문화재 교류 협력 국제기구와의 공동 교류 협력이 있으며 더욱 구체적인 사업은 부속사업서(Action Planning)를 체결해 이를 토대로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는데 부속사업서 체결을 위한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인적 구성은 되었는가?

<문화재 관리체계 관련>

□ 현황 및 질의

○ 최근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사업 관련 문화재의 복원을 추진해 온 청계천 복원추진본부가

‘청계천 사업으로 인해 문화재 유물의 원위치 복원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 이에 청계천 복원시민위원회가 “문화재 복원 없는 청계천 복원은 있을 수 없다”고 하여 논란을 빚은 바 있음.

○ 청계천과 관련된 문화재로는 수표교가 있으며 이는 1959년 서울시가 청계천 복개공사를 하면서 현재의 위치인 장충단 공원 입구로 이전해 1973년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8호로 지정 관리하고 있음.

○ 이와 관련 본 위원은 청계천 복원사업상에 나타나는 문화재 훼손에 대한 문화재청의 조치 및 입장을 물은 바 있으나 문화재청은 문화재 유물과 관련된 현장조사를 실시한 적은 없다고 하며 향후 필요시 서울시와 연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되 서울시에서 청계천 복원계획이 수립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시행할 방침이라고 입장 정리한 바 있음.

▷ 지자체의 사업으로 유물들이 훼손되는 등 문화재청의 문화재 보존 및 관리체계 그리고 행정시스템이 서울시의 문화재 담당부서보다 취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 문화재청의 문화재 보호에 대한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차관청으로 승격한다고 해도 서울시 등 지자체와의 문화재 관리 권한을 해결하지 않고는 문화재청의 권위에 대한 잦은 지적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안은 구상하고 있는가?

<문화재 훼손 관련>

□ 현황 및 질의

- 창덕궁 내 토끼떼 무더기 방사

○ 지난 4월 10일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인 창덕궁 안에 관리소 측이 토끼떼를 무더기로 방사 문화재 훼손은 물론 생태계 교란까지 초래할 수 있어 한 시민(장성재, 서울 노원구)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법제처에 행정심판까지 청구, 시정을 촉구한 형편인데도 당국자들이 서식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비판이 제기되었음.

○ 건국대 축산학과 강창원 교수에 따르면 “토끼는 땅속에 굴을 파고 죽을 때까지 이빨이 계속 자라기 때문에 나무 등을 갉아먹는 습성이 있어 토끼같은 동물이 창덕궁 안에 살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해 이장열 창덕궁관리소장은 “창덕궁은 수풀이 우거진

데다 대부분의 건물에 단청이 칠해져 있을 뿐 아니라 방충·방향제가 뿌려져 있어 토끼가 문화재를 갉아먹을 염려가 없다”고 입장을 정리하였음.

▷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 안에서의 ‘동물의 사육·번식 등의 행위’는 문화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소 측은 토끼를 방사, 문화재청이 이에 대해 아무런 시정조치조차 않은 상황인데 이유가 무엇인가?

- 이라크 문화재 약탈

○ 한편 최근 미-영 연합군이 점령한 바그다드에서는 시민들의 약탈행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4월 11일 진귀한 고대 유물들이 보관된 바그다드 국립박물관마저 습격당한 바 있음.

○ 이에 대한 대책으로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는 4월 12일 연합군에 대해 바그다드 시내에서 자행되는 약탈행위로부터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 이라크의 고고학 유적과 박물관에 병력을 배치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음.

▷ 문화재청은 전시상황 시 국내 문화재 보존 관리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가? 문화재청 관계자는 총무계획에 의해 일급비밀로 처리되어 자료로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했는데 계획을 알아야 문화재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안심할 것 아닌가?

○ 이와 관련 지난 3월 30일 충북지역 시민단체들(의림포럼 제천문화원)이 최근 약탈 문화재 반환운동 범제천시민추진위원회(공동대표 송만배 제천문화원장)를 창립 문화재 반환운동 인터넷 홈페이지(www.restorekcp.or.kr)를 개통한데 이어 일본 박물관과 대학 개인 등이 소장하고 있는 한국 문화재의 목록을 공개하고 즉각 반환할 것을 촉구한 바 있음.

▷ 훼손되거나 약탈된 유물에 대한 역사적 자료들을 소장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가? 약탈문화재 목록 공개거부 이유가 무엇인가? 향후 해외 약탈문화재 반환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 현재 정부는 해외유출문화재 20개국 7만 4000여 점으로 추정, 민간 전문가는 수장고 방치 문화재 20여만 점, 개인소장문화재까지 약 100만 점 추정.

◇ 이라크 약탈문화재 현황

○ 28개의 전시실 선사시대부터 이슬람시대까지의 유물 전시

○ 총 소장 유물은 30만 점 이상, 이 중 17만

점 가량이 약탈당한 것으로 추정

◇ 문화재 약탈 현황

- 수장고까지 털린 바그다드 이라크 국립박물관은 가져갈 수 있는 거의 모든 유물이 약탈됐거나 훼손된 것으로 보임.
- 기원전 3000년경 만들어진 수메르 여인의 두상이나 돌 위에 쉼기문자로 새겨놓은 함무라비 왕조의 법조문 조각, 바빌로니아 시대의 귀족 청동부조 두상 등 이 밖에도 4000년전의 황금 목걸이와 팔찌, 귀고리, 황금 사발과 잔, 고대 문자가 새겨진 점토판, 아시리아 시대의 대리석 조각, 바빌로니아 시대의 석상과 하프 등이 약탈

(문화관광부)

○鄭柄國 委員

<신임 문화관광부장관의 문화 정책 관련>

○ 장관이 지난 3월 14일 문화관광부 홈페이지에 올린 본인의 인사말 그리고 지난 3월 21일 청와대 홈페이지 기획마당의 인터뷰 및 이번 문화관광부 업무현황 보고 등을 살펴 보았을 때 장관의 문화예술정책 방향에 몇 가지가 우려가 되어 그 부분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 문화정책 방향 관련

○ 먼저 장관은 3월 14일 인사말에서

○ 이제는 ‘문화도 돈 된다.’가 아니라 ‘돈 되는 문화, 돈 안되는 문화가 따로 없다’는 사고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제적 관점에서 문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관점에서 경제를 바라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리고 앞으로 참여정부의 문화관광부의 정책의 방향이 우리 사회의 각 영역에서 문화적 창조성과 자율성의 불씨를 불어 일으키도록 환경을 만들고 틀을 짜도록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렇게 해야만 모두가 ‘돈 되게’할 수 있고 나아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그 첫 번째 과제 또는 목표는 문화예술, 체육, 관광 등의 각 분야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 본 위원은 장관의 이러한 문화적 관점에 대한 주장에는 상당한 공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돈 되게 할 수 있고’라는 표현에서는 장관의 문화산업 편향적 시각이 읽혀져 우려가 됩니다.

○ 문화예술 분야에는 실제로 돈이 될 수 있는 분야도 있고 돈이 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예술도 있어 문화예술 모두가 돈이 되게끔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전통 문화예술이나 순수 문화예술의 경우에는 돈이 되지 않는 분야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에 영감을 주는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 따라서 문화예술에는 반드시 직접 지원과 육성이 필요한 분야도 많이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 문화예술진흥원을 민간 주도의 문화예술진흥위원회로 하는 문제 관련

○ 업무현황 보고 12페이지에는 문예진흥원을 문예진흥위원회로 개편하겠다는 방안이 있습니다. 동시에 게임, 음반, 애니메이션 등 여타 분야도 위원회 체도로 단계적 전환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문예진흥원을 문예진흥위원회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은 민예총 등 문화시민단체에서 꾸준히 주장해 온 것입니다. 본 위원도 지난 2001년 6월 당시 문화관광위원회 여야 위원님들과 함께 이와 관련된 ‘문예진흥원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하였습니다.

○ 본 위원도 문화예술기관이 민간자율기구로 재편되어야 한다는 총론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문예진흥원은 영화진흥위원회와 같은 문화산업적 조직이 아니며 한 분야만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문예진흥원을 일괄적으로 위원회 체도로 전환시킬 경우 문학, 미술, 음악, 연극, 무용 등의 분야의 특수성이 도외시될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 그리고 위원회로 전환 시 각 분야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분야별로 위원회를 구성할지 아니면 총체적으로 시민단체의 주장에 따른 구성 즉 예를 들면 통일민족문화위원회, 문화기반시설위원회, 자원개발위원회, 대중예술교육위원회 등으로 구성할지 그 구체적 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분야별 위원회가 아니라 통일민족, 문화기반시설 등의 위원회로 구성될 경우 이는 문화관광부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으로 문화관광부와와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원회의 위원 구성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처럼 장관이 위원을 구성할 경우 정부의 정책 개입이 계속될 우려가 있는데 문예진흥원의 예산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위원회로 개편될 경우 위원에 대한 임명권을 국회가 가지는 것이 정부 개입을 줄일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 게임, 음반, 애니메이션 관련 기관의 위원회 제도 개편 관련

○ 먼저 정부의 문화산업 정책의 문제점 몇 가지를 들겠습니다.

○ 게임산업의 경우 출판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그래픽, 프로그램 등 순수 예술적 분야 즉 시나리오와 영상과 기술적 분야인 게임적 프로그램이 적절히 결합되어야 지속적 성장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 현재는 두 분야가 분리되어 있고 출판에 대한 지원이 매우 미약하며 게임 개발이 프로그래머들에 의해 선도되고 있어 세계적 대작 출시 및 세계경쟁력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그리고 문화산업 지원이 창작자의 창의력 고양에 중심을 두기 보다는 스타 상품을 만드는 것에 집중되어 엔터테인먼트 대기업이 하는 일과 정부의 지원내용 간에 구분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 또한 게임과 애니메이션의 경우 일본의 오타쿠처럼 그 저변을 확대하는 정부지원 정책이 아니라 단기적인 성과 위주 정책으로 지원됨으로써 문화산업 기반이 취약해져 온 것이 사실입니다.

○ 따라서 정부의 문화산업 정책은 문화산업의 기반이 되는 출판 및 순수예술 지원 그리고 게임, 애니메이션 같은 디지털문화산업의 저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현황 보고를 보면 게임, 음반, 애니메이션 분야 기관을 위원회 제도로 전환하겠다고 합니다.

○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의 직접 지원을 줄여 나가야 할 이 시점에 문화산업 분야 관련 기관을 민간 중심의 위원회 제도로 전환할 경우 문화산업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기 보다는 기업들 간의 정부지원금 나눠먹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따라서 위원회 제도로의 단계적 전환은 정부가 할 일 즉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 민

간이 담당할 수 없는 부문 즉 인프라 구축 문화산업 저변 확대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가면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 특히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문화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정통부, 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 등 여러 부처에서 각기 지원 및 육성 정책을 펴고 있어 통일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문제점부터 해결하고 난 뒤 위원회 제도를 논하는 것이 순서가 맞다고 봅니다.

○ 따라서 현재 문제가 되고 이러한 여러 부문을 해결하려는 노력도 없이 자율성이란 미명하에 순수문화든 문화산업이든 모두를 민간에 넘기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보여지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역사 마을 만들기’ 사업의 지속성 문제>

○ 2002년 9월 문화관광부는 경륜 자금 2억 원으로 ‘우리 문화·역사 마을 만들기’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 이 사업의 진행 경과를 살펴보면 9월에 기본계획 수립, 10월에 사업계획 통보, 11월에 32개 사업을 접수하여 12월 18일에 5개 사업을 선정하여 각 문화원에 4000만 원 씩 지원하였으며 그 지역은 충남 태안, 전북 장수, 전남 해남, 경남 합천, 경기 고양 등입니다.

○ 이 사업의 기본목표는 우리 문화 정체성의 확립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향토 문화 역사 복원 및 보존 관리 활용으로 문화자치 실현, 향토문화 역사의 문화콘텐츠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문화한국’구현 등으로 매우 거창합니다.

○ 그리고 2005년까지 47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총 232개 자치 시·군·구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거창한 사업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단 4개월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선정된 5개 문화원의 기본 사업비는 1억 원에서 2억 원까지 다양합니다.

○ 그런데 각 문화원에서는 4000만 원의 지원액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다고 항의하자 문화관광부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비를 보조해 줄 것을 단 한차례 요청하였습니다.

○ 그런데 이러한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지원

에 난색을 표하는 자치단체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 따라서 전체 사업비의 일부만을 지원하려면 자체 사업 예산이 부족한 문화원의 상황을 인식하여 문화관광부가 미리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요청을 했어야 합니다.

○ 또한 기본 사업비에 턱없이 모자라는 지원액에 대해 각 문화원이 항의를 하자 문화관광부는 올해안에 5개 문화원에 6000만 원씩 총 3억 원을 더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3억 원의 예산이 아직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 그런데도 문화관광부는 올해 총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0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작년에 선정된 사업 진행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대한 보완을 하기는커녕 다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졸속 사업을 계속 하겠다는 무책임한 발상으로 생각됩니다.

○ 또한 이러한 진행을 살펴보면 지방 문화육성이 말로만 진행되고 있고 상당한 푸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산업진흥 5개년 계획 관련>

○ 지난 3월 문화관광부는 해마다 침체되고 있는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국고 약 1260억 원, 문화산업진흥기금 770억 원, 지방비 1000억 원, 민자 940억 원 등 총 4000억 원의 소요예산이 포함된 ‘음악산업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 이 사업의 주요 추진 과제는 유통구조 현대화, 음악산업 인프라 조성, 음악산업 전문인력 양성, 음악콘텐츠 제작 활성화 지원, 마케팅 현대화 기반 조성, 남북 음악산업 교류 추진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몇 가지 사업에서는 그 실효성이 의심이 됩니다.

○ 먼저 뮤직테마파크 조성 지원이라는 항목을 보면 남이섬에 노래박물관을 건립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으며 국고가 올해 11억 6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지역이 사유지이며 노래박물관에 전시할 콘텐츠 수집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박물관 운영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많은 대중음악인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습

니다.

○ 그런데 ‘광명 첨단음악산업단지 조성 지원’이라는 항목을 살펴보면 내년부터 매년 국고 50억 원씩 총 200억 원, 지방비 600억 원 등 총 800억 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으로 과연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큰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 그런데 여기에도 음악박물관 건립이라는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업과 중복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은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 그리고 싱글음반 활성화 지원 예산을 살펴보면 향후 5년간 국고 9억 원, 민자 23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세계적인 추세가 싱글음반을 줄여 나가거나 생산하지 않고 있는 마당에 싱글음반을 지원하는 것은 현장을 확인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탁상 행정이라 보여집니다.

○ 장관은 이 계획 수립 시 현장 업계와 얼마나 대화를 나누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작년 문화관광부는 국고 약 1조 1899억 원을 포함한 총 2조 5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도서관발전종합계획(10년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공공도서관 역할 강화, 정보 소외계층 서비스 확대, 국민독서문화진흥 등 국민에 꼭 필요한 예산은 확보되지 않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도 매우 어려움을 스스로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 그러한 전례를 살펴볼 때 올해 국고 78억 원 그리고 내년에 282억 원 그리고 매년 300억 내외가 소요되고 매년 200억 원 내외의 민자가 투입되는 이번 사업의 경우에도 어려운 음반 업계 현실을 살펴볼 때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따라서 장관은 이번 음악진흥계획의 우선순위를 잘 선정하고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실행 가능한 음악진흥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문화재청)

<문화재 긴급 보존 및 긴급 수리 시스템을 구성하라.>

○ 문화재가 훼손되어 긴급 수리가 필요할 경우 예산 지출과정을 살펴보면

○ 먼저 해당 자치단체(시·군·구)가 광역자치단체인 시·도를 거쳐 문화재청에 예산을 신청

하면 문화재청은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긴급 보수비 국고보조금 교부를 결정합니다.

○ 이 과정에서 지방비가 확보되면 해당 자치단체가 다시 시·도를 거쳐 설계검토를 요청하고 문화재청에서 설계승인이 이루어지면 공사가 시행됩니다.

○ 이러한 과정은 길게는 6개월 이상 걸리고 지방비 확보가 쉽지 않을 경우에는 그 기한이 한정없이 길어지는 등 문화재 긴급 보수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 작년 7월 국보 제4호인 고달사터부도가 도굴꾼에 의해 훼손된 지 거의 9개월이 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도 보수공사가 마무리되고 있지 못합니다.

○ 그리고 올해 3월 11일 국보 제57호인 전남 화순의 쌍봉사 철감선사탑이 도굴 미수로 인해 옥개부가 훼손되었는데 문화재청은 원상복구에 전에 더 이상 훼손을 막기 위해 지지목으로 보강조치를 한 후 원상복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제는 이러한 훼손 우려 때문에 쌍봉사 측에서 수차례 군청에 철감선사탑 훼손을 막기 위한 철책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훼손이 현실로 나타난 것은 국보와 보물에 대한 상시적 관리 시스템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문화재청장은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중요무형문화재 선정 및 관리 실태 문제 있다.>

○ 문화재청은 작년 9월 ‘중요무형문화재 단체종목 전승실태 파악’을 위한 연구용역을 한국역사민속학회에 맡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근 그 용역보고서가 제출되면서 무형문화재 관리에 커다란 허점이 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 책임 연구자들의 요약보고서를 살펴보면 가장 큰 문제는 먼저 충청남도도 지정 무형문화재 중 예능 단체종목이 모두 15개인데 그 중 14개 종목이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출품작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1999년 우수상을 받은 금산농바우끄시기, 1997년 공로상을 받은 세도두레놀이 등이 그것입니다.

○ 경연대회의 입상작이 반드시 무형문화재로

서의 가치와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경연대회를 위해 윤색 및 변형이 되는 경우도 있어 일부의 출품작이 무형문화재적 가치가 있다 해도 경연대회 출품 이전으로 되돌려 놓고서 지정해야 마땅하다고 연구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 또한 경연대회 중심으로 무형문화재가 지정되면 경연대회와 인연을 맺지 못한 많은 귀중한 문화유산이 사라지거나 그 가치를 드러내 보이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경연대회 출신 무형문화재 문제뿐 아니라 현재 문화재청에 의해 지정된 무형문화재도 많은 문제가 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 무형문화재 제51호인 남도들노래의 경우 논 일이나 밭일을 할 때 부르는 농요라 할 수 있는데 무형문화재 제84호는 농요 부문으로 그 하위 단위에 ‘가. 고성농요’와 ‘나. 예천통명농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남도들노래는 이 하위 부문이 되어야 하는데 무리하게 독립된 호로 설정되었다는 것입니다.

○ 줄다리기의 경우에도 영산줄다리기와 기지시줄다리가 각각 제26호와 제75호로 지정되어 있어 이는 줄다리기라는 상위 단위 안에 지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이처럼 무형문화재 지정의 비원칙성과 비체계성으로 인해 국가지정문화재의 가치 훼손이 수십년 동안 진행되어 왔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문화재청장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등록문화재에 대한 근본적 대책 필요하다.>

○ 문화재청은 지난 2001년 근·현대에 형성된 건조물 및 시설물로서 현 시점에서 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 평가가 어렵고 또한 보호의 대상이 현재에도 직접 사용하는 경우 즉 학교, 병원, 공공시설 등이 많아 이러한 상황의 문화재를 보호하고자 등록문화재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제도의 정착 발전을 위해 등록문화재 보수 시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를 50% 감면, 상속세 징수 유예 등의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올 3월까지 등록된 등록문화재는 남대문로 한국전력사옥 등 51건이며 등록 추진 중인 대상은 58건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등록문화재 대부분이 학교나 교회, 공공기관 건물 등입니다.

○ 역사적 가치가 높은 개별 건물의 소유주들

은 거의 등록문화재 신청을 하지 않고 있어 등록문화재 정책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건물 소유주들은 등록이 되면 재산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고 집값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 등록을 기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 올해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 대상의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화동 구 경기고교 건물 보수에 3억 원 등 13건에 총 16억 6200만 원에 이릅니다. 이 중 논산 강경 구 남일당 한약방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학교나 공공 건물입니다.

○ 따라서 공공성이 강한 건조물과 개별 건물을 분리하여 지원을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화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 일본의 고베시의 경우에는 새 건물을 지을 때도 근대 건축물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고도를 제한하는 등 근대 건축물을 보존한 결과 인천시 인구의 절반밖에 안되는 고베시의 연간 관광객 수는 약 2500만 명으로 인천시의 10배가 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근대 건축물의 보호는 우리 관광 자원의 확대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 프랑스의 경우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가 법적으로 큰 차별없이 지원되고 있으며 일본의 문화재법에는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라는 항목을 따로 두어 문화재 보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의 등록문화재 제도도 그 실효성을 가지려면 지정문화재 못지 않는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화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수리 기술자 관련 정책 문제>

○ 지난 2000년 7월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개혁의 차원에서 문화재 수리 기술자 시험자격에 대한 규제를 대폭 해제하였습니다.

○ 이로 인해 당초 학력과 경력에 대한 시험자격 제한이 폐지되어 누구나 시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규제 폐지 전의 시험자격을 보면 대졸의 경우에는 해당 기술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자로 전문대의 경우에는 3년, 고교졸업의 경우에는 7년, 그 외에는 10년이라는 제한을 두어 왔습니다.

○ 그러나 문화재 수리는 다른 건조물의 수리나 건축과는 달리 국가의 얼과 정신을 보살피는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재 수리

기술자의 경우에는 높은 도덕성뿐 아니라 문화재 각 분야에 대한 높은 식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따라서 현재의 자격기준 철폐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최소한이나마 문화재 관련 업무를 하고 문화재 수리 기능공의 경우에는 일정한 현장 경험의 기한을 정해 그러한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에 한해 문화재 수리 기술자 시험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 문화재 수리 자격증 대여는 단순한 행정처분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국가 유물 훼손을 스스로 방조하는 큰 범죄자라 할 수 있습니다.

○ 문화재청은 지난 96년 이후 자격증 대여 수리 기술자의 행정처분이 3명 4건(1명이 2건)밖에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에 보고해 왔습니다.

○ 그동안 술하게 수리 기술자의 자격증 대여 문제가 제기되어 왔는데 그 제재 조치가 너무나 미흡한 것은 문화재청이 자격증 대여에 대한 감시를 거의 하지 않았다고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 문화재청은 문화재 수리 자격증 대여 감시 체계와 자격증 대여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연합뉴스 주식처분에 대한 대책은

○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연합뉴스사법(안)과 관련하여 최대 주주인 KBS(42.35%)와 MBC(32.15%)는 아직까지 주주총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바가 없음.

○ 다만 KBS의 경우 상법상 주주총회의 고유 권한을 연합뉴스위원회에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식의 적정 보상방안, 시기와 절차 등을 사전에 확정된 후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본 위원에게 보내 왔음.

○ MBC 역시 적정 가격에 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는 방안이 마련되면 언제든지 협의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며 다만 주식의 무상환수 및 이전 요구에는 반대하고 있음.

▷ 따라서 연합뉴스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번 연합뉴스사법이 정권에 예측되는 독소조항들을 제외하고 건전한 통신진흥법으로의 제정 방향이 결정되면 법 처리 이전에 문화관광부에서 KBS 및 MBC와 주식평가 및 보상에 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봄. 이에 대한 장관의 대책은?

□ 방송정책권, 방송위원회에서 환수하려는가
 ○ 지난 4월 8일 대통령 업무보고 시 장관은 방송·통신 융합에 대비해 방송정책과 영상콘텐츠 진흥정책을 분리하겠다는 방안을 보고함.
 ○ 이것은 향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신설되더라도 방송정책 중 콘텐츠 진흥정책은 문화관광부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임. 즉 방송정책을 분리해 방송위원회는 인허가와 규제 심의만 하라는 것임.
 ○ 뿐만 아니라 외주전문채널 설립을 추진하고 방송발전기금의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 이에 대해 방송위원회 노조에서는 통합방송법에 규정된 방송정책권을 회수하려는 음모라며 비판하고 있음. 문화부는 지난 2월에도 방송정책을 문화관광부로 환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었음.
 ▷ 장관! 현행 방송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송발전기금의 사용처나 외주전문채널 설립 등에 대해 방송위원회와 사전 협의도 없이 문화부에서 일방적으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통합방송법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답변을 바람.
 ▷ 위와 같은 문화관광부의 대응은 향후 구성될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시에 현 문화부의 영상산업분야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넘겨줄 수 없다는 밥그릇 싸움에 불과함. 국가의 전반적인 방송통신정책에 대한 윤곽도 없는 상황에서 먼저 업무영역 다툼에 나선 것이 아닌가.
 ▷ 대통령 업무보고 시 제시된 외주전문채널 설립안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해서 외주전문채널을 만들되 지상파방송사들의 경우 현행의 외주제작 비율(35%)을 점차 축소해서 아예 외주제작을 없애겠다는 것임. 그러나 이것은 지상파방송사들을 더 비대하게 만들게 되는 것으로서 통합방송법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인데 장관의 대책은?
 □ 문화관광부도 '로또복권 광풍몰이'에 참여
 ○ 전국이 로또 열풍에 휩싸여 있고 최근 추첨에서는 1등 407억 원이 당첨되어 서민들의 한숨을 불러 일으키고 한탕주의를 부추기는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행성 사업으로 인해 커다란 사회적 병리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이로 인해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던 추첨식 체육복권은 판매량이 절반으로 떨어졌고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시작했던 스포츠 토토사업

은 적자로 인해 기존 계약자와 해약을 하였고 새 사업자(동양 오리온)와 새 계약을 협의 중임.
 ○ 그러나 지난해 12월부터 로또복권이 시작된 이후 각종 추첨식 복권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복권발행조정위원회에서는 추첨식 복권의 퇴출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새로 추진하는 스포츠 토토사업이 제대로 될지 의문임.
 ○ 현재 로또복권사업에는 정부의 10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당초 스포츠 토토(체육복표사업) 때문에 로또사업 추진을 반대했던 문화관광부도 포함되어 있음(배당률 12.12%)
 ▷ 장관! 로또로 인한 체육복권사업의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스포츠 토토사업이 로또복권의 광풍속에서 수익성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지 또 스포츠 토토사업 투자비 환수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람.
 □ 월드컵 잉여금 중소 회장사업 피해자들도 지원해야
 ○ 지난해 전 국민의 성원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개최된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약 1630억 원의 잉여금이 남아 문화관광부에서는 축구인프라 조성 및 체육진흥사업에 배정할 예정으로 알고 있음.
 ○ 그러나 지난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지만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회장사업공식업체를 잘못 지정함으로써 500여 중소기업체가 도산하고 약 2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음.
 ○ 당초 월드컵조직위원회는 '코오롱TNS월드'라는 회사를 제대로 검증도 안하고 낙하산식 추천에 의해 회장사업업체로 결정함으로써 조직위를 믿고 코오롱 TNS에 월드컵기념물품을 납품했던 500여 중소기업체가 줄줄이 도산하게 된 것임.
 ○ 이들은 코오롱 TNS가 법정관리에 들어감으로써 약 350억 원(현재 시가는 10억 원 정도)에 달했던 재고물품을 제대로 판매도 할 수 없게 되었고 FIFA에서는 이 재고품에 대해서도 40%의 로열티를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보전 자체가 어렵게 되어 있음.
 ▷ 이런 문제들은 당초 재정상태가 불량했던 코오롱TNS를 몇몇 인사가 나서서 낙하산식으로 월드컵회장사업체로 지정했던 조직위원회에 그 책임이 있음. 따라서 월드컵 잉여금 중 일부는 이들 중소기업체에 대한 피해보상에 사용되어야 한

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 대한축구협회 법인화 대책은

○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 많은 공헌을 해온 대한축구협회는 지난해 월드컵대회 이후 대선 등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었다는 비판이 있었음.

○ 현재 축구협회는 법인이 아닌 임의단체로 등록되어 있고 재정이나 조직운영에 있어서 투명성이 없음이 커다란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얼마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축구협회의 사단법인화를 유도한다는 보도가 있었고 특히 지난 2000년 파주 축구트레이닝센터를 국고로 지원받는 대신 법인화를 약속했었다고 전해지고 있음.

▷ 그러나 축구협회에서는 위와 같은 약속을 한 바가 없다고 밝히고 있고 재정문제에 대한 대책도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축구협회의 법인화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달라.

(문화관광부)

○沈載權 委員

<카지노 허가: 서울·부산을 늘려야 제주는 구조조정 필요>

문화관광부는 지난 8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외국인 카지노는 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외국인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와 용유·무의도 등 경제특구에서는 미화 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에 대해 조건부로 카지노를 허가토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이른바 ‘조건부 허가제’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주도 중문단지 내 한국관광공사 소유부지 14만 평을 개발하기 위해 미국 카지노업체 스타크사가 총 28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여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처럼 외국인 카지노를 매개로 5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외자를 유치하여 호텔, 리조트, 수족관 등을 개발함으로써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고 국제적 관광자원의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한 ‘조건부 허가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몇 가지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조건부 허가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신규 허가

지역이 제주도와 경제특구지역에 한정되고 있으나 실제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신규 허가가 필요한 지역은 전체 카지노 매출액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독점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 부산과 같이 외국인 관광객의 접근성이 유리한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8조는 “신규 허가를 행한 날 이후에 외래관광객이 30만 명 이상 증가한 경우 신규 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워커히 카지노의 경우 1968년 외래관광객이 10만 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허가가 발급된 이후 외래관광객이 500만 명을 넘어선 현재까지도 독점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부산의 경우에도 1978년 외래관광객이 100만 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허가가 발급된 이후 여전히 독점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광부장관!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외래관광객 유치 및 외화획득을 위한 관광산업 진흥책의 일환으로 허가된 것이라면 외국인 관광객들의 접근성이 양호한 이들 지역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독점체제에서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문광부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8개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체가 몰려 있어 공급과잉으로 열악한 영업실적을 보이고 있는 제주지역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체에 대한 구조조정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문광부장관! 공급과잉인 제주지역의 경우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체에 대한 신규 허가 발급 전에 기존 업체 간 인수나 합병 컨소시엄의 구성 등 업계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장기휴업을 하거나 업체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이 일정 연도 이상 적자인 경우에는 문광부장관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문화관광부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

<덕수궁터에 미대사관 건축 절대 안돼>

주한 미대사관이 옛 덕수궁터에 미대사관 건물과 직원숙소용 아파트 신축 의지를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육성·발전시켜야 할 주무부서인 문화관광부가 오히려 훼손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재 미대사관 신축부지는 선원전과 함녕전 등 대한제국 당시 15개 이상의 궁궐전각이 있던 곳이며 특히 선원전은 태조와 선왕들의 제사를 지내던 곳으로 신성시되던 영역임은 물론 구한말의 역사유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문화재청장! 일부 보도에 의하면 지난 4월 8일 문광부장관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문화재 조사를 거쳐 덕수궁 주변에 미국대사관과 직원숙소를 건립키로 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본 위원은 미국 측이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헬기장 이전 문제와 대사관 건물 및 직원용 숙소 건설문제를 연계할 의도를 가지고 있어서 용산 헬기장 이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산 헬기장 이전문제와 덕수궁 주변 미대사관 및 직원용 숙소문제는 전혀 별개의 사안으로서 서로 연계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은 6년(2003년~2008년)의 사업기간과 29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중화전 및 함녕전 행각 5동 900평 복원 및 덕홍전 등 고건물 6동 320평 보수 등 덕수궁 복원사업을 계획했으나 2003년에 필요한 20억 원의 예산이 미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장!

본 위원은 문화재청의 이러한 덕수궁 복원사업이 단순히 현재의 덕수궁의 복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미대사관 부지와 미대사관 직원숙소 등은 물론 덕수궁터까지 포함하는 명실상부한 덕수궁 복원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문화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

○姜申星一 委員

1. (문화관광부)이창동 장관 관련

장관은 83년 신춘문예를 통해 문단에 등단하여 소설가의 길을 걸었고 43세에 영화에 입문하여 조감독을 거쳐 96년도에 감독으로 데뷔하였습니다.

그 후 이 장관이 거둔 영화적인 업적은 높이 치하하는 바이지만 문화관광부의 수장으로서의 관광, 체육, 문화재, 방송 등 생소한 분야에 대한

장관의 업무처리 능력에는 의심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자세한 질의는 또다시 하기로 하고 우선은 이러한 업무에 대한 장관의 기본적인 인지도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관이 생각하는 관광, 체육, 문화재, 방송 등 분야별 현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을 ?

2. (문화관광부) POST 월드컵 진행 상황 및 월드컵 경기장 활용실태와 차후 운영계획

월드컵 이후 경기장 운영현황을 보면 프로축구단 연고지의 경우는 프로축구의 유치, 각종 이벤트, 영화촬영 등의 기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

그 외에 연고구단이 없는 도시의 경기장들은 일반 시민에게 운동장을 대여하거나 이벤트사업 등에서 수익금을 올리고 있으나 현재까지 수익금이 건설비용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 대부분. 좀더 다각적인 방법으로 건설비 회수에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

각 월드컵 경기장의 건설비용 대비 수익금 현황

경 기 장	건설비용(억 원)	수익금 현황(백만 원) (2002년까지)	비 고
서울 상암 경기장	2,033	2,356(1.1%)	월드컵대회 경기장 사용료(경기당 3억 원)포함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	2,269	1,402(0.6%)	
대구 월드컵 경기장	2,836	1,238(0.4%)	
인천 문학 경기장	2,488	1,943(0.7%)	
광주 월드컵 경기장	1,588	1,001(0.6%)	
대전 월드컵 경기장	1,274	1,143(0.8%)	
울산 월드컵 경기장	1,514	1,391(0.9%)	
수원 월드컵 경기장	2,522	2,693(1.0%)	
전주 월드컵 경기장	1,369	1,102(0.8%)	
서귀포 월드컵 경기장	1,125	1,131(1.0%)	

월드컵경기장의 활용방안을 프로축구나 국제 축구경기에서만 찾아서는 안됨.

이번에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 야외 뮤지컬 “투란도트”가 공연됨. 이것은 월드컵경기장의 활용과 함께 국민들에게 문화향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거양득의 공연.

이러한 사업계획들을 잘 이용하여 우리의 자랑스러운 월드컵경기장이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유기적인 노력이 필요.

현재 월드컵경기장은 문화관광부의 관리를 떠나 지자체별로 운영하게 되어 있지요?

지방자치단체들은 나름대로 특성을 살려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전의 경우는 민간위탁을 공고하는 등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월드컵이 끝난 지 9개월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운영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음.

따라서 지자체에게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문광부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월드컵경기장이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함.

문화관광부와 지자체 간의 협조방안이 있습니

까? 어떠한 것인지?

3. 제주도 월드컵경기장 지붕막 보수작업 관련 제주도 월드컵경기장 지붕막 보수작업 진행상황 원인 분석: 9.5~12.30

원인분석 내용과 병행 기본(실시)설계 완료: 2003년 4월한

복구공사 시행 및 완료: 2003년 10월한

제주도 월드컵경기장의 지붕막의 보수작업은 아직까지 기본설계조차 이루어져 있지 않음. 태풍 루사와 평센이 지나간 지가 벌써 9개월째 접어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직도 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데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제주도 월드컵경기장은 아름답기로 이름난 경기장이 이처럼 흉물단지가 되어 썩히고 있어서야? 제주도 월드컵경기장은 지난 월드컵 이후 단 한차례도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월 관리비가 3400여만 원씩 계속 지출되고 있음. 향후 연간 관리비가 4억 7000여만 원 정도가 계속 지출된다고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사용은 안하고 계속 관리비만 지출할 때이고 사용하게 되면 더 늘어날 것임.

관리비 보전대책은 어떻게?

4. (문화관광부) 문화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문화콘텐츠 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문화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소재 발굴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 이런 문화콘텐츠 원형의 발굴 사업 지원을 위해서 정부는 지난해 ‘우리 문화원형의 디지털콘텐츠화 사업’에 국고와 정보화추진기금 150억 원을 들여서 456건의 과제를 접수하여 이중 40개의 개발과제를 선정. 앞으로 150건 이상을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다양한 매체로의 산업적 가치 부여 필요(만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 소설, 동화 등). 그러나 올

해 문화산업 관련 예산의 구성을 보면 캐릭터 관련 산업에의 예산은 전체 예산의 35.81%나 되는 반면 디자인, 공예, 한복 등의 문화상품에 대한 지원은 전혀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영상만화부문의 지원은 0.62%로 그 수준이 미약.

앞서 말했듯이 문화콘텐츠의 원형을 발굴해서 다양한 매체로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지원은 당장 돈이 되는 캐릭터 관련 산업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 정부가 문화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이라기보다는 예산의 보전에 급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 장관의 견해는?

(2002 문화산업백서 발췌)문화산업 관련 예산의 구성내역

(단위 : 천 원)

구 분	2002	2003
문화산업육성(기반조성)	57,000,000(29.12%)	45,200,000(23.88%)
출판	20,612,650(10.53%)	17,154,394(9.06%)
영상	41,418,000(21.16%)	33,755,000(17.83%)
영상만화	882,043(0.45%)	1,169,407(0.62%)
게임·음반	9,692,166(4.95%)	14,604,398(7.72%)
문화상품(디자인, 공예, 한복 등)	6,638,621(3.39%)	0
방송·광고	8,400,000(4.29%)	8,451,000(4.47%)
문화콘텐츠(캐릭터 등)	50,000,000(25.54%)	67,779,799(35.81%)
기본 사업비	1,129,781(0.58%)	1,154,420(0.61%)
합계	195,773,261(100%)	189,268,418(100%)
전년대비 증감	48,289,079(32.7%)증가	6,504,843(3.3%)감소

문화경쟁력은 단지 문화공산품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님. 농어촌 체험 관광, 문화유산을 그냥 관광으로 지나치면서 보는 관광이 아니라 직접 체험 또는 다양한 기획사업 등으로 우리의 유구한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의 유기적 개발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의 유치하는 것 또한 문화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문화관

광부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상품개발계획을 갖고 있는지? 계획에 따른 구체적 지원이나 방법은?

(문화재청)

1. (문화재청)태풍 루사 피해 이후 문화재 복구 진행사항 및 차후 자연재해에 대한 대처방안
지난해 여름 태풍 평센과 루사로 인해 우리나라

라 곳곳에서 막대한 재산과 인명의 피해가 있었음. 우리나라 문화재도 예외는 아니었음. 문화재청에서 보내 온 자료에 의하면 전체: 151건 중국가 지정 문화재 중 당해 문화재 22건, 주변시설 38건 시·도 지정 문화재 중 당해 문화재 30건, 주변시설 61건이 피해를 보았고 총 피해액 115억 7200만 원이 발생.

이 중에서 설계·발주 중에 있거나 복구 진행 중 문화재: 118건(78%) 복구 완료된 문화재가 32건(21%) 복구 불가능한 문화재는 경북 청송군 소재 천연기념물 제297호 “부곡동 왕버들” 유실되어 2002년 11월 27일 지정 해제되었음.

작년 8월 말에 있었던 태풍 루사의 피해로 금액상의 피해도 115억 원이나 되고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손대대로 물려주어야 할 우리의 귀중한 유산들이 훼손이 되었다는 것임.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작년 피해가 있고 나서 지금까지 7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67%가 복구가 완료되지 않았고 그 중에서 41%(설계 중이거나 발주 중)는 아예 공사도 시작되지 않고 있음. 이제 또 여름이 다가오고 태풍이 불어오면 피해가 겹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 2002년 10월 이후 지정된 유형문화재

국가 지정 문화재: 31건

시·도 지정 문화재: 67건

문화재 자료: 15건

총 113건의 문화재가 발굴 지정되었음.

앞으로 우리의 문화재는 계속해서 지정될 것이고 더욱더 늘어날 것인데 아직까지 자연재해를 조절해서 피할 수 있는 과학적인 기술이 없음. 그렇다면 결국은 자연재해를 정면으로 맞아 대처할 수밖에 없음. 자연재해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면 해야 함.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 가능성에 대한 실태파악을 할 수 있는 어떤 제도나 방안이 있나?

자연재해 발생 시 문화재청의 대처요령이나 지침이 존재하는지?

4월 10일 (목)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영환 의원(민주당)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할리우드의 무차별적인 자본공세 앞에서 국제경제법상 인정되는 스크린쿼터를 지켜나가는 것에 대한 장관 견해와 향후 대책”을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문화관광부장관은 서면답변을 통해 “정부는 스크린쿼터제도가 일정 기간 동안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

는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 동안이라는 답변은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가 제시하기에는 너무도 미온적이고 우유부단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스크린쿼터제를 궁극적으로 보장해 주는 국제협약이 만들어질 때까지, 나아가 할리우드가 패권주위를 포기할 때까지 강력한 입장을 견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 지난 3월 중순부터 말에 걸쳐 미대사관의 경제참사관이 한국의 제 영화단체들을 방문하여 스크린쿼터제의 축소와 폐지를 설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6일에는 미국세계협의회 마이런 브릴리언트 부회장이 한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투자협정(BIT)과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걸림돌로 스크린쿼터제를 지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의 압력에 외통부와 재정부의 일부 관료들이 스크린쿼터 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맞장구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 참여정부는 금번 WTO DDA 양허안 제출 대상에서 시청각서비스를 제외하기로 결정하여 실제로 시청각서비스 분야에 대한 양허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결정이 문화에 관해서는 무역협정에서 개방을 요구하지도 요구받지도 않는다는 문화적 예외의 원칙을 향한 첫 걸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때문에 스크린쿼터제라는 문화정책은 참여정부의 문화주권을 지키고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확고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문화가 자유무역의 대상이 되면서 세계의 문화환경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일례로 할리우드 영화가 세계 영화시장의 85% 이상을 장악하고 TV 수출량의 75%를 미국이 지배하면서 세계 각국의 영상문화는 존폐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GATS와 같은 무역협정들은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주권국가의 권리를 제한하고 오로지 무한대의 경쟁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즉 불공정한 경쟁을 은폐한 채 자유로운 경쟁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 OECD 가입국들이 체결을 시도했던 다자간 투자협정(MAI)이 문화에 대한 이견으로 1998년 결렬되면서 국제사회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본격적인 대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즉 양자 간 투자협정(BIT), 자유무역협정(FTA), WTO 등 국제

통상협정들이 각국의 문화정체성과 다양성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에서 문화상품과 문화서비스의 국제 간의 교환과 교류를 위한 국제법을 모색해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속에서 캐나다, EU, 중남미, 아프리카 등 대부분의 나라들이 WTO DDA 협상에서 영화, 방송, 음반 등 시청각 서비스 분야에 관한 한 다른 나라에 시장 개방 요구를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 현재 국제사회는 각 나라의 문화주권을 지키고 세계문화의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현실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2001년 11월 유네스코 31차 총회에서는 186개국의 동의 아래 GATS를 대체하여 문화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국제법적 강제력을 가지는 문화협약의 체결을 요구하는 세계문화다양성 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고 작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47개국 문화부장관이 참여하는 세계 문화부장관회의에서는 제6장 31조와 2개 부속서로 구성된 문화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였습니다.

○ 그리고 현재 58개국 유네스코 집행 이사국들이 2005년 10월 유네스코 33차 총회에서 발효시키는 것을 목표로 이 문제를 파리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등 소수 미디어 독점기업으로부터 자신들의 문화정체성을 지키고 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문화정책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정부의 권한을 보장해 주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대해서 장관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다면 장관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 그 효과가 의문시되는 한미투자협정(BIT) 일부에서는 을사보호조약에 버금가는 투기협정이라고까지 규정하고 있는 한미투자협정(BIT)을 일부 경제통상관료들이 밑실에서 우리의 문화주권과 정체성을 담보로 흥정하는 것에 대해서 장관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망정인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한미투자협정(BIT)이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OECD 가입국들은 왜 미국과의 BIT를 체결하지 않는지 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할리우드라는 거대 공룡의 무차별한 공세앞에서 GATT 4조가 공인하는 국제경제법상 합헌적인 스크린쿼터라는 문화정책을 지켜나가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이고 국회의 권위를 지켜나

가는 것입니다. 이미 이 문제는 15대, 16대 두 번에 걸쳐 국회에서 스크린쿼터 현행 유지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정부 정권 초에 이런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므로 인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시키는 더 이상의 논란에 중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서)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姜申星一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질의요지)

1. 장관이 생각하는 관광, 체육, 문화재, 방송 등 분야별 현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 변)

<문화관광 일반>

○ 해외문화 홍보체계의 일원화

- 문화관광부 소속 해외문화원과 국정홍보처 문화홍보원과 업무협조 체계 정비 및 통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당초 문화관광부 소속이었던 재외문화원 10개 처는 1999.5.24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LA, 뉴욕, 파리, 동경 등 4개 문화원은 문화부 관장하에, 독일, 중국, 러시아, 미국, 캐나다, 오사카 등 6개 문화원은 국정홍보처에 소속되어 운영 중입니다.

- 문화관광부 소속 문화원은 문화교류·협력 지원, 한국문화 종합소개 거점기능, 문화산업(영화, 드라마, 게임 등) 해외진출 지원, 재외동포 대상 문화홍보 등 한국문화 종합소개 전략 거점공간으로 운영 중이고 국정홍보처 소속 문화홍보원도 외관상 해외언론 대응의 국정홍보 활동에 중점을 두고는 있으나 도서관, 영사실, 한국어 강좌 운영 등 사실상 업무의 상당 부분이 문화, 관광, 스포츠 지원 등 문화관광부 기능의 연장선상에서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최근들어 문화의 중요성 증가, 우리 문화산업의 해외진출 확대 그리고 우리문화 해외소개를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가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국정홍보처 소속 문화홍보원을 일원화하여 우리 부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문화홍보업무를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다만, 통합 문제와는 별도로 문화홍보원의 본래의 기능과 역할이 우리 문화 해외선양

등을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인 점을 고려, 국정홍보처 문화홍보원과는 계속적으로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효과적인 우리 문화 홍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문화정책 분야>

○ 문예진흥기금 모금 폐지에 따른 재원 확충 방안

- 2003년 4월 현재 문예진흥기금 조성 실적은 총 4862억 원으로 2003년까지 조성목표액 4500억 원은 달성하였으나 문예진흥기금 모금제도가 2003년 12월 말로 폐지되고 금리의 계속적인 하락 등으로 2004년 이후에는 기금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 따라서 국민들의 소득증대, 주 5일 근무제 등으로 문화향수에 대한 욕구 증대, 다양한 예술장르의 출현 및 사회·문화 여건 변화에 따라 순수문화예술 기금지원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문예진흥기금 재원 확충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 이에 따라 우리 부에서는 선진국 수준의 문화예술 향수권 신장을 위한 재원 확충방안으로 국고 출연, 타 공익자금 출연, 기금수익률 제고 및 실명제기부금 확보 등 다각적인 재원 조달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 기금모금이 폐지되고 시중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이자수입으로는 문예진흥사업비 충당이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문예진흥기금 조성정책을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국고지원정책으로 전환하여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향후 5년간 사업비 부족분 2500억 원에 대해 국고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며 청소년육성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등을 청소년 문화예술 사업과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재원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참고로 국고 지원과는 별도로 국회 상임위에서는 경륜·경정수익금으로 문화예술 진흥분야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경륜·경정법개정안을 심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용산 박물관 헬기장 이전문제

- 2005년 중반 개관을 목표로 건립·추진 중(4월 현재 57.9% 공정율)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전면에 위치한 미군 헬기장 이전을 위

해 현재 우리 부는 정부 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미국 측과 헬기장 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헬기장 이전협상을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제1후보지: 용산기지 내 미대사관 숙소부지 북단(약 500억 원 소요)

* 미대사관 직원숙소(152세대)는 국방부 소유 UNC부지로 신축 이전

- 제2후보지: 용산기지 내 커미서리 북단지역 (약 1000억 원 소요)

<예술 분야>

○ 명동 구국립극장 매입, 공연장 활용

- 명동 구국립극장을 매입하여 공연장으로 리모델링하여 외국인들이 자주 찾을 수 있는 문화명소 및 관광자원화하고 수도중심의 역사적 공연장을 확보하여 국민의 문화향수권을 신장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 것입니다.
- 이를 위해 금년에 200억 원을 투입하여 매입을 시작할 것이며 T/F 구성 및 공청회 개최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차질없이 준비하여 나갈 것입니다.

<관광 분야>

○ 관광산업에 대한 제조업 수준의 세제, 금융, 행정지원을 통하여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및 관광수지 개선

- 관광호텔 외국인관광객 객실요금에 대한 부가세 제도개선, 관광호텔 산업용 전력요금 적용, 관광호텔 외국인 산업연수생 고용 대상업종 포함, 관광호텔에 대하여 환경개선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감면
- 수도권 관광호텔 건립에 대한 과도한 입지규제 완화
- 여행업에 대한 산재보험률 인하,
- 관광단지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감면
- 외국인 전용 카지노 기구·용품에 대한 특소세 면제 등

○ 대규모 관광시설에 대한 외자 유치에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조건부 허가제 도입(관광진흥법 개정 추진)

<방송 분야>

○ 최근 본격적인 다매체·다채널시대 도래와 신규서비스 도입으로 방송·통신분야 전반에 걸쳐 디지털영상콘텐츠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양질의 국산 콘텐츠 부족으로 외국 콘

텐츠의 무분별한 유입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그동안 우리의 방송은 언론으로서의 방송기능만이 부각되어 산업적·문화적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영상콘텐츠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의 추진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 또한 지상파 3사 중심의 방송산업구조로 다양한 콘텐츠 제작·유통활동이 제약되어 방송영상콘텐츠 제작기반인 독립제작사,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며 우리 부는 이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체육 분야>

○ 대구 하계 U대회 개최

- 정부는 금년 8월 대구에서 개최되는 세계대학생들의 스포츠제전인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루어질 수 있도록 전정부적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 지난 3. 20 대구 현지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정부지원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정부 지원사항을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특히 최근에 사스의 확산으로 대회참가 등에 차질이 우려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는 해·공항에 군의관·간호장교의 상시근무체제를 실시, 대회 참가자들이 안심하고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에 이어 가장 안전한 대회로 개최될 수 있도록 국정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회안전통제본부를 5월부터 상시체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 2010동계올림픽 유치

- 국가이미지 제고, 지방의 세계화, 동계 스포츠의 발전 등을 위해 추진 중인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03.7.2, 체코 IOC총회에서 결정)가 체육 분야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 현재 우리나라의 평창,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캐나다 밴쿠버 등 3개 도시가 2010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이며 우열을 쉽게 가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 앞으로 2010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로 IOC위원 대상 집중 홍보 및 득표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범정부적 유치역량 결집으로 총력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2010동계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의요지)

2. 월드컵경기장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관광부와 지자체 간의 협조 방안이 있는지, 어떠한 것인지?

(답 변)

○ 월드컵경기장의 활용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관리·운영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난 2002년 대회종료 이후 제27차 정부실무대책협의회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 부에서는 경기장이 다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제·개정하여 상업시설의 설치는 물론 시민들이 즐겨 찾는 편익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완료하였으며, 2002.11.13자 체육과학연구원에서 실시한 시·도별 월드컵경기장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물인 '월드컵경기장의 효율적 관리·활용을 위한 환경분석' 자료를 시·도에 통보, 경기장 사후 활용 업무 추진에 적극 활용토록 하였으며

○ 또한 서울·인천지역 연고 프로축구단 창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지방재정법)과 규정(은행감독규정) 등의 개정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신생 프로축구팀인 대구 F.C와 광주 상무 불사조팀을 K리그에 포함시켜 경기장 활용의 확대와 지역사회 축구발전을 기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3. 제주도 월드컵경기장 지붕막 보수작업 관련, 태풍 루사와 평센이 지나간 지 9개월째 아직도 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데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관리비 보전 대책

(답 변)

○ 2002년 제9호 태풍 평센과 제15호 태풍 루사에 의해 피해를 입은 제주도 월드컵경기장 지붕막에 대해서 관리책임자인 서귀포시에서는 태풍 피해의 원인규명을 위해서 시설안전공단에 의뢰하여 2002.8.6부터 8.21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후, 보다 철저한 원인규명을 위해서 대한건축학회에 요청하여 지붕막의 시료를 채취, 재질 분석

실험, 풍하중과 풍동실험을 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지붕 철골트러스 구조의 변형과 거동에 대한 정밀 조사는 CJ엔지니어링에 의뢰하여 그 결과에 의거 당초 설계자인 일건건축사무소에 원인규명 결과를 분석하게 한 후 실시설계를 하도록 요청하였으며 2003.4월 말 까지 완료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 또한 경기장 복구를 위해 시공자인 풍림산업주식회사로부터 잔존 지붕막을 철거하고 타워 크레인 등 복구공사 사전준비 작업을 요청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원인분석의 내용과 대안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설계자문위원회 심의 및 건축학회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2003.10월까지 복구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경기장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대부대상인 건물과 토지를 SimEx 영상체험관을 테마로 한 관광시설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우선 1단계로서 SimEx 영상체험관 시설 운영사업자를 선정하여 토지 1만 440㎡를 임대할 계획이며 축구 국가대표팀의 제2훈련장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A매치 국제축구대회 및 한중일 프로리그 챔피언전 등의 유치 및 국내외 프로팀의 동계 훈련 유치, 유소년 축구교실의 상설 운영 등 경기장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4.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1) 문화콘텐츠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장관의 견해

(답 변)

○ 문화콘텐츠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콘텐츠 개발을 위한 소재 발굴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부는 문화콘텐츠 원형의 발굴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02년도에 국고와 정보화촉진기금 150억 원을 들여 456건의 과제를 접수, 40개 개발과제를 선정하였으며

- 앞으로 2006년까지 국고 400억 원을 더 투입하여 150건 이상의 과제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 문화콘텐츠 원형 발굴의 다양한 매체로의 전환으로 문화콘텐츠의 체계적 관리·유통을 위한 KCRC(Korea Contents Resource Center) 구축 사업 및 문화원형사업 결과물의 활용성을 제

고하기 위한 문화원형콘텐츠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또한 문화콘텐츠 창작·개발역량의 획기적 확충, 창작과 기획력을 겸비한 전문인력 집중양성,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거점 확보 및 전략적 마케팅 등의 다양한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의요지)

2) 2003년도 문화산업 관련 예산 중 캐릭터 관련 예산은 비중이 높은 반면 디자인, 공예, 한복 등의 문화상품에 대한 예산 지원은 전무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장관의 견해를 물으심

(답 변)

○ 문화콘텐츠산업이 제대로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순수예술을 통해 만들어지는 창의성에 그 기반을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 부는 예술에 대한 지원 정책과 문화산업에 대한 육성정책 간에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디자인, 공예, 한복 등의 문화상품 예산은 우리 부 내 국 간 기능조정 에 따라 문화산업국이 아닌 예술국과 관광국 사업 예산에 편성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디자인, 한복-예술국: 18억 원/

※ 공예-관광국: 49억 원

○ 우리 부에서는 부 내의 순수문화예술, 관광,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문화원형의 창작 소재 발굴과 이의 문화콘텐츠 상품화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영상만화 등 문화산업의 기초가 되는 소재 분야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질의요지)

3)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의 유기적 개발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문화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 부분 상품개발계획과 구체적 지원방법

(답 변)

○ 관광 행태가 보는 관광에서 참여하는 관광으로 변화하고 있어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발계획의 수립, 국고 지원, 개발자문, 평가 등을 통해 지원·육성하고 있습니다.

○ 특히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이 경북북부지역에 풍부하게 남아 있는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관광상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봉화 전통문화체험마을 조성, 영주의 선비촌, 순흥역사체험장 조성사업들이 있으며, 안동 하회마을, 청송 덕천마을, 의성 산운·사촌마을, 영덕 괴시·인량마을, 예천 금당실마을, 영양 두들마을 등 문화제와 고가옥이 많은 전통마을을 정비하여 관광객이 지역주민과 함께 숙식을 같이 하며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며
- 과거시험축제, 시조백일장, 안동 탈춤페스티벌, 효 체험캠프 운영 등 관광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유교문화권 관광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의 경우에도 경남 하동의 고소성유적지, 남해의 전통문화예술촌, 전남 장흥의 방촌마을, 진도의 아리랑마을 등 지역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사업들이 포함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동 화계장터 복원, 광주호 시가문화권 조성, 대가야 역사테마공원, 정선 아우라지 개발 등 지역의 독특한 역사 문화자원을 관광자원화하여 관광객에게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역사·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 외에도 진도 영등제, 남원 춘향제, 대구 약령시축제, 난계 국악축제,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 등 전통문화와 독특한 주제를 배경으로 한 지역축제 중 관광상품성이 큰 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선정하여 집중 지원·육성하고 있으며,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정선아리랑, 진도 토요일속공연, 하회별신굿 탈놀이, 보문단지 국악공연, 제주민속공연 등 전국 각 지역의 독특한 전통공연예술을 상설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국내외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문화상품을 관광상품화하여 문화의 경쟁력도 키우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5. 스크린쿼터제도를 궁극적으로 보장해 주는 국제협약이 만들어질 때까지 스크린쿼터제도에 대해서 문화관광부가 강력한 입장을 견지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

(답 변)

○ 우리 부는 국제통상협상에서도 스크린쿼터 제도가 문화적 다양성 확보를 위한 예외조항으로 인정되고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영화 분야의 스크린쿼터를 비롯한 시청각 분야는 WTO DDA 협상에서도 문화주권의 확보를 위하여 협상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한미투자협정과 관련하여 스크린쿼터의 축소 내지 폐지에 대해서 영화인들을 비롯한 사회문화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반대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 현행유지 결의를 했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현행 유지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 향후 협상과정에서도 정부는 국회와 영화계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한편, 다양한 한국 영화산업 진흥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高興吉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질의요지)

1. 청와대 언론보도 분류 지시와 관련, 긍정·사실·공정비판·오보 등으로 구분하고 오보에 대한 대응상황 보고 등 강력한 실천의지를 보임. 정부가 이런 식으로 통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는지, 오보의 명확한 구분없이 가능한 것인지?

(답 변)

○ 청와대에서 요구한 언론보도 일일보고서는 언론의 비판 중 건전한 비판 보도는 참고하고 오보의 경우 기자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인지, 브리핑에 혼선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특정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리 부에서도 건전한 비판 등을 적극 수용하여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세우는 데 적극 참고해 나가겠습니다.

(질의요지)

1. 문화관광부 홍보업무 관련

1)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현재 언론에 대해 가해지고 있는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선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답변

(답 변)

○ 홍보업무 운영방안은 지난 시절 언론과의 부적절한 관행을 개선하고, 원칙과 상식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대언론관계를 정립하고자 하는 것

으로서 언론에 대해 악의적 선전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요지)

2) 문광부의 언론홍보 운영방침 중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사무실 출입제한, 취재원 실명제, 취재응대후 통보제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함.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

(답 변)

○ 제기하신 문제는 그 내용이 잘못 알려져서 언론통제로 오해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우선, 사무실 출입 제한은 이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업무 공간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이를 일정범위 내에서 제한하자는 것으로서 자유로운 언론 취재를 제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 취재 기자가 개별 인터뷰, 전화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취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는 사전 협조를 받아 사무실 촬영과 방문취재도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진국과 같이 합리적인 절차를 통하여 취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취재원 실명제는 국민의 알권리,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알권리를 보장하자는 차원에서 언급한 것입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기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만 익명보도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용의 경우에 취재원의 실명을 밝혀 달라고 요청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것에 불과합니다. 공익고발 등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외되는 것입니다.

○ 취재 통보제도 이를 모든 취재 내용을 일일이 보고하는 것으로 잘못 알려졌습니다. 오보의 가능성이 있는 취재일 경우에 한하여 직원 스스로가 판단하여 통보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후 책임 문제를 방지하여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단순한 사실확인 같은 모든 내용을 일일이 공보관에게 통보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공익고발(내부고발) 등과 같이 취재원의 보호가 필요한 것은 당연히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의요지)

3) 대통령이나 이창동 장관은 인터넷 매체의 폐해에 대해서는 별반 언급이 없음. 장관이 주장하는 언론의 자유는 자신에게 유리한 보도를 하는 언론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이

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

(답 변)

○ 언론의 자유는 모든 언론의 자유이며,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부는 종이 매체뿐만 아니라 인터넷 매체에 대해서도 정보접근권을 공평하게 보장하는 한편, 오보 등에 대해서는 똑같이 대응할 것입니다.

(질의요지)

2. 문화관광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관련, 문화관광부는 영상콘텐츠 정책을 담당하겠다는 주장을 철회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상적인 구성에 동참을 촉구함. 이에 대한 장관의 답변

(답 변)

○ 현행 방송법 제92조 제2항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은 방송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우리 부는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방송영상산업 진흥정책을 수행해 왔으며, 방송·통신 융합에 따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콘텐츠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문화관광부의 방송영상콘텐츠 진흥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것입니다.

○ 우리 부의 보고는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논의 시 콘텐츠 진흥이 중시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며, 우리 부가 독단적으로 어떤 사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아직까지 방송통신위 설립에 관한 공식적 논의는 없었습니다만 2기 방송위가 구성되면 학계, 업계, 관련기관 등이 모두 참여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 부는 합리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참고로 주요 선진국에서는 과도한 권한 집중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을 우려하여 독립적인 규제위원회가 지원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프랑스

- CSA(시청각최고위원회): 방송 분야의 각종 심의·규제를 담당

- CNC(국립영화센터): 영화, 방송프로그램 등 시청각 분야 지원을 담당

(질의요지)

3. 월드컵 잉여금을 조직위가 해체되는 6월까지 배부하게 되면 공정한 심사의 기준이 모호하

고 자칫 특정 지자체에 대한 특혜 시비가 일 수도 있고 내년 총선 대비 선심용 오해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잉여금을 체육진흥기금에 포함시켜 각계의 의견을 좀더 경청한 뒤 신중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

(답 변)

○ 2003.4월 현재 월드컵 잉여금은 약 1630억 원이며 조직위원회의 재산이므로 법인 정관 및 민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분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월드컵조직위원회가 2003.6월에 해산하여야 하므로 당초 정관 제40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축구협회 또는 체육관련 법인단체에 귀속시켜 축구진흥 및 체육발전에 집행되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공정한 배분과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특혜 시비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월드컵 개최도시에는 경기장 사후 활용도 제고 및 축구진흥을 위해 각 3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축구인프라시설 구축을 위한 사업은 16개 시·도에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개방형 축구종합훈련장 4개소와 지역별 인조잔디구장 12개소를 정하여 시·도 관계관 회의를 거쳐, 지자체 실정에 맞게 면밀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 월드컵 잉여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편입하여 집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여론을 수렴한 결과 월드컵 잉여금은 월드컵축구대회가 개최됨으로써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축구 분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음에 따라 잉여금의 투자가 왜곡되지 않고 당초의 취지에 부합되게 배분되도록 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 해산전에 직접 분배·처리할 계획입니다.

(질의요지)

4. 음악저작권료 징수 관련

1) 음원신탁문제는 향후 음반산업계의 방향을 설정할 사안 중 하나이므로 그 처리과정과 음제협이 대표성은 명백해야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음제협이 신탁관리단체로서 대표성을 획득할 방안

(답 변)

○ 음원제작자협회의 대표성 문제는 당초 음원의 신탁관리를 위하여 음반관련 업계의 양대 단체인 음반산업협회와 연예제작자협회의 합의로 설립된 단체이고 이미 2001.12.27에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대표하는 단체에 부여하는 방송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되어 업무를 수행 중인 단체임을 감안하면, 대표성은 이미 갖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신탁회원 수가 다소 부족하긴 하나, 신탁업무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그 효과가 입증되어야만 믿고 권리를 맡기겠다는 것이 상당수의 음원권리자의 입장인 점을 감안할 때 일부 이해관계의 상충과 오해에 기인한 반대가 음원제작자협회가 업무를 수행해 나가면서 차츰 불식될 경우 다수의 음반제작자가 협회에 권리를 신탁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정부에서도 음원제작자협회가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을 독려하거나 권리자 및 이용자 단체 간의 협의를 주선하는 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질의요지)

2) 음악 사용료가 철저한 시장조사와 관계 업계의 여론 반영 등 조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은 자제하여야 할 것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

(답 변)

○ 이번에 승인된 음원서비스에 대한 저작물 사용료는 일단 음원제작자협회가 총회를 거쳐 신청한 것을 이용자 단체 의견수렴과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정부가 조정하는 것입니다.

○ 우선, 온라인 음악서비스의 원만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당위성 외에 온라인상에서의 저작물 사용료에 대해서는 원가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연구와 권리자 단체 간 실무협의를 통해서도 온라인 음악서비스의 독특한 구조 때문에 사용료를 결정하기가 어려웠고 참고할 만한 외국의 사례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니다. 이처럼 권리자 단체뿐만 아니라 이용자 단체들의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객관적으로 근거가 될만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일단 온라인 음악시장의 규모가 극대화될 수 있는 시장가격이 얼마나 적정할 지에 대해 알아보고 그 가격을 기준으로 저작물 사용료를 산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네티즌을 대상으로 온라인 음악 유료화에 대한 반응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사용료를 결정하게 되

었습니다.

○ 각 서비스별로 보다 합리적인 사용료 책정을 위해서는 철저한 시장조사와 여론반영이 필요하다는 위원님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나름대로는 전례가 없는 분야의 사용료 규정을 승인함에 있어 최대한 권리자 및 업계의 의견 수렴과 개별 이용자의 의견까지 고려하여 결정한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요지)

5. 독립기념관 관련

1) 독립기념관의 명칭을 ‘민족기념관’으로 변경하고,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단체에 경영을 맡기는 등 생산성과 경쟁력을 갖춘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문광부 입장

(답 변)

○ 독립기념관의 명칭은 1982년 성금모금 시부터 공청회, 여론수렴, 국회 의결(독립기념관법 제정, 1986.5.9) 과정을 거쳐 현재의 명칭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 후 명칭변경에 대해 몇 차례 민원제기가 있어 1994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현 명칭을 유지하기로 의견이 모아졌고 또한 국사편찬위원회에 자문(2001년)을 의뢰하여 국사학계에서도 ‘독립’이라는 단어가 독립기념관의 목적과 성격에 부합한다면 현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제정된 명칭을 16년이 지난 현재에 와서 논의하는 것은 (국민들이나 독립운동관련단체의 반발 등)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독립기념관은 우리나라 국난극복사와 국가 발전사에 관한 자료 수집, 전시, 연구를 통해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투철한 민족 정신을 선양하여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 국민 교육도장이라는 특수한 기관으로서 공공성과 공익성 및 상징성이 있는 비영리 공공법인으로서 일반 공기업이나 사기업과 같이 수익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세계 유사기념관의 경우 대부분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향후 독립기념관 운영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는 방향에서 경영혁신과 운영 합리화를 통한 책임운영기관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의요지)

2)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적자재정을 탈피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 변)

○ 독립기념관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과 공공성 등으로 국고 의존도가 높은 기관입니다. 그동안 운영 활성화를 통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지속적인 경영혁신(정원 184명→89명 및 조직 경량화 등) 추진
- 전국 교육감 및 학교장들에 대한 관람객 유치 홍보를 강화
-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여 청소년 교육을 강화
- 최신 전시기법을 통한 전시교체 보완(7개 관 중 6개관 완료) 등

○ 독립기념관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개관 당시 수립된 독립기념관 및 독립공원 조성계획을 완성한다는 목표하에 독립기념관이 자리하고 있는 중곡의 조경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보완하고 동곡에 조성된 한국청소년 중앙공원의 교육시설을 이용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할 계획이며 서곡은 역사민속마을, 문화복지시설 등을 민자유치하여 조성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 또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도록 함과 동시에 계층별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국민정신교육 기능 강화, 최신 전시기법을 통한 전시교체 추진, 한국독립운동사와 대한민국 정부의 법통성 정립을 위한 연구를 강화하고 문화상품 개발 판매 등 수익사업을 활성화하여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회원제도 도입과 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할 계획이며, 또한 지속적인 정보화 사업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사이버전시관 관람 서비스와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하여 전국민에게 정보제공 등 독립기념관이 건립목적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운영을 활성화하고 건전 복합문화 공간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의요지)

3) 우리 한반도의 역사 흐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의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교육프로그램과 다양한 이벤트 등 소프트

웨어의 활성화를 위하여 젊은 문화전문가와 기획자를 운영에 참여시켜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답 변)

○ 우리나라 선사시대 이후 고조선, 삼국시대, 조선시대까지의 국난극복사, 문화발달사에 대한 각종 자료와 유물 등은 민족전통관(제1전시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에서는 1991년에 결정된 전시교체보완기본계획에 따라 6개 전시관에 대한 전시내용 교체 및 보완을 마치고 올해는 민족전통관에 대한 전시교체 보완(우리 한민족의 정체성·우리 문화의 우수성·국난극복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계의 전시기획 및 연출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새로운 전시연출 기획 방침에 따라 독립기념관을 찾아오는 관람객들에게 우리 역사의 우수성과 우리 민족의 정체성, 그리고 역사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독립기념관에서는 청소년 및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을 직접 수행하기 위해 2002년도에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의 채용, 전시 교육분야의 프로그램 사업 지원을 위해 전문 분야(학예직, 연구직)의 직원을 10여 명 신규 채용, 보강한 바 있습니다.

○ 앞으로 이러한 프로그램 추진실적 및 평가 등을 통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보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의요지)

4) 또한 독립기념관이 국내인에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해외교포 자녀에게 한민족으로서의 긍지를 심어줄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체험 관광명소로 발전시켜야 할 것임. 이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입장

(답 변)

○ 독립기념관에서는 그동안 해외교포 자녀에 대한 민족교육 및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으며 이미 많은 부분에서 상당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 해외교포 자녀에 대한 한민족 교육 실시

- 국제교육진흥원(교육인적자원부 산하), 해외동포재단(외교통상부 산하) 등과 협력, 동 기관에서 해외교포 자녀들을 초청 시, 반드시 독립기념관을 방문하도록 하여 우리의 전통

문화, 민족정신 및 독립운동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연 20여 회, 1,500여 명)

- 외국인 관광객 유치 대책

- 매년 해외주재 한국대사관, 해외공보관 등에 협조 공문 및 각종 홍보책자 등을 보내 당사국 국민(외국인)들이 독립기념관을 방문하도록 하고 있음
- 주요 대상국인 일본에는 한일관광진흥회의 등에 관계자가 직접 방문홍보를 함으로써 일본인, 특히 학생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또한 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속초 관광박람회, 경주 문화유산박람회 등 주요 국제 행사에 직원 파견 홍보, 홍보물 비치 등을 통해 외국인 관람객을 유치하고 있음
- 한편, 전시관 설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외국어(영, 중, 일어)를 병기함으로써 외국인 관람객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의 결과, 1987. 8. 15 개관 이래 30여만 명의 외국인이 독립기념관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 앞으로 좀더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외국인 관람객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權五乙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질의요지)

1. 코오롱 TNS월드의 부도에 따른 피해업체의 해결방안과 잉여금 활용 방안 등 손실에 대한 대책

(답 변)

○ 월드컵 회장사업은 조직위원회가 직접적인 계약당사자가 아니고 코오롱 TNS월드와 OEM업체 상호간에 이루어진 사항임으로 조직위가 월드컵 잉여금으로 OEM업체의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 그러나 월드컵의 성공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는 월드컵 포상 및 기장 부상품 등으로 회장상품 15억 원 상당을 구입·지원하였고 FIFA와 협의하여 회장상품의 판매기한이 2002.12월 말로 되어 있는 것을 소진될 때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품의 구입이외 조직위 등에서 피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면 우리 부에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건립 관련

1) 주한미군 측은 헬기장 이전합의서 체결 후

헬기장 부지 인계 시까지는 약 3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미군 측의 이전결정이 지금 내려진다 해도 이전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2005년 6월 개관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

(답 변)

○ 2002. 4. 28 한미 고위실사단 회의결과 헬기장을 용산 미군기지 내로 이전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하였습니다.

- 제1후보지: 용산기지 내 미대사관 주택지역 북단(약 500억 원 소요 추산)

※ 헬기장 이전지역의 미대사관 주택은 국방부 소유의 UNC부지로 신축 이전

- 제2후보지: 용산기지 내 커미서리 북단지역 (약 1000억 원 소요)

○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미 간 현재 추진하고 있는 헬기장 이전은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UNC부지 내 미군시설을 용산기지 내로 이전한 후, UNC부지를 국방부에 반환하여 동 부지에 미대사관 직원숙소를 건립하여 임대해 주고, 현 미대사관 직원주택지에 헬기장을 조성하여 이전하는 것입니다.

○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관 전에 헬기장을 완전히 이전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부는 박물관 개관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 UNC 건물 철거와 아파트 건립 관련 사업을 병행 실시하여 미대사관 직원숙소 이전 및 헬기장 조성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 주한미군 측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새로운 헬기장 건설 전에 임시 헬기장으로 이전하는 방안 등을 미측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질의요지)

2) 덕수궁터에 대한 미대사관 신축 여부를 둘러싼 논란과 미국이 헬기장 이전문제와 덕수궁터의 대사관과 직원아파트 문제를 연계시킨다는 데 대해 정부가 분명하고 책임있게 덕수궁터 미대사관, 아파트 신축반대 입장을 천명할 의향

(답 변)

○ 우리 부는 두 문제는 별개의 사안으로 미측과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별도로 처리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 우리 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덕수궁 주변에 건물이 들어서지 않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덕수궁터 미대사관 및 직원숙소 건립문제는 타 지역 문화재 주변 건설공사와 마찬가지로 문화재보호법령에 의한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3) 헬기장 이전문제의 지연에 따른 국립박물관 개관 지연, 덕수궁터의 미대사관 숙소문제 등 현안의 복잡성은 문광부의 직무유기이자 무소신의 정책방향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

(답 변)

○ 우리 부는 그동안 용산 새 국립중앙박물관의 차질없는 개관 및 운영을 위하여 동 박물관 부지내 미군 헬기장의 이전문제가 적기에 적절히 해결될 수 있도록 미측과의 협상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덕수궁터 미대사관 및 직원숙소 건립문제도 문화재보호법령에 의한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 앞으로도 우리 부는 미측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용산 미군 헬기장 이전문제와 덕수궁터 미대사관 및 직원숙소 건립문제가 적기에 각각 적정한 절차에 따라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金秉浩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질의요지)

1. 현 정부의 언론정책으로 볼 때, 금년 6월 IPI(국제언론인협회)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언론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될 수 없을 것 같음.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

(답 변)

○ 참여정부에서는 일관되게 정부와 언론 간에 있어 부적절한 중전의 관행을 개선하고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개방-공평-정보공개의 원칙하에 정부와 언론이 각기 고유의 역할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견제와 균형을 통한 성숙하고 선진화된 모습의 정부 - 언론관계로 정립해 나가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 아울러 국제사회에도 우리의 언론상황을 정확히 알려 우리의 취지가 오해받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의요지)

2. 방송정책권 관련

1) 영상콘텐츠정책을 방송위로부터 문광부로 이관하겠다는 것은 방송법 제27조를 악용한 것이

아닌가? 이것이 방송정책권을 회수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

2) 현재 방송통신관계기구의 일원화 및 방송통신관계법의 정비와 관련한 관계부처 간의 협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3) 방송통신위(가칭)가 구성된다면 문광부의 방송관련 기능의 폐지 및 이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답 변)

○ 현행 방송법 제92조제2항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은 방송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우리 부는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방송영상산업 진흥정책을 수행해 왔으며, 방송·통신 융합에 따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콘텐츠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문화관광부의 방송영상콘텐츠 진흥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것입니다.

○ 우리 부의 보고는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논의 시, 콘텐츠 진흥이 중시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며, 우리 부가 독단적으로 어떤 사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아직까지 방송통신위 설립에 관한 공식적 논의는 없었습니다만 2기 방송위가 구성되면 학계, 업계, 관련기관 등이 모두 참여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 부는 합리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참고로 주요 선진국에서는 과도한 권한 집중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을 우려하여 독립적인 규제위원회가 지원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프랑스

- CSA(시청각최고위원회): 방송 분야의 각종 심의·규제를 담당

- CNC(국립영화센터): 영화, 방송프로그램 등 시청각 분야 지원을 담당

(질의요지)

3. 신문고시제도 관련

1) 신문의 자율경쟁이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답 변)

○ 신문업계의 자율경쟁은 바람직하며 자율경쟁 체제를 통하여 시장질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신문업계의 자율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계 스스로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다면 자율경쟁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질의요지)

2)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취소에 대한 장관의 견해

(답 변)

○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취소와 관련하여 공정위가 조치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견해를 밝힐 입장에 있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요지)

3)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취소에도 불구하고 신문고시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

(답 변)

○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정부와 관련 사업자 단체의 노력은 어느 한쪽도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문고시는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 질서를 바로잡고자 하는 취지라고 이해하고 있으며, 신문시장에 공정거래 질서가 자리잡힌다면 신문고시 역시 불필요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4. 국립부산국악원 건립 관련

1) 국립부산국악원 건립현황과 문제점

(답 변)

○ 업무보고서는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사업 중심으로 작성하였으므로 부산국악원 건립 사항은 개요만 언급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립부산국악원은 경상남도 지역에 국악을 보급하는 중심지로 활용하면서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통음악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 2002년 11월부터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입로 및 주차시설 확보를 위한 인접부지의 추가 매입에 대해서는 우리 부와 부산시가 공감, 이의 매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기본설계 과정에서 사업비가 당초 458억에서 650억 원으로 증가(192억 원)되었습니다. 이는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지하주차장 면적 증가(102억 원), 추가 매입 부지 내의 건물철거비(20억 원), 물가상승(70억 원) 등으로 인해 공사비가

증가된 것입니다.

○ 따라서 우리 부에서는 동 사업비를 조정해 줄 것을 기획예산처에 요청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의요지)

2) 부지 추가 매입을 위해 부산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

(답 변)

○ 국립부산국악원 건립에 관하여 부산시에서 문화관광부에 사업 건의를 할 당시인 2001년도에 부지확보는 부산시에서 하고 정부에서는 건물 건립과 운영을 담당하도록 역할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역할 분담은 국립민속국악원이나 국립남도국악원 건립 등 우리 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시설을 건립할 때의 사업추진 방향과 형평성을 고려한 점이라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금년도에 국고로 책정된 추가부지 매입비 6억 원에 대하여는 부산시에 지원하여 부지 매입에 사용토록 할 예정이며 향후 동 사업 추진에 대한 제반 업무는 부산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요지)

5. 앞으로 부산국제영화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전용관 건립이 시급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영화진흥위원회의 예산 지원 방향과 문화관광부의 대책

(답 변)

○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관련하여 대통령 공약사항 중에 부산국제영화제를 세계 5대 국제영화제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이 있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 우리 부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산국제영화제가 세계 유수의 국제영화제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용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대통령 공약사항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도 전용관 건립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우리 부에서는 부산국제영화제 전용관을 국고와 지방비로 건립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2004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전용관 건립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됩니다.

(질의요지)

6. 서비스시장 개방 양허안 관련

1) 양허안 제출 보류는 문화시장 개방 불가라는 이창동 장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인가? 양허안 제출 연기 외에 문화시장 개방 불가 입장을 견지할 수 있겠는지?

(답 변)

○ 정부는 세계화·정보화 환경속에서 우리의 문화정체성 유지 및 영화·방송 등 국내 영상산업의 보호 차원에서 시청각 분야는 금년 3.31 WTO 사무국에 제출한 우리나라의 1차 양허안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향후 WTO협상 과정에서도 정부는 스크린쿼터를 포함한 시청각 분야는 현재의 개방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추진하고 국회와 문화계의 의견과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요지)

2) 문화의 정체성과 다양성을 위한 국제적 연대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음. 특히 46개국 장관들이 참여하는 세계문화부장관회의(INCP)와 새로운 문화기구 창설에 참여할 계획이 있는지?

(답 변)

○ 세계문화부장관회의는 공식명칭이 ‘문화정책을위한국제네트워크(Int’l Network for Cultural Policy; INCP)’로서 세계화 시대의 문화다양성 촉진방안 및 새로운 문화정책 이슈들을 논의하는 각국 문화부장관들의 논의 기구이므로 정부는 각국의 참가 수준 및 국내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금년도 6차 INCP 회의는 10월 중순 크로아티아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질의요지)

3)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 당시 시청각 서비스 양허협정 관련,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인 제작, 배급(CPC 96112, 96113)이 PP(프로그램 공급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해석을 둘러싸고 방송위원회와 문화관광부 및 외교통상부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음. 양허협정에 PP(프로그램 공급업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답 변)

○ 일부 신문기사의 위성방송PP의 양허 논란은 방송위원회 담당자 개인이 자의적으로 UR 협상결과에 대해 불합리하고 왜곡된 해석을 함으로

써 불필요한 국민들의 오해와 논란을 야기한 것에 불과하며 이후 방송위원회가 해명자료를 통해 위성방송PP의 양허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UR협상에서 시청각 분야는 영화 및 비디오 제작·배급과 음반 분야만을 양허했고, 채널사용사업자(PP)를 포함한 방송 분야는 전혀 양허하지 않았습니다.

○ 우리나라가 양허한 영화 및 비디오 제작·배급서비스(CPC 96112, 96113)의 제작(production) 및 배급(distribution)은 영화 및 비디오를 제작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 또는 대여(Sale or Rental)하는 것을 의미하고 방송법상의 채널 사용사업자(PP)는 유선방송 및 위성방송 채널을 사용(임대)하여 일반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편성, 공급하는 사업자를 의미하므로 UR 양허표의 배급에는 'PP'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PP는 배급서비스의 대상인 다른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위성방송PP의 양허 주장은 우리나라 UR 양허표의 관련내용의 국문 표현인 '유선방송 프로그램공급업'이 현행 PP의 국문 해석과 유사한 데서 혼동이 발생했으나, WTO 회원국 간 법적 효력을 갖는 UR 양허표 영문본에는 'those services for Cable TV Broadcasting'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문리해석상 '유선방송용 영화 및 비디오 제작·배급업'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는 당시 초기단계에 있는 우리나라 유선방송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단서부분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질의요지)

7. 문예진흥기금 폐지에 따른 대책

1) 문예진흥기금의 적정규모

(답 변)

○ 문예진흥기금 적정규모에 대해서는 2011년까지 1조 6000억 원 규모의 문예진흥기금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문화정책개발원의 연구결과(2001.8)가 나와 있습니다. 이는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공공부문의 재정지원을 미국, 프랑스 등 OECD 문화선진국 수준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우리 부는 이를 토대로 2010년까지 1조 5000억 원을 적정규모로 판단한 바 있으나 문화예술 재정 수요의 지속적 증대와 이자율의 지속적 하락추세를 감안하여, 기금조성정책을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국고지원정책으로 전환기로 하였

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요지)

2) 문예진흥기금 모금 폐지로 인해, 현재 1억 원인 독립문화에 대한 지원규모를 기금사업비의 5%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문화부 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인지?

(답 변)

○ 문예진흥기금 모금이 폐지되더라도 문화예술계에 대한 국가지원 규모가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우리 부의 방침이며, 모금 폐지로 인한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고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전체 지원 예산의 2% (5.6억 원) 수준인 독립, 실험, 대안적 성격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을 2008년 5% 수준까지 상향하겠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요지)

3) 지속적인 문화예술계 지원을 위해서는 이자율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절대적인 기금 운용계획이 필요하지 않은지?

(답 변)

○ 대다수 정부기금의 주요 설치목적의 하나는 부족한 사업비 재원을 기금 이자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자수입에 영향을 받지 않는 기금 운용계획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며 문예진흥기금의 경우 기금모금이 폐지되는 차제에 이자수입 감소 등에 대처하기 위해 사업비 부족분을 국고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요지)

4) 청소년육성기금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문화예술분야 지원 시 청소년기금과 관광기금의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는지?

(답 변)

○ 청소년육성기금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활용하여 문화예술계를 지원하겠다는 우리 부 방침은 기존의 청소년 수련활동과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각각의 기금사업 가운데 문화예술 진흥의 효과를 갖는 사업에 대한 예산배정을 높여 지원하는 것으로 양 기금의 부족분 발생과는 무관합니다.

(질의요지)

5) 경륜 수입금 중 일부를 문예진흥기금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경륜·경정법개정안에 대한 장관의 견해

(답 변)

○ 문예진흥기금 모금 폐지와 문화예술 수요증대를 감안하여 기본적으로 경륜·경정 수익금을 문화예술 진흥분야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지 않습니다.

○ 다만, 최근 로또 열기 등 여러가지 상황으로 경륜·경정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고객들이 환급률 인상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국고 축소로 체육 및 청소년기금의 지출소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주 5일제 근무 확산 등으로 생활체육 및 청소년활동 분야 지원 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경륜·경정법 개정은 기존 배분비율의 재조정에 대한 이해관련 단체 및 기관 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함께 현재 제정 추진 중인 통합복권법(가칭)과도 연계하여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金成鎬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질의요지)

1. 새로운 민주적 취재시스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하고 정보공개와 비공개에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원칙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대책

(답 변)

○ 민주적 취재시스템의 성공을 위하여 적극적인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진적으로 공감합니다.

○ 우리 부에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모든 정보를 신속·과감하게 공개한다는 원칙하에 정보공개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우선 1단계로 현재의 홈페이지를 이용해 최대한 공개 가능한 각종 정책자료 및 보고자료 등을 적극 공개하고 있으며 일일 평균 10건 정도가 우리 부 홈페이지 내의 '열린 자료방'을 통하여 공개되고 있습니다.

○ 앞으로 홈페이지 등 관련 시스템 개편을 통하여 정보공개가 편리한 체계를 만들어 가는 한편, 문화행정혁신위원회를 통하여 정보공개범위 확대, 신속한 공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정보공개가 행정체제 내에서 제도화 되도록 할 것입니다.

(질의요지)

2. 권력과 언론의 유착단절과 언론시장의 정상화를 통한 여론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의 정례화와 사전공개, 공정위의 상습적인 불공정행위 언론사에 대한 직접 규제 등에 대한 의견

(답 변)

○ 언론사가 여론형성이라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사기업 형태라는 점에서 언론사도 경영이 투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언론사들도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세무조사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는 동등하게 취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의요지)

3. 민족평화체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 변)

○ 김원웅 의원이 4월 7일부터 12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북측의 아태평화위원회 전금진 부위원장을 만나 금년 7월 제주에서 남북 공동으로 통일민족평화체육축전을 개최기로 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위해 금년 5월 중 금강산에서 민간 차원의 실무협의를 갖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남북 간에 민간 차원에서 대규모의 문화체육교류 행사가 이루어질 경우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인 남북화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제반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번영에 기여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부는 앞으로 문화·체육단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될 이 행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입니다.

(金一潤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질의요지)

1. 청와대에 언론보도 일일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이를 중단하고자 청와대에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답 변)

○ 청와대에서 요구한 언론보도 일일보고서는 언론의 비판 중 건전한 비판 보도는 참고하고 오보의 경우 기자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인지, 브리

평에 혼선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리 부에서도 건전한 비판 등을 적극 수용하여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세우는 데 참고하고 있습니다만 시행상에 생기는 문제점이 있으면 이의 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질의요지)

2. 노문모·조아세에 대한 장관의 견해

(답 변)

○ 노문모·조아세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표현하는 여러 시민단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3. 문화관광부의 정보공개 실적이 저조하고, 특히 공보관실의 정보공개 수준이 낮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

(답 변)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문화관광부의 정보공개 수준은 미약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 특히 공보관실은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공보관실의 업무 성격상 특별히 정보공개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 공보관실뿐만 아니라 문화관광부 전 부서의 정보공개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요지)

4. SARS 장기화에 따른 U대회 대책과 대회기간 중 환자 발생 시 세부대책

(답 변)

○ SARS로 인해 중국, 홍콩 등에서 개최 예정이던 국제대회와 국제회의 등 국제행사가 일부 취소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정부에서는 SARS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SARS 발생지역 방문자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함께 방역과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부는 보건당국, 대구U대회조직위원회 등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국내 SARS 예방대책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대구 U대회 각국 선수단 참가 시 사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대회기간 중 SARS 환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격리·치료하는 등 종합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질의요지)

5. 대구 U대회와 경주 EXPO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고려하고 있는 정부계획과 경주 엑스포에 대한 정부지원 대책

(답 변)

○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는 우리 전통문화와 첨단기술이 접목된, 문화를 주제로 한 세계 최초의 박람회로서 21세기 문화의 세기에 적합한 독창적인 기획행사라 할 수 있습니다.

○ 현재 동 행사를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및 국제 관광자원화를 위해 국무조정실 주제로 유관부처 지원계획 협의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엑스포 기간 내에 개최되는 대구 U대회와 연계하여 행사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주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각 관련 부처와의 협의과정을 거쳐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질의요지)

6. 광주 문화수도론에 대한 장관의 견해, 지자체와 문화부 간의 합의 여부 및 협의가 있었다면 그 내용, 문화관광부의 이전에 대한 견해

(답 변)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광주의 문화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사항으로 신중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며 이는 국가발전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 광주 문화수도론과 관련하여 해당 지자체와 공식적인 합의를 한 적은 없으며, 광주가 한국의 문화중심도시로서의 상징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실질적인 내용 면에서 문화적 특성이 뛰어난 도시를 구현해 나간다면 자연스럽게 문화수도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부의 광주이전 문제는 행정수도 이전계획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 앞으로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중앙행정기관에 구성될 국가균형발전팀을 통해 지역특성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문화수도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 검토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沈載權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질의요지)

1. 카지노 허가 관련

1) 외국인 관광객들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독점체제에서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

2) 공급과잉지역인 제주지역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체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장기 휴업, 일정년도 적자의 경우에는 장관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

(답 변)

○ 제주지역을 제외한 서울, 부산, 인천, 속초, 경주 지역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사실상 각 해당지역에서는 독점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각 도시에 새로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추가 허가하는 문제는 카지노 허가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전반적인 운영 자문과 지도·감독, 카지노산업을 종합엔터테인먼트로 발전시키는 문제 등과 병행하여 종합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현재 의원입법 계류 중인 카지노감독기구의 설립과 외국인에 대한 조건부허가제도의 입법화에 따라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제주지역 8개 카지노 업체(사행행위등규제 및 처벌특별법에 의거하여 허가된 업체)는 한정된 지역에 많은 카지노 업체가 집중되어 있어 영업여건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 개별기업의 영업은 자유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사항으로 정부에서 직접 관여하기는 곤란하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광진흥법 개정안(2002.10.15 정동채 의원 등 36인 발의) 중 외화획득 저조 등 영업이익이 3년간 계속 적자인 카지노 업체에 대해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법률이 개정된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열악한 영업실적을 보이고 있는 제주지역 적자업체에 대한 구조조정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尹鐵相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질의요지)

1. 용산 새 국립박물관의 규모에 비해 전시 유물이 부족하지는 않는지와 미정리 유물 8만여 점의 존재 여부, 그리고 수장고 유물 관리대장이

있는지?

(답 변)

○ 용산 새 국립박물관의 전시예정 유물은 약 1만 2000여 점으로 대부분의 전시대상 유물은 이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다만, 일본실, 동남아시아실 등의 전시유물은 관련 국가의 박물관 등으로부터 대여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 태국 국립박물관과 동남아시아 유물대여 협의를 이미 완료하고 대여대상 목록도 확정하여 7월 중에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일본 유물에 대해서도 대여 협의회가 진행 중에 있고 중국 유물은 자체 소장유물을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시에 꼭 필요한 유물은 구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미정리 유물에 대해서는 작년('02년)부터 특별전담반을 편성, 집중 정리하여 현재는 미정리된 유물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유물관리 전담요원을 두어 급증하는 발굴 문화재의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장유물은 유물등록대장과 유물카드 등에 기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유물관리의 전산화를 통해 정리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유물관리 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1. 도서정가제 관련

1) 도서정가제 관련, 마일리지나 경품 제공에 대한 공정위의 고시가 있는데도 문화부가 별도의 고시를 제정하려는 것은 이중규제라는 논란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

(답 변)

○ 마일리지나 경품 제공에 대하여 공정위의 경품류 고시가 있으나 그 허용범위가 거래가액의 10%이며 경품가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는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위의 경품고시를 도서에 적용할 경우 도서의 1권당 가격이 낮기 때문에 실제적인 할인폭이 30~50%에 이르는 등 적절한 범위의 경품 제한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출판및인쇄진흥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판매 시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고시를 제정하기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진하였으나,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결과 공정위 경품류 고시에 반

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제시가 있어 현재 공정위와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요지)

2) 도서정가제가 시행되었으므로 출판사들도 거품가격을 걷어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답 변)

○ 출판및인쇄진흥법에 규정된 도서정가제는 출판 유통시장의 건전한 육성과 양질의 도서를 독자에게 적정한 가격에 공급하려는 취지에서 시행된 것으로서, 종전에 일부 출판사 도서의 정가가 과다 책정된 경우가 있었음이 사실입니다.

○ 우리 부는 도서정가제의 법제화를 계기로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등 출판관련 단체에 도서정가가 적정하게 책정되도록 적극적인 자정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는 1000여 개의 회원 출판사와 학술자료협회 등 10개 출판 관련단체에 도서정가 자정노력 결의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등 도서정가가 과도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협조조치를 취하고 건전 정가제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우리 부에서는 앞으로도 도서정가가 과도하게 인상되는 등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협회·단체와 적극 협조하고 지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요지)

2.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관련

1) 대구지하철 참사 관련, 대구시민들의 분위기 전환과 행사에 대한 참여의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범정부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입장

(답 변)

○ 정부는 대구지하철 참사로 분노와 슬픔에 처한 대구시민들이 조속히 어려움을 극복하고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지난 3월 20일 대구 현지에서 국무총리 주제로 정부지원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문화예술, 체육 등 범정부적 차원의 지원 사업을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대구시민 사기진작 행사로 “슬픔을 딛고 미래를 향하여” 주제 한마음 음악회 공연행사, “U대회 성공기원 조수미 콘서트” 등 문화행사를 5월 중 개최할 예정이며, “대구시민 위로 및 U대회 성공적 개최기원 범국민 달리기대회”를 6월 중 개최할 계획입니다.

(질의요지)

2) 대구 U대회에 세계 각국의 대학인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체육의 프로그램과 한국의 이미지를 홍보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

(답 변)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에 참가하는 전세계 대학생들이 대회기간 동안 우리 전통문화 등의 체험을 통해 한국의 이미지를 각인할 수 있도록 문화행사를 준비하고 이를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 우선 개·폐회식을 우리 전통문화와 대구지역의 특성을 표출하는 행사로 조기 확정하여 준비하고 있으며, 대회기간 동안 선수촌에서는 우리 전통문화 체험과 참여를 할 수 있는 행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3) 이라크전과 북핵 문제 등의 현안으로 인해 북한의 대구 U대회 참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로 보이는데 북한의 대회 참가를 위해 장관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 변)

○ 정부는 부산 아시아경기대회에 이어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에 북한이 참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난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기간 중 북한 체육책임자와 접촉,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북한 참가를 요청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 향후 남북장관급회담 등 당국자 간 회의 시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에 북한이 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의요지)

3.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건립 관련

1) 미군이 헬기장을 이전한다 해도 2005년 8월 이후로 잡고 있어 박물관 개관 예정일인 2005년 6월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장관은 가능하다고 보는지?

(답 변)

○ 2002. 4. 28 한미 고위실사단 회의결과 헬기장을 용산 미군기지 내로 이전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하였습니다.

- 제1후보지: 용산기지 내 미대사관 주택지역 북단(약 500억 원 소요 추산)

※ 헬기장 이전지역의 미대사관 주택은 국방부

소유의 UNC부지로 신축 이전

- 제2후보지: 용산기지 내 커미서리 북단지역 (약 1000억 원 소요)

○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미 간 현재 추진하고 있는 헬기장 이전은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UNC부지 내 미군시설을 용산기지 내로 이전한 후, UNC부지를 국방부에 반환하여 동 부지에 미 대사관 직원숙소를 건립하여 임대해 주고 현 미 대사관 직원주택지에 헬기장을 조성하여 이전하는 것 등입니다.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관 전에 헬기장을 완전히 이전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는 박물관 개관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 UNC 건물 철거와 아파트 건립 관련사업을 병행 실시하여 미대사관 직원숙소 이전 및 헬기장 조성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 주한미군 측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새로운 헬기장 건설 전에 임시 헬기장으로 이전하는 방안 등을 미측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질의요지)

2) 박물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미군 헬기가 하루에 수십 번 씩 이착륙하고 있어 진동으로 인하여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만큼 횡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미군 측과 협의할 의향은 없는지?

(답 변)

○ 헬기 운항에 따라 발생하는 진동이 박물관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박물관 공사가 부실하게 진행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면책임감리단으로 하여금 철저한 공사 지도·감리를 수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 아울러 헬기장을 임시적으로라도 조속히 이전할 수 있도록 주한미군 측과 다각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요지)

3) 국립중앙박물관의 공정을 보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설계변경이나 부실공사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음. 지난해만 해도 446억원의 예산이 이월되는 등으로 공기가 늦춰지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의 비효율적인 운용을 어떻게 시정해 나갈 것인지?

(답 변)

○ 용산 새 박물관 건립공사가 공사 초기에 연약지반 보강에 따른 기초과일 변경과 국회 권고에 의해 전시설계 변경 등으로 공사가 1년 정도 늦어짐에 따라 예산도 이월된 것입니다.

○ 그러나 2002. 4월 새 공정에 따라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물론(2003. 4월 현재 공정률 58%),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공정률의 상승은 물론 예산의 집행도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앞으로 남은 공사에 대해 최선을 다해 우리 역사에 영원히 남을 기념비적인 박물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요지)

4) 앞으로 미확보 유물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현재 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미정리 유물이 4300여 건에 8만여 점이나 된다는데 이러한 유물은 그대로 미정리 상태로 방치할 것인지?

(답 변)

○ 용산 새 국립박물관의 전시에정 유물은 약 1만 2000여 점으로 대부분의 전시대상 유물은 이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다만, 일본실, 동남아시아실 등의 전시유물은 관련 국가의 박물관 등으로부터 대여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 태국 국립박물관과 동남아시아 유물대여 협의를 이미 완료하고 대여대상 목록도 확정하여 7월 중에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일본 유물에 대해서도 대여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중국 유물은 자체 소장유물을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시에 꼭 필요한 유물은 구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미정리 유물에 대해서는 작년(2002년)부터 특별전담반을 편성, 집중 정리하여 현재는 미정리된 유물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유물관리 전담요원을 두어 급증하는 발굴 문화재의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요지)

4. 문예진흥기금 확충 관련

1) 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조성정책을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국고지원정책으로 전환하여 향후 25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하였는데, 문광부의 예산 1% 확보라는 업적을 지켜나가면서 문예진흥기금 부족분 연간 500억 원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답 변)

○ 우리 부는 지속적인 문화예술 재정수요 증대와 시중금리 하락 추세를 감안, 조성된 문예진흥기금의 이자수입을 문화예술계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는 현 문예진흥기금 조성정책을 수정하여 앞으로는 문예진흥기금을 추가로 조성하지 않고 기존의 기금 운용 수익금으로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는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 국고를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 따라서 문예진흥기금사업비 부족예상액 2500억 원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연차적으로 국고에서 지원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문예진흥기금 모금 폐지로 인해 줄어든 문화예술 진흥 재원에 대한 보전 차원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요지)

2) 청소년 문화예술 사업과 청소년 보호 및 일탈 청소년 재활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에 청소년 육성기금을 운용 외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지, 그리고 가용예산은 또 어디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지?

(답 변)

○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기본법 제66조 및 동시행령 제73조에 의거 청소년 육성 사업에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청소년 보호 및 일탈 청소년 재활프로그램의 활성화 사업에 청소년육성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 가용예산은 청소년육성기금 지원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질의요지)

3)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 기금을 이용하여 순수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무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답 변)

○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그동안 선진국에 비해 현저하게 부족한 민간부문 관광인프라 확충과 국내 관광사업체 경쟁력 제고 및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사업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2003년도에는 민간부문 관광시설 확충 등 용자사업 2150억 원,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사업 등에 201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설치목적은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관광수지 적자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예술

을 관광상품화하여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지원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요지)

4) 문광부는 향후 5년간 사업비 부족액 2500억 원의 예산확보만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후의 문화예술 활성화와 국민들의 문화향수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예술정책과 예산확보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지금부터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

(답 변)

○ 우리 부는 문예진흥기금 모금 폐지에 대한 대책으로 국고지원 이외에도 안정적, 지속적 재원 마련을 위해 경륜·경정 수익금의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배분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상임위 계류 중인 경륜·경정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체육, 청소년계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국가재정 여건상 국고지원을 안정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므로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수익금 배분이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 또한 경륜·경정법의 개정과 함께 현재 의원발의 및 정부발의로 각각 추진되고 있는 통합복권법(가칭)의 제정 시 통합복권 사업 수익금에 대한 사용처로 문화예술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아울러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의요지)

5) 장기적인 차원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륜·경정법을 개정하여 그 수익금의 일부를 기금 조성에 활용하자는 논의도 우리 위원회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

(답 변)

○ 문예진흥기금 모금 폐지와 지속적인 문화예술 수요증대를 감안, 기본적으로 경륜·경정 수익금으로 문화예술 진흥분야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지 않습니다.

○ 다만, 최근 여러 가지 상황으로 경륜·경정 매출액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고객들이 환급률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 국고지원 축소로 체육 및 청소년기금의 지출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주 5일제 근무 확산 등으로 생활체육 및 청소년 활동분야 지원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점과 기존 배분비율 재조정

에 체육·청소년계가 반발할 우려가 있는 점 등도 감안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와 함께 국무총리실에서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로또 통합복권법상의 복권수익금 수혜대상에 문화예술분야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경우, 제정법인 만큼 경륜·경정법 개정 시보다 체육·청소년계의 반발 우려가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경륜·경정법개정안과 통합복권법제정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질의요지)

5. 국가정책을 민간자율기구에 맡긴다는 명분하에 문화관광부에 각종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은 재고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답변

(답 변)

□ 지역별 문예진흥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 지역문예진흥위원회 구성은 우선 우리 부에 설치 예정인 문화행정혁신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문화예술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이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여건과 특성 및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 구성의 중요도, 시급성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설립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 게임·음반·애니메이션 등 분야의 위원회 제로 단계적 전환에 대하여

○ 문화산업 관련 민간위원회 구성과 권한 이양은 아직 명확히 결정된 것이 없으며, 향후 장단점을 철저히 분석하여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할 것입니다.

○ 현재의 정책시스템을 보완하든 민간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든 궁극적인 목적은 문화산업 경쟁력 제고에 있으므로 투명한 지원절차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 할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 문화행정혁신위원회에 대하여

○ 동 위원회는 자율, 참여, 분권의 3대 가치를 문화예술 현장에 정착시킬 수 있는 문화행정 혁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설치된 한시적 위원회이며, 민·관합동의 실무형 위원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질의요지)

6.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에도 북한의 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장관의 견해

(답 변)

○ 질의 2의 3)답변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元昌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질의요지)

1. 앞으로 홍보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정보공개 인터넷 활용은 정보격차를 심각하게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견해와 브리핑제는 정보통제의 역효과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답 변)

○ 앞으로 우리 부는 개방·공평·정보공개의 원칙에 입각하여 신속 과감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취재에 응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가 최대한 충족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홍보업무를 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정보공개는 인터넷을 통해서만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정보를 기자에게도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인터넷의 접속이 어려운 시민들도 언론 보도 등을 통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브리핑은 장·차관 또는 담당 실·국장이 직접 하도록 함으로써 내실 있는 브리핑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브리핑 이외에도 개별 인터뷰 등의 추가적인 심층취재를 통하여 양질의 기사를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요지)

2. 전국체전 참가 해외동포 선수단에 대한 지원금이 170만 원으로 미흡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

(답 변)

○ 전국체전에는 16개 시·도 및 13개 해외지부(약300명)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제84회 대회는 전라북도 일원에서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 동안 개최될 예정입니다.

○ 전국체전 개최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신규 시설 확충 및 대회운영비 50%를 지원하고 있으나, 선수단에 대한 항공료, 숙박비, 체재비 등 참가경비는 각 시·도 및 해외지부에서 자체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금년 전북 전국체전의 경우 수영장 등 시설비 192억 원과 개·폐회식 등 대회 개최운영비 35억 원, 그리고 16개 시·도 및 13개 해외지부 행정경비로 4300만 원(1개 시·도 152만 원 / 1

개 해외지부 145만 원)의 예산밖에 확보되지 못하여 충분한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기획예산처 등 예산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요지)

3. 농어촌지역의 노령화 현상에 따른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의 중요성과 농어촌지역 청소년에 대한 지원대책

(답 변)

○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은 지난 1994년 1월 청소년육성기금과 마사회 특별적립금을 재원으로 설립된 재단법인(현 기금규모 290억 원)으로 농어민 자녀 중 대학생과 농어업계 고등학생을 위한 장학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어촌 청소년 및 지도자의 선진국 영농 연수와 문예행사 등 부대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우리 부에서는 지속적인 기금 확충을 통하여 농어촌 청소년 장학사업을 확대하고 농어촌 지역의 청소년 문화공간 및 청소년 공부방 확충, 찾아가는 청소년 수련마을·어울마당 등 소외지역에 대한 프로그램 등을 통해 농어촌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질의요지)

4. KBS사장 선임 관련 진행상황

(답 변)

○ 방송법상 KBS 사장은 KBS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제50조 제2항), KBS 이사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제46조 제3항)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는 KBS 사장 선임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允盛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질의요지)

1. 노문모·조아세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재정 지원이 있는지?

(답 변)

○ 노문모·조아세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표현하는 여러 시민단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며, 노문모·조아세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은 없습니다.

(질의요지)

2. 스크린쿼터에 대한 견해와 향후 WTO 문화 개방 관련계획

(답 변)

○ 스크린쿼터는 미국 영화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80%가 넘는 영화시장의 독점 상황에서 한 나라의 문화정체성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단순히 경제적인 논리를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스크린쿼터제도와 관련해 정부는 국내 영상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공정경쟁을 위해 앞으로도 현행 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습니다.

○ 향후 외국과의 협상과정에서도 정부는 두 차례에 걸친 국회의 스크린쿼터 현행유지 결의를 존중하고 영화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으며, 우리 영화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진흥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와 관련해서 WTOODA 협상에서도 시청각 분야는 문화다양성 및 문화정체성을 위한 문화적 예외조항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 양허안에 포함하지 아니하였고, 향후에도 이러한 입장을 유지할 것입니다.

(질의요지)

3.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 대한 견해

(답 변)

○ 일본 대중문화 개방은 한일 양국 간 상호신뢰의 바탕위에서 추진(1~3차 개방)하여 왔으나 2001.4월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책의 일환으로 일본 대중문화 추가개방 중단조치(2001.7.12발표)를 단행하게 된 것이며 아울러 일본 정부가 교과서 문제와 관련하여 성의있는 조치가 있을 때까지 추가개방을 검토하지 않을 것임을 전제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2002년 한일월드컵대회의 성공개최를 계기로 양 국민 간 우호·신뢰증진 등 여건변화와 일본 대중문화 1차~3차 개방결과의 긍정적 평가 등으로 추가개방 추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추가개방 문제는 국민정서, 국내 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시장보호 문제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해 나가되, 동북아 중심으로의 도약을 위한 국가정책 방향 등을 감안,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아울러 일본 대중문화 추가개방과 관련하여 우리 측이 전제요건으로 제기하여 온 과거사 문제는 양국관계의 현안과제인 만큼 외교경로 등을 통하여 일본 측의 성의있는 조치와 이행을 지속

적으로 촉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의요지)

4. 문화정책을 민간에 맡기겠다고 하면서 방송 정책은 정부가 관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

(답 변)

○ 문화관광부는 방송의 디지털화 및 방송·통신 융합에 따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콘텐츠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산업지원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향후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칭)방송통신위원회 설립과 관련된 하나의 대안으로

- 방송의 독립성과 직결되는 인허가·규제·심의 등의 방송정책과
- 문화적·산업적 측면의 영상콘텐츠 진흥정책을 분리함으로써

○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운 산업지원정책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대통령 업무보고 시에 밝힌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요지)

5. 대통령께서 ‘언론은 통제되지 않은 권력’이라고 말씀한 의미, ‘즉별언론’이라는 표현에 대한 견해, 그리고 최근 상황은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답 변)

○ 대통령의 말씀은 국민 전체의 여론을 형성해 나감에 있어 독자나 시청자로부터 보도의 사실 여부나 공정성 등에 대한 검증은 보다 충분히 받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 즉별언론이라는 표현이 법률상 용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소유구조가 소수 친족들에 편중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우리 부를 비롯해 정부 전반의 홍보업무 운영방안은 정부와 언론 간의 관계를 정상화 하려는 것일 뿐, 이를 통하여 어떠한 반사이익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의요지)

6. “싸울 맛이 난다.”고 했는데 그 의미와 상당한 비판, 공격에 고통을 받았다고 했는데 어떤 것인지, 공보관이 잘못된 언론관을 주입한 것이 아닌지?

(답 변)

○ “싸울 맛이 난다.”고 한 것이 아니라 공격과 비판을 받으니 장관으로서의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실감이 나며,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욕이 생긴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습니다.

○ 지난 3월 14일 발표한 홍보업무 운영방안과 관련하여, 브리핑을 할 때 관련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홍보업무 운영방안의 내용이 많이 잘못 알려졌습니다.

○ 홍보업무 운영방안을 준비하면서 공보관 및 공보관실 직원들과 여러 차례의 토론을 거쳤습니다만, 공보관이 잘못된 언론관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질의요지)

1. 저작권 위탁관리업 관련

1)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안은 장관 결재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닌가? 장관은 보고 받을 당시 어떠한 입장을 취했는지?

(답 변)

○ 문화관광부 위임전결규정에 따르면 저작권 위탁관리업 허가는 국장 전결 사항입니다. 따라서 장관이 직접 허가 문서에 결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동 단체에 대한 위탁관리 허가 전에 장관에게 별도로 보고 되었습니다.

○ 장관은 급속히 성장하는 온라인 음악산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위탁관리단체의 설립이 시급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여론조사 등 추진과정상의 의견수렴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허가에 대하여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 아시다시피 90년대 후반 이후 온라인을 통한 음악과일의 유통이 급속도로 확산되었으나, 음반제작자 권리 처리 창구가 존재하지 않아 불법사용이 계속되고 결과적으로 음악산업의 침체로 이어지던 상황에서 위탁관리단체 설립의 필요성이 업계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나왔고 대표단체의 설립 및 위탁관리업무규정 제정 등 2년 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허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 업계 내부에서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음원의 신탁에 대해 다소 거부감을 가지고 있거나 온라인 음악산업에 대한 각기 다른 이해관계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과도기적인 현상이라 판단되며 중장기적으로 온라인 음악산업의 정착에 음원 신탁관리의 활성화가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2) 신탁 허가는 온라인 음악서비스 업체의 생명력을 좌우하는 조치라 생각하는데, 특정단체에 집중적인 권한을 부여했던 사안이 아닌지?

(답 변)

○ 온라인 음악산업의 정상화를 위해 음원의 신탁관리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서 권리자들이 온라인상에서의 음악 유통에 대해 효과적이고 기술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 서비스업체들 입장에서도 합리적인 가격에 쉽게 권리 처리를 하고 합법적으로 음악을 이용할 수 있어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 이렇듯 집중관리제도는 개별 저작권자 스스로 권리를 관리하는 경우 막대한 거래비용으로 저작물 이용이 불가능해지고 권리보호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저작권자들의 자발성을 유지하면서도 그 자발성을 적절하게 제한하는 효과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에서 유엔 산하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도 이를 적극 권장하고 있고 미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다수의 국가에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저작물별로 1개의 단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역사적으로도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그동안 복수로 운영되어 오다가 업무 통합 등을 통해 이를 단일화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것은 규모의 경제논리와 특히 다량의 저작물이 다양하게 이용되는 현 상황에서는 저작권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기 때문이라 판단됩니다.

○ 집중관리단체가 독점적으로 운영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문화관광부는 저작권법상 정부의 지도·감독권을 활용하여 저작권자의 권익보호와 저작물의 원활하고도 공정한 이용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음원제작자협회는 음반업계의 대표적인 두 단체인 (사)한국음반산업협회와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가 음반제작자의 신탁관리를 위하여 합의하에 설립한 단체입니다. 따라서 다른 임의단체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음원제작자협회에 신탁관리를 허가한 현 시점에서는 원칙에 입각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며 음원제작자협회를 통한 신탁

관리가 이른 시일 안에 정상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음악산업의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많은 노력 끝에 이것이 충분히 성공하지 못한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할 것이고 그 과도기적인 방안의 하나로 복수단체의 허가도 검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요지)

3) 만약 현행대로 추진된다면 음제협에 가입되지 않은 단체와 스트리밍업체들의 경제적 손실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해결책은 있는지?

(답 변)

○ 음제협에 가입하지 않은 음반사들은 직접 권리행사를 하거나 대리중개업체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협회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여 이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이 초래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탁을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경우 거래비용이 상당히 하여 저작물 이용이 제한되고 권리보호도 충분하지 못한 현재의 여건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신탁관리단체의 허가로 인하여 이들의 지위가 악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탁여부 등 권리행사의 방법은 각 음반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사항이긴 하지만 급변하는 온라인 환경에서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고 전체 음악산업의 활로를 위해 신탁에 대한 음반사들의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봅니다.

○ 스트리밍업체의 경우 온라인 음악산업의 정상화를 위하여 새로 제정된 사용료 기준에 맞추어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능동적으로 추구하지 않고 단순히 기존의 무료이용자 수에 새로 제정된 저작물사용료 기준을 곱하여 사용료 수준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하는 것은 환경의 변화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려는 계산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음악산업의 정상화는 종전에 음악이 커뮤니티 확대를 위해 관심을 끄는 수단으로만 활용되던 것에서 탈피하여 이제는 음악이 상품 자체로 판매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업자들은 합리적인 시장가격(월 2000원~3000원)으로 음악을 제공하면서 적정한 음원 사용료(월 500원)를 지불한다면 불법사용에 따른 침해소송 등에서 벗어나 사업에 전념하면서 오히려 경영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환경변화에의 적응능력이 향후 온라인 음악서비스업체의 판도를 결정하게 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봅니다.

(질의요지)

4) 민간 음원관리 대행업체가 선정되고 이들이 신탁관리수수료를 징수하게 될 경우 위법성은 없는 것인지?

(답 변)

○ 저작권법 제78조에 의거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대리중개업의 경우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99조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신탁관리업을 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민간 음원관리 대행업체의 영업행태가 명확하진 않지만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신탁관리업을 할 경우에는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저작권법상 신탁관리업은 효율성과 공공성을 충족하기 위해 허가제로 운영하면서 이에 대해 정부가 일정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데 음원의 사용료를 정하거나 관리를 하는 데에 외부의 규제를 받지 않기 위해 신탁관리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질의요지)

5) 인터넷 음악사이트의 음원관리를 둘러싸고 문광부로부터 저작인접권 신탁관리를 받은 한국음원제작자협회와의 소위 밥그릇 싸움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해결방안

(답 변)

○ 기본적으로 권리의 관리방법은 권리자들이 선택할 사항이나 음반제작자의 권리에 대한 원활한 신탁관리는 단순히 온라인 음악산업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음악산업이 장기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일부 이해관계의 상충과 오해에 기인한 반대는 음원제작자협회가 업무를 수행해 나가면서 차츰 불식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정부에서도 음원제작자협회가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을 독려하거나 권리자 및 이용자 단체 간의 협의를 주선하는 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 기존의 음원 분야의 음악출판사에 해당하는 대리중개업체들은 본연의 위치에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음원의 이용촉진 등을 통하여 음악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음원제작자협회와도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질의요지)

2. 교육부가 발표한 중등학교에서의 예·체능 교과목의 평가방식 개편 관련, 건전한 청소년 육성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입장, 전인교육을 위해, 특히 예·체능 교육을 강화할 방안을 새롭게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

(답 변)

○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체능계 분야가 청소년의 전인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 교육부에서 발표한 중등학교에서의 예·체능 교과목 평가방식 개선안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지 예·체능에 대한 교육을 포기한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현재 교육부에서 여론수렴 등 다각도의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리 부에서는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서는 예·체능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취지를 살려서 청소년의 예·체능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교육부 등 관련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주 5일 수업제 실시에 따라 증가하게 될 청소년들의 여가활동 수요가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의 기회로 활용되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질의요지)

3. 문예진흥원 출판저작권 거래 관련

1) 현재 진흥원은 발간업무와는 별도로 북한측이 제기하고 있는 조선문학예술출판사의 출판권 계약 거부 발언에 대해 어떠한 입장인지?

(답 변)

○ 통일문학전집 수록 북한 작품에 대한 판권을 가지고 있는 북한의 조선문학예술출판사(사장 윤경남)는 2003년 3월 10일 “해외에서의 문학전집 편찬과 관련하여 중국연변문학월간사 전 사장 장지민에게 본사 판권 권한을 주어 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위임한 바 있으나 현 단계에서 상기 사업의 대리업무 위임이 불필요하다는 견해와 기타의 고려에 따라 장지민에게 2001년 10월 11일과 2002년 8월 28일에 발부하였던 위임장을 무효로 한다.” 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성명의 내용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전집 수록

작품의 판권을 가진 북한의 조선문학예술출판사가 통일문학전집 편찬과 관련하여 중국연변문학월간사 전 사장 장지민에게 판권을 위임하였음을 인정하였고 문예진흥원은 계약업체(대훈서적)를 통해 성명 발표 이전에 장지민으로부터 판권을 확보하였습니다.

○ 그리고 문예진흥원이 계약업체를 통해 확보한 판권에 대하여 전문 변호사의 법률검토 의견에 의하면 전집 수록 작품의 출판권은 적법하게 설정받은 것이며 3월 10일자 성명서는 과거의 양도사실 자체는 인정된 뒤 사후적으로 그 효력을 무효화한다는 것에 불과하고 출판권 설정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이상 특별한 해제사유 없이 이를 일방적으로 무효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조선문학예술출판사의 무효성명만으로 출판권이 소멸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문예진흥원은 통일문학전집 발간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2) 북측으로부터 거래금 1억 5000만 원이 수령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지, 계약금 송금의 경로는 어떻게 이뤄졌는지, 적법성 있는 절차였는지?

(답 변)

○ 문예진흥원은 2002년 12월 30일 국내의 북한 출판물 전문업체인 대훈서적(사장 김주팔)과 통일문학전집 수록 북한 작품의 출판권 확보계약을 체결(계약금 1억 8000만 원)하여 통일문학전집 수록 북한 작품의 출판권 확보를 추진하였습니다.

○ 대훈서적은 전집 수록 북한 작품의 저작권자인 북한의 조선문학예술출판사(사장 윤경남)로부터 판권을 위임받은(2002.8.28과 2003.2.10 위임장) 중국연변문학월간사 명예사장 장지민과 계약에 따라 판권을 위임받았으며 대훈서적은 다시 판권을 문예진흥원에 재위임하여 문예진흥원은 대훈서적에게 총 1억 8000만 원의 계약금을 지불하였습니다. (2003.1.13, 선금 1800만 원, 3.17 잔금 1억 6200만 원 지급)

○ 문예진흥원의 계약업체인 대훈서적(대표 김주팔)과 위 장지민은 별도의 상호 계약에 따라 대훈서적이 장지민에게 일정 금액(1억 5000만 원)을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훈서적에 의하면 작년 12월 계약금 중 선금으로 750만 원을 장지민에게 지불하였으며 계약완료 후 국내의

장지민 대리인을 통해 잔금 1억 4250만 원을 지급(장지민이 대훈서적에게 발급한 계약잔금 수령영수증은 2003.3.9일자임) 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북측 대리인인 장지민이 계약금을 수령하므로써 계약관계는 완료되었습니다.

(질의요지)

3) 현재 장지민은 중국 민간 중개업자로서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신분인 것으로 아는데 사실인지, 대훈서적으로부터 장지민을 통해 계약금이 북측에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통보 받았는지?

(답 변)

○ 장지민은 중국 국적으로서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신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 12월에도 한국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 대훈서적 김주팔 사장에 의하면 장지민이 북측에의 계약금 전달 여부는 북측 대리인으로서 장지민이 처리할 사항이며, 현재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북측(조선문학예술출판사)과 접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질의요지)

4) 북한 조선문학예술출판사의 원전 수습을 맡은 만수기획은 중국소재 대리업체를 통해 문학작품을 반입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전 수습 경위, 원전 수습 절차와 수습행위에 위법성이 없었는지?

(답 변)

○ 문예진흥원은 통일문학전집 수록 북한 작품의 원전 수습을 위하여 북측과의 문화사업 교류경험이 있는 업체 2곳으로부터 견적을 받아 견적액을 적게 제출한 만수기획(대표 이영춘 외 1명)과 2001년 10월 30일 계약(계약금 총액 3800만 원)을 체결하였습니다.

○ 만수기획은 중국의 대리업체를 통해 북한 작품 원전을 수습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만수기획은 문예진흥원과의 계약에 따라 2002년 3월 북한 작품 원전 수습을 완료하였습니다.

○ 그리고 북한 작품의 원전 수습 절차는 문예진흥원과 만수기획 간의 계약에 따라 만수기획에 일임하여 추진하였으며 만수기획은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5) 문예진흥기금으로 북한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확실한 사실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중개상에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것은 사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답 변)

○ 통일문학전집에 수록되는 북한 작품의 출판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록 작품의 정당한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통일부의 의견에 따라 북한 당국인 출판지도국의 확인을 거쳤으며 또한, 북측 저작권자가 대리인에게 위임한 내용이 유효한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북한의 중국심양총영사관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확실한 사실검증 절차를 거쳐 추진하였습니다.

○ 향후 출판물 등 북한 저작물의 이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저작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남북 당국 간의 협의를 통해 공식적인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요지)

4. 월드컵대회 잉여금 배분 관련

1) 월드컵조직위 집행위원회가 잉여금 배분을 6월 이전에 확정 짓는 것이 가능한지, 잉여금 수령이 가능한 구체적인 지자체들에 대한 장기적인 인프라 조성을 위한 타당성 검토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답 변)

○ 월드컵조직위원회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월드컵 잉여금은 법인 재산이므로 정관이나 민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관 제39조(해산)에 의거 월드컵축구대회 종료 후 1년 이내(2003.6월) 해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 제28조에 의거 잉여금의 기본재산 처분·증여는 집행위원회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여야 하므로 6월 말 이전에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절차에 따라 승인을 요청해 오면 처리가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 월드컵 잉여금의 축구인프라 조성사업과 관련한 장기적인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는 작년 월드컵대회 종료 이후 지금까지 각계각층의 교수, 전문가, 축구협회 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잉여금 자체가 월드컵축구대회가 개최됨으로써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축구 분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아 조직위 해산 전에 배분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월드컵 잉여금을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으로 편입하여 집행할 경우에는 정관에 명시된 당초의 취지가 집행과정에서 왜곡될 우려가 있으며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월드컵 개최도시, 유소년·여자축구 발전 분야, 소외계층을 위한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월드컵 자료관 및 축구인프라 시설 구축 등에 적의 배분할 계획이며 축구인프라 구축사업은 16개 지자체에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개방형 축구종합훈련장 4개소와 지역별 인조잔디구장 12개소를 정하여 시·도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면밀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2) 88올림픽 96개 업체 부도, 월드컵대회 2000여개 업체 부도, 부산아시안게임 48개 부도를 맞는 등 반복적인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데 알고 있는지, 월드컵 잉여금으로 월드컵 휘장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체의 피해(186억 원 상당, 50% 수준 요구)를 구제할 방법은 없는지?

(답 변)

○ 올림픽, 월드컵대회 및 부산아시안게임의 휘장업체들의 부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월드컵대회에서 상품화사업권자로 참여한 코오롱 TNS월드의 부도로 인한 OEM업체들의 부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월드컵대회는 지난 88년 서울올림픽이나 부산아시안게임과는 달리 대회조직위원회가 휘장상품화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FIFA 및 FIFA Marketing AG가 권한을 가지고 직접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 월드컵대회를 불과 몇 개월 앞둔 2001년 하반기에 국내에서 월드컵 휘장사업을 추진하던 홍콩계의 CPP Korea는 다양한 상품개발 부진 및 높은 가격 등으로 인해 사업성고가 극히 미흡하였기 때문에 그 당시 국회·언론·사회단체 등에서 휘장사업권자를 국내업체로 교체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으며 이에 월드컵조직위는 국내 몇몇 대형유통업체의 참여의사를 타진하였고, 모두 사업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나 코오롱 TNS에서 사업추진 의향을 FIFA에 밝히면서 코오롱 TNS월드로 교체되어 2002.1.29일부터 영업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 계약기간은 짧고 의욕적으로 추진하였으나

당시 경제 불황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코오롱 TNS월드는 OEM업체로부터 주문받은 많은 월드컵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고 부도를 냄으로써 OEM업체들은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피해는 코오롱 TNS월스와 OEM업체 당사자 상호간 직접 계약에 의한 상거래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월드컵조직위원회나 정부에서 직접 손해를 보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그러나 월드컵의 성공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는 월드컵 포상 및 기장 부상품 등으로 회장상품 15억 원 상당을 구입·지원하였고, FIFA와 협의하여 회장상품의 판매기한이 2002.12월 말로 되어 있는 것을 소진될 때까지로 변경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품의 구입 이외 조직위 등에서 피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면 우리 부에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질의요지)

5. 문예진흥기금 관련

1) 문예진흥사업비 조달정책은 재검토가 불가피하여 청소년육성기금과 관광개발진흥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라 했음. 이는 역으로 청소년과 관광 관련 예산이 축소될 수도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한 보완책

(답 변)

○ 청소년육성기금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활용하여 문화예술계를 지원하겠다는 우리 부 계획은 동 기금들의 가능한 재원 범위 내에서 기존의 청소년 수련활동 사업(젊은 신진 예술가 지원 및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 사업)과 관광자원 개발사업(지역 문화자원 보존·개발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사업 등) 가운데 문화예술 진흥의 효과를 갖는 사업에 대한 예산배정을 높여 지원하는 것으로 청소년·관광 관련 예산 축소는 무관합니다.

(질의요지)

2) 문예진흥기금사업비를 향후 5년간 국고에서 연 500억 원씩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답 변)

○ 2003년 말 문예진흥기금 모금 폐지 및 시중 금리 하락으로 부족이 예상되는 문예진흥기금 지원 사업비(2004~2008, 2500억 원)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관련부처인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통해 국고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질의요지)

3) 경륜·경정법 개정을 통한 문예진흥사업 지원 관련, 사행산업의 힘을 빌어 순수 예술분야를 지원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다른 해법이 있는지?

(답 변)

○ 영국의 경우 사행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 복권사업(national lottery)의 수익금을 예술, 교육, 건강, 스포츠 등의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경륜·경정은 사행산업이라기 보다는 문화생활 확산이라는 국민의 건전한 레저산업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으며 소득증대, 주 5일제 등으로 문화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서 부족한 문예진흥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경륜·경정사업 수익금의 일부를 문예진흥사업에 배분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문예진흥기금 재원 확보는 모금 폐지가 확정된 상태에서 국고 지원 및 경륜·경정 수익금 등 공익자금의 배분참여 이외에 적절한 대안을 찾기는 어려운 형편임을 말씀드립니다.

(질의요지)

6. 외주제작 전문채널 설립 관련

1) 방송정책권에 대한 기본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가칭)방송통신위원회조차 설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위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답 변)

○ 현행 방송법 제92조제2항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은 방송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우리 부는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방송영상산업 진흥정책을 일관되게 수행해 왔으며 방송·통신 융합에 따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콘텐츠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문화관광부의 방송영상콘텐츠 진흥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것입니다.

○ 외주전문채널 설립 추진 등 우리 부의 보고 내용이 방송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향후 설립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부, 방송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의요지)

2) 독립제작사의 지상파방송 진출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데에 대한 견해

3) 장기적으로 독립제작사의 행동범위를 제약하고 지상파방송의 방송권 장악을 합리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은 아닌지?

(답 변)

○ 먼저 우리 부가 검토하고자 하는 외주전문채널은 지상파채널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며 케이블TV 또는 위성방송의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도 포함하여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우리 부가 방송영상진흥정책의 일환으로 검토하고 있는 외주전문채널의 설립 방향은 제작·송출·편성의 수직적 통합 구조가 아니라 송출·편성 기능만 수행하는 방송형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외주전문채널이 성공적으로 도입될 경우에는 국내 방송영상시장의 새로운 수요시장을 창출함으로써 독립제작사·방송프로그램채널사용사업자(PP)의 제작 활성화와 다단계유통(Window-Effect)이 가능해져 외주제작물의 수익모델이 형성되어 결국에는 지상파 방송사의 인하우스(In House Production) 구조가 완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지상파방송 장악을 합리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의요지)

4) 방송위로부터 방송정책권을 이관하기 위한 시작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문화관광부의 입장

(답 변)

○ 우리 부는 외주전문채널은 우수 영상콘텐츠 제작·보급 확대를 위한 체계적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써 중요한 수단일 것으로 판단되어 설립을 검토 중이며 외주전문채널의 설립을 위해 외국의 성공적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설립안을 마련하고 정보통신부, 방송위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추진해 나갈 계획이므로 타기관의 업무를 이관받기 위한 의도는 전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의요지)

7. 영상콘텐츠산업 진흥정책 분리 관련

1) 문화관광부가 콘텐츠산업 지원 기능을 중심으로 한 관련 정책 권한 일반을 일방적으로 행사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2) 문광부가 (가칭)방송통신위원회를 단순한 인허가·규제·심의 기능 중심의 규제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방송위원회의 위상과 권능을 무시하고 문광부(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3) 문광부의 영상진흥정책 분리는 (가칭)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에서 부처가 협의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지?

(답 변)

○ 현행 방송법 제92조제2항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은 방송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우리 부는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방송영상산업 진흥정책을 수행해 왔으며 방송·통신 융합에 따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콘텐츠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문화관광부의 방송영상콘텐츠 진흥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것입니다.

○ 우리 부의 보고는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논의 시 콘텐츠 진흥이 중시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며 우리 부가 독단적으로 어떤 사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아직까지 방송통신위 설립에 관한 공식적 논의는 없었습니다만, 2기 방송위가 구성되면 학계, 업계, 관련기관 등이 모두 참여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 부는 합리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참고로 주요 선진국에서는 과도한 권한 집중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을 우려하여 독립적인 규제위원회가 지원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프랑스

- CSA(시청각최고위원회): 방송 분야의 각종 심의·규제를 담당
- CNC(국립영화센터): 영화, 방송프로그램 등 시청각 분야 지원을 담당

(李協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질의요지)

1. 순수예술에 대한 장관의 견해

(답 변)

○ 문화창조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정부는 디지털 문화환경에

적합한 독창적이고 질 높은 예술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창작되어 문화공간 등 매개자를 통해 많은 국민이 문화를 향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정책의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 앞으로 참여정부는 자율, 참여, 분권을 바탕으로 하여 예술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 현장 예술인들이 주도하도록 하여 민간의 자율성을 강화(예: 문예진흥원 → 문화예술진흥위원회)하며

- 금년도 말로 예정된 문예진흥기금 모금 중단과 관련하여 국고지원을 획기적으로 증액하고 타 기금의 문화예술분야 투자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지원방식도 선택과 집중, 평가에 의한 지원 방식으로 개선하며 학교에서는 물론 각급 문화예술기관에서의 예술교육을 강화하여 국민의 문화적 감수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극장, 미술관 등 각종 문화공간을 새롭게 조성하고 기존 문화공간 운영의 효율성도 도모하는 한편, 문화예술기관에 종사하는 전문인력도 체계적으로 양성할 예정입니다.

○ 이와 함께 예술인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복지제도 추진 및 문화생활비에 대한 소득공제 방안 강구 등 제도적 개선책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질의요지)

2. 스크린쿼터 때문에 한미투자협정이 어려움. 스크린쿼터에 대한 입장

(답 변)

○ 스크린쿼터는 미국 영화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80%가 넘는 영화시장의 독점 상황에서 한 나라의 문화정체성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단순히 경제적인 논리를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스크린쿼터 제도와 관련해, 정부는 국내 영상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공정경쟁을 위해 앞으로도 현행 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습니다.

○ 향후 외국과의 협상과정에서도 정부는 두 차례에 걸친 국회의 스크린쿼터 현행유지 결의를 존중하고 영화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으며 우리 영화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진흥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와 관련해서 WTODDA 협상에서도 시청각 분야는 문화다양성 및 문화정체성을 위한 문화적 예외조항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 양

허안에 포함하지 아니하였고 향후에도 이러한 입장을 유지할 것입니다.

(질의요지)

3. 홍보 방식의 변경이 정권의 핵심에서 시작한 것이 아닌지, 그리고 언론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서 상식과 원칙에 입각해서 작성했는지?

(답 변)

○ 홍보업무 운영방안은 준비과정에서 별도로 청와대 등과 협의한 사실은 없으며 원칙과 상식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대언론관계를 정립하는 한편, 인터넷의 발전 등 새로운 언론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鄭東采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질의요지)

1. 문화관광부 인사 적체가 매우 심각한데, 적체 해소방안

(답 변)

○ 우리 부는 잘 아시다시피 지난 정부에서의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감소와 2002월드컵축구대회, 2002부산아시아대회 및 한국방문의 해 등 주요 국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파견된 많은 인력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일시에 집중적으로 복귀하므로써 초과인원이 발생하였습니다(5급 이상 33명 / 2003. 4.15 현재).

※ 정원감축(1998~1999): 189명/파견복귀(2002~2003): 54명

○ 이로 인한 승진적체와 직원들의 사기가 당면한 현안 과제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행정 수요에 따른 다양한 인력증원 방안을 검토하고 내부적으로는 명예퇴직 유도 등을 통한 인사적체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초과인력 현황

직렬별	계	1급	국장급		과장급		4·5급	5급	
			2·3급	3급	3·4급	4급			
행정직	정 원	237	4	14	1	13	40	39	126
	현 원	270	3	15(1)	2	13(1)	45(2)	44	148
	과부족	+33	-1	+1	+1	-	+5	+5	+22

※ (): 대통령비서실 복귀예정인원

(鄭柄國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질의요지)

1. 신임 문화관광부장관의 문화정책 관련

1) 문화예술분야에는 돈이 될 수 있는 분야도 있고 돈이 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예술도 있어 문화예술 모두가 돈이 되게 할 수는 없지만 문화예술에는 반드시 직접 지원과 육성이 필요한 분야도 많이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

(답 변)

○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하면서 돈이 되는 분야는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거나 투자 여건을 조성하는 등 경쟁의 틀을 만들어 줌으로써 민간자율에 의한 발전을 촉진해 나가도록 간접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돈이 되지 않는 분야는 장기적으로는 돈이 되는 문화시장 환경을 만들어 주고 단기적으로는 시장경제 원리에만 맡길 수 없기 때문에 공익적인 차원에서 직접 지원함으로써 문화적으로 균형발전을 이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근래 대중문화의 급속한 팽창과 문화산업의 상대적 증시로 인해 그 바탕이 되는 순수예술분야는 소외된 측면이 없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순수예술은 시민사회의 창조성과 자율성의 원천이자 문화산업의 근간으로서 그 가치와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어 이를 육성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예술창작 스튜디오 건립, 문예지 구입 등 창작활동 지원, 공연예술의 뿌리인 소극장 및 실험예술활동 지원 강화, 기존의 문화시설을 활용한 예술교육 강화, 예술기획·마케팅·무대기술분야의 부족한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의요지)

2) 문화예술진흥원을 민간 주도의 문화예술진흥위원회로 하는 문제 관련

□ 문예진흥원을 일괄적으로 위원회 제도로 전환시킬 경우 문학, 미술, 음악, 연극, 무용 등 분야의 특수성이 도외시될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

(답 변)

○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위원회제 전환 시 문화예술의 각 장르 간 대표성, 문화예술 창작·공급자 및 소비자 간 갈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수 있음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장르 간 대표성 확보 방안 및 각 장르 간 갈등 조정장치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의요지)

□ 위원회로 전환 시 각 분야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분야별로 위원회를 구성할지, 아니면 총체적으로 시민단체의 주장에 따른 구성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

(답 변)

○ 문예진흥원의 위원회제로의 전환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 예컨대 위원회를 분야별 또는 기능별로 구성할 것인지 여부 등은 현재 그 장단점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문화예술계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문화행정혁신위원회의 논의 등을 거쳐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질의요지)

□ 만약 분야별 위원회가 아니라 통일민족, 문화기반시설 등의 위원회로 구성될 경우, 이는 문화관광부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으로 문화관광부와

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
(답 변)

○ 위원회의 문화관광부와의 역할 정립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구성원칙이나 역할 등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이므로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상호역할과 업무영역에 문제가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다만 어느 경우이든 지켜져야 할 원칙은 위원회에 대해 권한을 신장시킨 범위만큼 책임범위도 넓어져야 한다는 것이며 위원회가 문화관광부의 역할을 전면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회 운영에 대한 종국적 책임은 국가(문화관광부)가 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향후 위원회 전환 검토과정에서 위원회와 문화관광부의 역할은 충분히 검토되어질 것이며 위원회가 현장예술인 중심의 민간자율기구에 걸맞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요지)

□ 문예진흥원의 예산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위원회로 개편될 경우 위원에 대한 임명권을 국회가 가지는 것이 정부 개입을 줄일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

(답 변)

○ 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임명 등의 문제는 우리 부에 설치된 문화행정혁신위원회에서의 충분한 논의 및 문화예술계를 비롯한 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며 위원회가 최대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민간자율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요지)

3) 게임·음반·애니메이션 관련 기관의 위원회 제도 개편 관련,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부분을 해결하려는 노력도 없이 자율성이란 미명하에 모두를 민간에 넘기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보여지는데 장관의 견해

(답 변)

○ 문화산업 관련 민간위원회 구성과 권한 이양은 아직 명확히 결정된 것이 없으며 향후 장단점을 철저히 분석하여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할 것입니다.

○ 현재의 정책시스템을 보완하든 민간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든 궁극적인 목적은 문화산업 경쟁력 제고에 있으므로 투명한 지원절차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합

리적인 정책추진 체계를 마련 할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정부에서는 위원회 제도의 도입 여부와는 관계없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인력양성, 유통구조 개선 등 문화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특히 지역발전과 연계한 지역특화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적극 개발·지원할 계획입니다.

(질의요지)

2. 문화·역사마을 만들기 사업 진행을 살펴보면 지방문화 육성이 말로만 진행되고 있고 상당한 푸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

(답 변)

○ 문화·역사마을 만들기 사업은 21세기 새로운 문화 패러다임 창출을 위해 2002년도 하반기부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이 사업의 기본취지는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로 우리 문화 역사의 독창성과 다양성을 보존·복원 및 재창조하는 것으로 관주도가 아닌 지역 주민 스스로가 자기의 문화 역사에 대한 재인식을 통해 새로운 문화 역사를 창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자는 것입니다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각종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부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2002년도 선정사업의 부족예산 및 2003년도 16개 선정사업 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올해 국고 10억 원 외에 마사회 특별적립금(27억 원 신청) 등 관련 자금에서 재원을 확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문화·역사마을 만들기 사업은 21세기 인간중심의 문화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문화환경 복원·조성 및 활용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앞으로 우리 부는 동 사업을 통해서 살아 숨쉬는 문화, 생활속의 문화, 인간중심의 문화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의요지)

3. 음악산업진흥 5개년 계획 관련

1) 뮤직테마파크조성사업의 노래박물관 건립과 광명시 첨단음악산업 조성 지원사업의 음악박물관 건립이 중복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은데 장관의 견해

(답 변)

○ 현재 국내에는 국악 관련 박물관은 있으나 대중음악 관련 박물관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재) 노래의섬에서 남이섬 전체를 뮤직테마파크로 조성하고 테마파크의 주요 시설로 노래박물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광명시에서 검토 추진 중인 광명첨단음악산업단지 조성은 문화관광부에서 동 단지를 문화산업단지로 지정할 경우 광명시의 재원부담 비율에 따라 국고를 지원하게 되며 사업 계획안에 음악박물관 건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물관은 문화시설 중 가장 기본적인 문화인프라이며, 정부에서는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립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노래박물관과 음악박물관은 건립 주체, 건립 목적, 이용 대상, 운영 방향 등이 상이하며, 음악 관련 박물관이 전국에 다양하게 조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요지)

2) 음악산업진흥 5개년 계획 수립 시 현장업계와 얼마나 대화를 나누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였는지?

(답 변)

○ 매체발전 등으로 인해 극도로 침체되고 있는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해 2002.7월부터 음악산업진흥 5개년 계획 수립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현장업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업계 전문가 회의를 9차에 걸쳐 개최하여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민간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붙임 시책수립 진행경과 참조).

(질의요지)

3) 음악산업진흥 5개년 계획의 우선순위를 잘 선정하고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실행가능한 음악산업 진흥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

(답 변)

○ 음악산업진흥 5개년 계획 수립 시 업계 및 해당 사업추진 주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우선순위는 동 계획상의 추진과제 순서가 우선순위이며 우선순위 선정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상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은 추진 과정상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음악산업 포럼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음악산업진흥시책 수립 진행경과]

□ 기획 취지 및 목적

○ 국내외 음악산업의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정부 차원의 지원 및 진흥대책 강구

○ 음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문화산업의 핵심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 발전

□ 계획 수립 절차

○ 실무기획팀 구성(게임음반과장 외 6명) → 음악산업진흥위원회 구성(7명)

→ 전문위원(기획·제작 분야 등 8개 분야 46명) 구성 → 실무기획 회의 개최(13차)

→ 전문위원 회의 개최(9차) → 음악산업진흥위원회 개최(1차)

→ 세미나 개최(2차) → 음악단체의 건의 및 시민단체 자문 결과 등 반영

→ 음악산업진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 장관 발표

□ 추진경과

○ 음악산업 진흥시책 수립 추진계획 자체 보고(2002. 6. 11)

- 실무기획팀 구성, 음악산업진흥위원회 구성 및 위촉, 시책 추진과제 선정

○ 음악산업 실무기획팀 회의 개최 1~13차 (2002. 6.19 ~12월 말)

- 계획 수립 일정 및 추진방안, 계획 세부내용 보완 및 협의

○ 음악산업진흥위원회 회의 개최 1차(2002. 6. 28)

- 음악산업진흥위원장 선출, 시책 수립계획 보고 및 협의

○ 음악산업 분야별 전문위원 회의 개최 1~9차(2002. 7. 5 ~8. 30)

- 기획 및 제작 분야 등 8개 분야 세부 추진과제별 개선방안 협의

○ 음악산업 진흥 5개년 계획(안) 세미나 개최 1~2차(2002. 12.2, 12.12)

- 음악산업 분야별 전문위원(1차) 및 음악산업진흥위원회 위원(2차) 세미나 개최

○ 음악 관련단체 및 시민단체 등 의견 수렴 (2003. 1월 중)

-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6개 단체 건의사항, 시민단체(문화연대 이동연) 및 전문가(음악평론가 강 현) 의견 등 반영

○ 음악산업진흥위원회 심의 및 의결(2003. 1. 24)

- 음악산업진흥 5개년 계획 심의 의결
- 붙임: 음악산업진흥위원회 및 전문위원 현황
- ◇ 음악산업진흥위원회 및 전문위원 현황
- 음악산업진흥위원회
 - 위원장: 신대남(일간스포츠 상무)
 - 위원: 방극균(예전미디어대표), 최영호(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산업지원본부장), 서희덕(한국음악산업진흥재단이사장), 엄용섭(한국연예제작자협회회장), 박경춘(한국음반산업협회회장), 김종덕(한국음반제작업협동조합이사장)
 - 전문위원
 - 온라인유통: 김종현(ASG대표이사), 이호홍(저작권심의조정위 책임연구원), 금기훈(위즈맥스 대표이사), 박성훈(BUGS MUSIC대표이사), 전유림(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본부장), 김현걸(IK-POP실장)
 - 협회: 박경춘(한국음반산업협회회장), 서희덕(한국음악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엄용섭(한국연예제작자협회 회장), 김종덕(한국음반협동조합 이사장), 장고웅(불법음반퇴치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 기획 & 제작: 박진영(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대표), 강상돈(예당엔터테인먼트팀장), 임진모(평론가), 임경민(퓨어엔터테인먼트대표), 손아선(사운드스페이스 대표)
 - 마케팅·해외진출: 이훈석(난장뮤직이사), 정재욱(크레디아 대표), 최성욱(좋은콘서트대표), 김태형(뮤직팩토리대표), 김정현(스톱프뮤직대표)
 - 오프라인 유통: 최예강(한국음반물류협회 회장), 최동섭(아이케이팝 대표), 이태진(한국음반소매상협회 회장) 성낙서(EMI뮤직대표이사), 김광식(탑뮤직대표), 김형철(미디어랩실장), 임성환(E&E 대표)
 - 인력양성: 오원철(라이브톤대표), 임진모(음악평론가), 고정민(삼성경제연구소), 이승대(우주기획대표), 최경식(뮤직라인대표), 김국현(소리네트웍스대표)
 - 방송홍보: 이동연(문화연대 사무차장), 오중호(채널V 편성팀장), 유현정(뮤직웰대표), 임경민(퓨어엔터테인먼트대표), 남궁연(스튜디오오랫 대표)
 - 음악D/B: 금기훈(위즈맥스대표), 안수욱(자크르디비에스대표), 최우정(오이뮤직대표), 이

호홍(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김영수(한국음악D/B진흥회), 류동식(자이오넥스대표), 전유림(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질의요지)

4. 연합뉴스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번 연합뉴스사법이 정권에 예속되는 독소조항들을 제외하고 건전한 통신진흥법으로의 제정 방향이 결정되면, 법 처리 이전에 문화관광부에서 KBS 및 MBC와 주식평가 및 보상에 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

(답 변)

○ KBS, MBC는 보유주식의 이전과 관련, 이미 연합뉴스사 측에 “주식의 적정한 평가와 합법적 절차를 통한 주식양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유구조 개편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MBC)”, “연합뉴스사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성안하여 공식요청하여 온다면(중략) 조속한 시일 안에 관련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성의있게 검토할 계획(KBS)” 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2000.10월).

○ 정부는 연합뉴스의 주주가 아닐 뿐만 아니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KBS, MBC의 주식이전 문제에 직접 간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나,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련 기관과 적극 협조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의요지)

5. 방송정책권 관련

1) 방송발전기금의 사용처나 외주전문채널 설립 등에 대해 방송위원회와 사전 협의도 없이 문화관광부에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통합방송법에 어긋나는 행정이라는 데에 대한 견해

(답 변)

○ 현행 방송법 제92조제2항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은 방송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우리 부는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방송영상산업 진흥정책을 일관되게 수행해 왔으며, 방송·통신 융합에 따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콘텐츠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문화관광부의 방송영상콘텐츠 진흥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것입니다.

○ 외주전문채널 설립 추진 등 우리 부의 보고 내용이 방송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 점과 향후 설립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

보통신부·방송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의요지)

2) 문광부의 대응은 국가의 전반적인 방송통신 정책에 대한 윤곽도 없는 상황에서 먼저 업무영역 다툼에 나선 것이 아닌지?

(답 변)

○ 현행 방송법 제92조제2항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은 방송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우리 부는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방송영상산업 진흥정책을 수행해 왔으며 방송·통신 융합에 따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콘텐츠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문화관광부의 방송영상콘텐츠 진흥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것입니다.

○ 우리 부의 보고는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논의 시 콘텐츠 진흥이 중시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며 우리 부가 독단적으로 어떤 사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아직까지 방송통신위 설립에 관한 공식적 논의는 없었습니다만 2기 방송위가 구성되면 학계, 업계, 관련기관 등이 모두 참여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 부는 합리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참고로 주요 선진국에서는 과도한 권한 집중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을 우려하여 독립적인 규제위원회가 지원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프랑스

- CSA(시청각최고위원회): 방송 분야의 각종 심의·규제를 담당
- CNC(국립영화센터): 영화, 방송프로그램 등 시청각 분야 지원을 담당

(질의요지)

3) 대통령 업무보고 시 제시된 외주전문채널 설립은 지상파 방송사들을 더 비대하게 만들게 하는 것으로서 통합방송법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인데 장관의 대책

(답 변)

○ 먼저 우리 부가 검토하고자 하는 외주전문채널은 지상파채널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며 케이블TV 또는 위성방송의 PP(방송채널사용사

업자)도 포함하여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우리 부가 방송영상진흥정책의 일환으로 검토하고 있는 외주전문채널의 설립 방향은 제작·송출·편성의 수직적 통합 구조가 아니라 송출·편성기능만 수행하는 방송형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외주전문채널이 성공적으로 도입될 경우에는 국내 방송영상시장의 새로운 수요시장을 창출함으로써 독립제작사·방송프로그램채널사용사업자(PP)의 제작활성화와 다단계 유통(Window-Effect)이 가능해져 외주제작물의 수익모델이 형성되어 결국에는 지상파 방송사의 인하우스(In House Production) 구조가 완화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6. 문화관광부의 로또복권 참여 관련, 로또로 인한 체육복권사업의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스포츠토토사업이 로또복권의 광풍 속에서 수익성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지, 또 스포츠토토사업 투자비 환수 대책

(답 변)

○ 로또복권의 등장으로 기존 종이복권(추첨식, 즉석식) 시장이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보이며, 체육복권의 금년도 매출액은 작년 대비 약 5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체육복권 수익금: 2002년 241억 원 → 2003년 약 133억 원(추정)

○ 스포츠토토의 수익성과 관련하여 공단 및 스포츠토토(주)는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기간 동안 상당한 매출을 기록(1회차당 약 8억 원)한 점을 감안, 상품 다양화, 신규투자자의 영업망을 활용한 효율적 마케팅 등으로 여건을 조성할 경우 장기적으로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공단이 스포츠토토 사업에 직접 투자한 사업비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월드컵경기장 건립비로 지원한 1803억 원에 대해서는 스포츠토토 사업의 지속적 수행을 통해 회수할 계획입니다.

※ 2002년까지 회수액: 2487백만 원

(질의요지)

7. 월드컵 잉여금 중 일부는 월드컵 휘장사업자로 도산된 중소기업체에 대한 피해보상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

(답 변)

○ 월드컵 잉여금은 월드컵조직위원회의 재산이므로 그 집행의 권한과 책임은 전적으로 조직위원회에 달려 있습니다만 월드컵회장사업권자로서의 코오롱 TNS월드와 OEM업체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해서 체결된 일반 상거래에 의해서 생긴 피해를 제3자의 입장에 있는 월드컵조직위나 정부에서 월드컵 잉여금으로 직접 피해보상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요지)

8. 축구협회의 법인화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

(답 변)

○ 우리 부는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재정자립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단체 법인화 사업(법인설립 시 1개 법인당 10억 원의 재정자립기금 지원)을 지난 1994년부터 연차적으로 권장·추진하여 현재까지 49개 경기단체 중 28개 경기단체가 법인으로 설립되었습니다.

○ 동 법인화 사업 추진에 있어서 축구, 야구, 농구 등 일부 인기종목 또는 자체 자원 소요가 비교적 많은 경기단체에서 법인으로 전환 시 과중한 행정간섭이나 협찬금의 축소를 우려하여 법인설립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그러나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설립되는 경기단체에 대해서는 당해 법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정관의 변경 또는 기본재산의 처분 승인 등 단체의 존립과 관련되는 기본적 사항 이외에는 단체운영에 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인화에 따른 지나친 행정간섭 등을 우려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한축구협회의 법인화 문제에 있어서는 2002 월드컵축구대회를 계기로 협회 예산과 사업범위가 확대된 점을 고려할 때 경영의 효율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법인으로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우리 부는 대한축구협회가 축구인의 총의를 수렴, 조속한 시일 내에 법인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 다만 경기단체의 법인 전환이 자체 대의원 총회의 의결 등 당해 단체의 자발적인 신청을 요하는 상황인 만큼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鄭鎮碩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질의요지)

1. 국민의 알권리 위해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원 접근과 정부의 성실한 정보공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자유보장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가치임.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

(답 변)

○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우리 부가 마련한 홍보업무 운영방안은 원칙과 상식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대언론관계를 정립하는 한편, 인터넷의 발전 등 새로운 언론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방·공평·정보공개 원칙에 입각하여 홍보업무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홍보업무 운영방안은 결코 언론 통제를 위한 것은 아니며 그렇게 할 권한도 제도도 정부에게는 없습니다.

○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이를 적극 고쳐나갈 것이며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원 접근과 성실한 정보공개를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의요지)

2. 언론관 관련

1) 장관의 정부와 언론의 관계에 대한 이데올로기는 무엇인지, 안티 조선이 곧 언론개혁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든 언론에 편협적이지 않은 언론정책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지?

(답 변)

○ 정부와 언론 간에는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각기 고유역할을 독자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에서는 언론과의 관계를 건전하게 정립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일부 시민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특정언론사에 대한 반대운동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정부에서는 모든 언론에 편협되지 않게 업무를 공평하게 처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요지)

2) 진정한 언론개혁은 참여정부의 관료사회가 왜곡된 언론관에서 정상적 언론관을 갖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답 변)

○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지만 정부에서는 그동안 정부와 언론 간에 생겼던 여러가지 부적절했던 관행을 정상화하자는 취지에서 홍보업무 운영방안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요지)

3. 청와대 언론보도 분류 지시와 관련하여 정권을 비판하고 치부를 밝히면 악의적 비판이 되고 오보가 되는 것인지, 긍정과 단순은 무엇이며, 건전비판과 악의적 비판은 누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결국 정권에 비판적인 특정 언론을 감시하고 옥죄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 아닌지?

(답 변)

○ 청와대에서 요구한 언론보도 일일보고서는 언론의 비판 중 건전한 비판 보도는 참고하고 오보의 경우 기자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인지, 브리핑에 혼선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는 정권에 비판적인 특정 언론을 감시하거나 옥죄려는 의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4. 언론정책 관련

1) 언론의 주된 역할과 책무는 권력에 대한 감시 비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 변)

○ 위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질의요지)

2) 대통령의 '언론은 통제받지 않은 권력'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는지와 권력이 비판에 대한 인내력, 수용력을 잃으면 민주정치는 위태로워 진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답 변)

○ 대통령의 말씀은 국민 전체의 여론을 형성해 나감에 있어 독자나 시청자로부터 보도의 사실 여부나 공정성 등에 대한 검증은 보다 충분히 받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언론의 존재 이유는 사실보도와 이를 바탕으로 한 건전한 비판 그리고 여론형성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데 있다고 보며 언론으로부터의 이러한 비판은 언제든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질의요지)

3) 언론정책에 대한 이데올로기는 무엇인지와

지금의 언론정책은 국정미숙의 산물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답 변)

○ 언론정책에 대한 이데올로기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합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와 언론 간에는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각기 고유역할을 독자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언론관련 홍보업무 운영방안은 과거의 부적절했던 관행을 개선하고, 보다 개방·공평·정보공개의 원칙에 입각하여 업무를 처리하고자 수립한 방안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요지)

4) 행정서비스를 개선해서 국민에게 보답하는 것이 장관의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답 변)

○ 위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5. 문화관광부 홍보업무 운영방안 관련

1) 기자실 제도의 개선방향은 옳다고 보나 사전신고제를 통해 공무원 접근을 막는 취재지침은 현실을 무시한 지나친 정보통제임. 이에 대한 대책. 또한 브리핑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는 문제점을 낳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

(답 변)

○ 모든 면담을 사전에 공보관에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취재하는 경우에만 공보관실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취재원과 기자가 직접 사전약속을 통하여 공보관과는 관계없이 취재지원실이나 사무실 밖에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만나 취재할 수 있으며 사전신고 같은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 브리핑은 장·차관, 또는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이 직접 하게 되므로 부실한 브리핑이 될 우려는 없다고 봅니다. 브리핑 후 개별 취재등을 통한 추가적인 취재도 가능합니다.

(질의요지)

2) 기자 출입제한 방침은 뉴스 공급자 중심의 언론관이 투영된 발상임.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

(답 변)

○ 기자의 사무실 방문에 제한을 두는 것은 공공업무 시간과 사무 공간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선진국처럼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다. 취재의 자유는 적극 보장하고 있습니다.

○ 취재지원실 등에서의 취재가 가능하며 개별 인터뷰, 전화 등 다양한 방법의 취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공보관실의 협조를 받아 사무실 방문 취재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의 사무실 방문에 의한 취재의 경우 공무원이 고의로 자리를 피하거나 하여 취재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으나 공보관실을 통할 경우 오히려 취재를 피할 수가 없게 되어 취재원과의 접근성은 강화될 것입니다.

(질의요지)

3)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정보공개 제한이 국익이 아니라 기자 취재 제한, 정권 안보, 권력층 비리 보호 차원에서 이뤄져선 안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

(답 변)

○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우리 부에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모든 정보를 신속·과감하게 공개한다는 원칙하에 정보공개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우선 1단계로 현재의 홈페이지를 이용해 최대한 공개 가능한 각종 정책자료 및 보고자료 등을 적극 공개하고 있으며, 일일 평균 10건 정도가 우리 부 홈페이지 내의 '열린 자료방'을 통하여 공개되고 있습니다.

○ 앞으로 홈페이지 등 관련 시스템 개편을 통하여 정보공개가 편리한 체제를 만들어 가는 한편, 문화행정혁신위원회를 통하여 정보공개의 범위 확대, 신속한 공개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정보공개가 행정체제 내에서 제도화 되도록 할 것입니다.

(질의요지)

4) 문예진흥원과 문화재청의 사례는 취재 거부가 현실화되어 나타난 것으로 정보공개 원칙이 그저 하기 좋은 말이라는 걸 말해 줘. 이에 대한 장관의 답변

(답 변)

○ 문예진흥원과 문화재청의 사례는 실제 내용과는 다르게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선 문예진흥원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부는 홍보업무 운영방안과 관련하여 문예진흥원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어떠한 지침이나 협조 요청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2003년 3월 25일자의 조선일보의 사실과 사회면 기사에서 마치 문예진흥원이 문화관광부의 취재지침에 따라 취재를 거부하였다는 듯이 보도한 내용은 잘못된 것입니다.

○ 또한 문예진흥원은 통일문학전집 발간에 대한 조선일보 기자의 취재 요청에 대하여 동 전집에 수록될 예정인 남북한 작가와 작품 수 및 기획위원 명단, 발간 예정일 등을 알려 주었습니다. 다만, 분단 이후 최초로 발간되는 북한 작품의 수록에 대한 최종 검토와 더불어 기획위원 등의 참여를 통한 발표 형식과 배포방법 등 최종 자료 정리와 내부 의견이 확정되지 않는 등 아직 동 전집 발간 작업이 진행 중임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공식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점에 대하여 양해를 요청하고 발간작업이 최종 마무리될 때 공식적으로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그리고 조선일보 기자가 이미 통일문학전집 기획위원을 통해 취재하여 보도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어떠한 요청이나 거부의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었으며 조선일보는 이에 대한 기사를 2003년 3월 24일자에 보도하였습니다. 따라서 취재 기사에 대한 보도 시점까지 정하였다고 한 것은 확대 해석하여 보도한 것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 문화재청과 관련하여서는 언론에서 문화재 관리부실 등의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이는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지난 3월 20일 모일간지 기자가 창덕궁을 방문하여 사전협의 없이 비공개 지역인 의풍각(儀豐閣)과 그 곳에 보관 중인 유물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창덕궁관리소장(이장열)은 의풍각은 비공개 지역이고 유물수장고로서 학술 및 보존관리 목적 등을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특정 언론사에만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 유물수장고를 언론을 통해 공개하는 것은 국내외적으로도 그 예를 찾아보기가 힘들며 외국의 경우에도 유물관리의 안전을 위해 유물보관 책임자의 상세한 신원사항을 보안에 부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 다만 공개 불가의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

서 문화재청과 기자와의 의사소통에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앞으로 우리 부는 적극적인 정보공개와 취재 협조를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질의요지)

5) 기자들이 공보관을 통해서만 공무원을 만날 수 있도록 한 것은 정보 접근 제한 조치라는 비판이 있음.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

(답 변)

○ 모든 취재를 공보관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무시간 중 사무실을 방문하여 취재를 할 경우에 공보관실의 협조를 받는 것입니다. 취재지원실에서의 면담 취재, 전화 취재나 사무실 밖에서의 취재는 공보관실의 협조 유무와는 관계없이 자유롭게 취재할 수 있으며 제한이 없습니다.

(질의요지)

6) 언론과의 긴장관계가 공무원들 복지부동의 핑계만 마련해 주는 것 아닌지,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침해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데 이에 대한 견해

(답 변)

○ 언론과의 건강한 긴장관계 유지와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의요지)

7) 언론인만 출입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언론인을 불순분자로 여기고 있거나 권력을 비밀의 장막 아래 감추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답 변)

○ 기자의 사무실 방문에 제한을 두는 것은 공공업무 시간과 사무 공간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선진국처럼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취재의 자유는 적극 보장하고 있습니다.

○ 민원인의 경우도 사무실을 자유롭게 방문하는 게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민원접견실(토방)에서 민원인을 만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무실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질의요지)

8) 브리핑을 통해서만 정보가 공급될 경우 정책 홍보용 정보만이 넘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 또한 등록취소 등을 남용할 경우 언론 통제수단이 될 위험도 상존한다고 볼 수 있음.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 취재

응대 사후 보고제도 등도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임. 이에 대한 대책

(답 변)

○ 브리핑은 정보 제공과 취재의 기회를 모든 매체에 개방하고 동시에 공평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이지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례 및 수시 브리핑 시간에 깊이 있는 정책토론을 할 수 있고 브리핑 이외에도 전화나 개별 인터뷰 등 추가적인 심층 취재를 할 수 있습니다.

○ 우리 부의 홍보업무 운영방안에는 등록을 취소하는 제도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의 남용의 여지가 없습니다.

○ 취재 응대 후 사후 보고제도는 모든 취재 내용을 일일이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보의 가능성이 있는 취재일 경우에 한하여 직원 스스로가 판단하여 통보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후 책임 문제를 방지하여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단순한 사실확인 같은 모든 내용을 일일이 공보관에게 통보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공익고발(내부고발) 등과 같이 취재원의 보호가 필요한 것은 당연히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의요지)

9) 공보관을 통한 사전예약제 자체가 사후보고제와 같은 제약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방안

(답 변)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면담을 사전에 공보관에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취재하는 경우에만 공보관실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취재원과 기자가 직접 사전약속을 통하여 공보관과는 관계없이 취재지원실이나 사무실 밖에서 자유롭게 만날 수 있습니다.

(질의요지)

10) 정부는 지금이라도 언론계, 학계, 시민 등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언론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방안

(답 변)

○ 우리 부에서 마련한 홍보업무 운영방안은 그동안 언론과의 관계에 있어서 생겼던 여러 가지 부적절한 관행이 상당 부분 정부 측이 제공한 측면이 있었음을 반성하면서 언론에게 무엇을 요구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바뀌자. 그리고 우리

가 먼저 언론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것입니다.

○ 앞으로 시행해 나가면서 언론계, 학계,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점이 있다면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질의요지)

11) 홍보운영방안은 안티 조·중·동 시스템을 구축하려 한다는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광부 방안의 배후가 대통령인지, 장관이 현 정권 언론탄압의 나팔수를 자처했나?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

(답 변)

○ 홍보업무 운영방안은 개방적이고 공평하게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이지, 특정 언론을 반대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만일 동 방안이 특정 언론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역설적으로 특정 언론이 그동안 공평하지 않게 특정 관계에 의해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홍보업무 운영방안은 준비과정에서 별도로 청와대 등과 협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질의요지)

12) 장관으로 재임기간 동안 언론으로부터 어떠한 부당한 공격과 비판을 받았는지?

(답 변)

○ 지난 3월 14일 발표한 홍보업무 운영방안과 관련하여 브리핑을 할 때 관련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홍보업무 운영방안의 내용이 의도적으로 많이 잘못 알려졌습니다.

(질의요지)

13) 행정부만 기자실을 없애 언론 접근을 사실상 봉쇄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기자들의 발을 묶고 브리핑으로 던져주는 정보로 만족하라는 것은 언론을 떠나 국민에 대한 도리라 보기 힘들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견해

(답 변)

○ 우리 부의 홍보업무 운영방안은 지난 시대의 관행인 기자실 제도를 선진국형인 브리핑 제도로 전환하여 개방·공평·정보공개의 원칙에 입각하여 홍보업무를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 이는 정보공개를 철저히 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합리적인 언론관계를 마련해 보자는 것으로서 언론 취재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질의요지)

14) 충실한 브리핑과 정직한 정보공개가 전제

돼야 하는데 참여정부라면서 언론에만 차단 정책을 고집하는 이유

(답 변)

○ 장·차관, 또는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이 직접 브리핑을 하게 되므로 부실한 브리핑이 될 우려는 없다고 봅니다. 브리핑 후 개별 취재 등을 통한 추가적인 취제도 가능합니다.

○ 또한 신속 과감한 정보공개를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가 최대한 충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15) 국정홍보처의 정부 홍보방안을 밝힌 후에 했어야 하는데 문화부에서 성급하게 홍보 운영방안을 발표했음. 대통령과 코드가 일치한다는 장관이 정권의 나팔수 역을 자처한 것 아닌지?

(답 변)

○ 우리 부에서는 문화관광부 홍보업무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것입니다. 홍보업무가 모든 정책업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가 앞으로 홍보업무를 운영함에 있어서 언론과의 관계 등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를 정하고 난 연후에 정책 홍보업무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질의요지)

16) 기자들의 직접 취재를 막아 정부의 브리핑만 받아 쓰도록 하고, 정보공개도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한다면 민주국가라 할 수 있는지?

(답 변)

○ 브리핑은 정보 제공과 취재의 기회를 모든 매체에 개방하고 동시에 공평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이지,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례 및 수시 브리핑 시간에 깊이 있는 정책토론을 할 수 있고, 브리핑 이외에도 전화나 개별 인터뷰 등 추가적인 심층 취재를 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도 민감한 정보까지 포함하여 신속 과감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앞으로 문화행정혁신 위원회를 통하여 정보공개가 제도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요지)

6. 독립기념관 이사회 의 조선일보 윤전기 철거 결정 관련

1) 독립기념관의 상급 지휘감독 기관으로서 주요 쟁점들을 보고받아 온 문화관광부장관과 무관치 않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답 변)

○ 독립기념관에 전시 중인 조선일보 윤전기는 1986. 6 조선일보사에서 기증한 것으로, 1987.8.15 개관 시 제5전시관(독립전쟁관)의 문화운동실에 전시되어 왔으나, 1999. 1. 8 현재의 위치인 제6 전시관(사회문화운동관)으로 이동하여 전시 중입니다.

○ 2002년 8.15 광복절 기념식을 계기로 시민단체로부터 동 윤전기 철거요구 및 시위, 법원에 전시금지가처분신청, 국회 청원 등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 독립기념관에서는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제53차 이사회(2003. 3.17)에 현안사항으로 보고하여 동 윤전기의 전시에 관한 사항을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의결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질의요지)

2) 독립기념관 이사회가 독립기념관에 17년째 전시 중이던 조선일보 윤전기 철거 관련 안건은 이미 국회에도 청원이 되어 있는 만큼 국민적인 공론과 공감대를 형성해 재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답 변)

○ 조선일보 윤전기 전시관련 사항은 이미 전년도 50차 정기 이사회(2002. 3. 15)에서 일부 이사들에 의해 조선일보 윤전기 철거 및 하와이 대한인국민회 윤전기의 교체전시가 제안되는 등 이사들의 주요 관심사항으로 정부나 정치권의 관여나 압력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또한 국회 청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지난 2003. 2. 19 문광위 청원심사 소위원회에서 그동안 독립기념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전시물에 붙어 있던 동판을 제거하는 등 나름대로의 노력이 인정되어 독립기념관 결정에 맡기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 독립기념관의 전시물에 대해서는 독립기념관 자체 판단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요지)

3) 독립기념관 전시물에 대해서는 전시자문위원회에서 다루던 관행을 깨고 갑자기 이사회 안건으로 집어넣어 결정을 내린 것은 잘못된 것 아닌지?

(답 변)

○ 전시자문위원회는 전시에 관한 중요 자문기

구이긴 하나 말 그대로 자문기구이며(의결기구는 아님), 독립기념관 이사회는 독립기념관법 제11조와 독립기념관 정관 제9조·제10조·제12조 및 이사회운영규정 등에 명시된 독립기념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며 이사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은 정관 제10조에 독립기념관의 업무계획, 예산, 결산,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한 사항, 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 기타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정책사항 등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독립기념관은 이번과 같이 사회적 관심사항이 높은 사안은 주요 정책사항으로 보아 이사회에 현안사항으로 보고하였던 것이고 보고과정에서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결의하자고 제안하여 특별히 반대의견이 제기되지 않은 채 참석이사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윤전기 교체전시 결정을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4) 결국 이번 철거사건은 현 정권의 뜻에 맞추어 특정 신문을 친일(親日) 매국신문으로 매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데 역사가 한 정권의 자의와 편의에 의해 재단될 수 있다고 보는지?

(답 변)

○ 역사가 시대에 따라 어떤 정권의 자의와 편의에 따라 결정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이번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은 독립기념관법에 의해 구성된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정부는 전시내용 등에 대한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요지)

7. 문화관광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 중 방송정책과 방송산업 진흥정책을 분리하겠다는 것은 문화관광부의 방송정책권 회수 의도가 아닌지?

(답 변)

○ 현행 방송법 제92조제2항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은 방송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우리 부는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방송영상산업 진흥정책을 수행해 왔으며 방송·통신 융합에 따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콘텐츠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문화관광부의 방송영상콘텐츠 진흥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것입니다.

○ 우리 부의 보고는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논

의 시 콘텐츠 진흥이 중시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며 우리 부가 독단적으로 어떤 사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아직까지 방송통신위 설립에 관한 공식적 논의는 없었습니다만 2기 방송위가 구성되면 학계, 업계, 관련기관 등이 모두 참여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 부는 합리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참고로 주요 선진국에서는 과도한 권한 집중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을 우려하여 독립적인 규제위원회가 지원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프랑스

- CSA(시청각최고위 원회): 방송 분야의 각종 심의·규제를 담당
- CNC(국립영화센터): 영화, 방송프로그램 등 시청각 분야 지원을 담당

○文化財廳長 盧太燮

(姜申星一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질의요지)

1. 루사 피해 이후 복구현황 및 자연재해 대처 관련

(답 변)

○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문화재 피해에 대한 점검·관리 및 복구 대책과 관련, 재난관리법에 의거 재해복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각 부서별 소관업무를 포함한 재해대책편람을 발간, 배포한 바, 우리 청에서는 이를 근간으로 재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동 편람에는 문화재 재난관리 대상 시설, 수해대비 사전점검, 재해발생 시 보고체계, 지진대비·화재예방대책 및 피해복구대책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 동 편람에 의거 우리 청에서는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문화재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평소 문화재의 점검실태 조사와 보수·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태풍 등 기상 특보발령 즉시 우리 청 및 각 시·도(시·군·구)에 비상연락체계를 구축·운영토록 하고 문화재에 대한 수시 점검·순찰을 강화하는 등 문화재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이와는 별도로 우리 청에서는 매년 초 각종 재해로부터 문화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재 재해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을 강화토록 시달하고 있으며 재해로 인한 문화재 피해 발생 시 신속히 복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秉浩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질의요지)

1. 중요문화재의 해외유출 현황

(답 변)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청에서는 일본 천리대학교 소장 안건의 ‘몽유도원도’와 2001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된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 소장 ‘직지심체요절’ 등 5개국 25개 처 소장 50여 점 이상의 중요문화재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으며 중요문화재에 대한 세부 목록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임]

해외소재 주요 우리 문화재 목록

국가별	소장처	문화재명	비고
일본	천리대학 (Tenri University)	몽유도원도(夢遊桃園圖)	조선
	동경국립박물관 (Tokyo National Museum)	금동투조관모(金銅透彫冠帽)	삼국
		국화문나전경함(菊花紋螺鈿經函)	조선
		아미타삼존도(阿彌陀三尊圖)	고려
	대화문화관 (Yamato Bunkakan Collection)	동제은상감유수금문정병 (銅製銀象嵌柳水禽紋淨瓶)	고려
		연사모종도(煙寺暮鐘圖, 傳 安堅)	조선
	동경대학교 (Tokyo University)	토기고족반(土器高足盤)	삼국
		발형토기(鉢形土器)	삼국
	경도 지적원 (Kyoto chishakuin)	약사도(藥師圖)	고려
	경도국립박물관 (Kyoto National Museum)	종형단화문경(鐘形端花文鏡)	고려
		감지금자대보적경권32 (紺紙金字大寶積經卷32)	고려
	나라국립박물관 (Nara National Museum)	동제은상감향환(銅製銀象嵌香盃)	고려
		백의관음도(白衣觀音圖)	고려
		나전대모국당초문염주합 (螺鈿玳瑁菊唐草文念珠盒)	통일 신라
	고려미술관 (Koryo Museum of Art)	백자청화운룡문호(白瓷靑畫雲龍紋壺)	조선
		용호도(龍虎圖, 傳 李楨)	조선
		화조도자수십곡병풍(花鳥圖刺繡十曲屏風)	조선
	대관시립미술관 (Osaka Municipal Museum of Art)	금동여래입상(金銅如來立像)	통일 신라
		청자상감포도동자문표형주자 (靑瓷象嵌葡萄童子紋瓢形注子)	고려
		백자호문탁잔(白瓷鎬紋托盞)	조선

국가별	소장처	문화재명	비고
미국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Metropolitan Museum of Art)	화청자모란당초문매병 (畵靑磁牧丹唐草紋梅瓶)	고려
		백자진사포도문호(白磁辰砂葡萄紋壺)	조선
	브루클린박물관 (Brooklyn Museum of Art)	청자연관문주자(靑磁蓮瓣紋注子)	고려
		아미타삼존도(阿彌陀三尊圖)	고려
	피바디박물관 (Peabody Exssex Museum)	자개원반(螺鈿漆圓盤)	조선
		유길준 유품 등	조선
	로스엔젤스 LCM 박물관 (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청자철상감모란당초문호 (靑瓷鐵象嵌牧丹唐草紋壺)	고려
		화각장생모란문함(華角長生牧丹紋函)	조선
		목재나한상(木製羅漢像)	조선
	보스톤박물관 (Museum of Fine Arts, Boston)	청자투조향로(靑瓷透彫香爐)	고려
		금동불감(金銅佛龕)	고려
		은제도금화형주자(銀製鍍金花形注子)	고려
	샌프란시스코박물관 (Asian Art Museum of San Francisco)	청자상감국화절지문호 (靑磁象嵌菊花折枝紋壺)	고려
하와이 박물관 (Honolulu Academy of Arts)	청자음각연화문과형병 (靑瓷陰刻蓮花紋瓜形瓶)	고려	
하버드대학 새클러박물관 (Arthur M. Sackler Museum, Harvard University Art Museums)	청자상감매병(靑瓷象嵌梅瓶)	고려	
영국	대영박물관 (The British Museum)	청자진사당초문대접(靑瓷辰砂唐草紋大蝶)	고려
		화엄경변상도(華嚴經變相圖)	고려
		나전국화당초문경함(螺鈿菊花唐草紋經函)	조선
		기사진표리진찬의궤(己巳進表裏進饌儀軌)	조선

		문화재명	비고
영국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 (Victoria & Albert Museum)	나전칠모란당초문찬합 (螺鈿漆牧丹唐草紋饌盒)	조선
		철화연화문백자항아리 (鐵畫蓮花紋白瓷壺)	조선
독일	쾰른동아시아박물관 (Museum of East Asian Art, Cologne)	청자음각모란문장경병 (靑瓷陰刻牧丹紋長頸瓶)	고려
		청자음각연화절지문매병 (靑瓷陰刻蓮花折枝紋梅瓶)	고려
		수월관음도(水月觀音圖)	고려
	함부르크미술공예박물관 (Hamburg Museum for Ethnology)	금동안장금구(金銅鞍裝金具)	삼국
프랑스	기메박물관 (Guimet National Museum of Asian Arts)	철조천수관음보살좌상 (鐵造千手觀音菩薩坐像)	고려말 ~조선
		아미타여래도(阿彌陀如來圖)	고려
		감지금니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紺紙金泥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조선
		금동용봉(金銅龍鳳)고리장식칼	삼국
	파리국립도서관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조선왕조의궤 등 외규장각 고서 (朝鮮王朝儀軌 等 外奎章閣 古書)	조선
		왕오천축국전(往五天竺國傳)	통일 신라
직지심체요절 1권(直指心體要節 1卷)		고려	
러시아	모스크바 동양 박물관 (State Museum of Oriental Art, Moscow)	청자철화국화절지문매병 (靑瓷鐵畫菊花折枝紋梅瓶)	고려
	피터대제인류학박물관 (KUNSTKAMERA)	금동연화·봉황장식 은입사춧대 (金銅蓮花·鳳凰裝飾銀入絲)	조선
소장처: 5개국, 25개처		54점	삼국~ 조선

(질의요지)

2. 문화재 환수대책 관련

1) 문화재청의 문화재 환수업무 담당부서 및 지금까지 환수 성과

(답 변)

○ 현재 해외 유출문화재 환수업무는 우리 청 매장문화재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2002년 3월 우리 청 직제 개편 시 담당인원이 2명에서 4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1958년 한일 정부 간 회담 이후 정부 간 협정에 의해 1659점, 국·공립 박물관 구입 환수 341점, 민간 및 정부 기증에 의해 2550점을 환수하는 등 일본 등 5개국으로부터 4550점의 문화재를 환수한 바 있습니다.

(질의요지)

2) 문화재청 또는 국립중앙박물관에 문화재환수국을 설치할 용의

(답 변)

○ 우리 문화재의 해외 유출은 임진왜란, 일제시대, 6·25 등 전란기와 사회적 혼란기에 주로 유출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약탈 또는 불법반출 등 정확한 유출경위가 알려지지 않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 이에 문화재청에서는 우선적으로 영국 런던 박물관 등 외국의 중요 소장처를 대상으로 유출 문화재 조사 10개년(2002~2011) 계획을 수립, 조사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들 조사자료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정부 차원의 해외문화재 환수 및 민간단체의 구입 또는 기증 등을 통한 환수에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 그러나 약탈문화재 또는 해외 유출문화재 반환과 관련해서는 외국 정부당국과의 교섭과 협상 등 여러 가지 외교적·국제적 문제가 있으므로 통상적으로 외교통상부가 주관하고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고 있으므로 위원님의 고견을 참고하여 관계기관, 국제법 및 학계전문가 참여 속에 해외 유출문화재 환수를 위한 합리적·효율적인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질의요지)

3. 범어사의 문화재 도난사건과 관련, 사실 여부, 전통사찰 문화재와 개인소유 문화재의 차이점, 현행법과 제도상의 문제점에 대한 견해

(답 변)

○ 2001년 4월 부산 MBC, 부산일보 등에서 범어사의 유물 1000여 점이 도난되었다고 보도된 바 있으나 사실확인 결과

- 1932년에 작성되었다는 출처불명의 범어사 유물목록과 1999년 범어사에서 조사한 목록을 비교하여 차이는 유물 전체를 도난된 것으로 보도하였으며
- 도난되었다는 유물은 주로 일제시대, 한국전쟁과 1980년대 초반 불교계의 혼란기에 관리 소홀로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1980년대 후반 이후에는 도난, 분실된 사실이 없습니다.
- 범어사에서 1932년에 발간된 유물목록을 입수하여 확인 작업을 실시코자 하나 유물 목록 소장자 및 목록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

는 실정입니다.

○ 현재 문화재는 지정문화재를 포함하여 전국에 수백만 점이 산재되어 있고 사찰·문중·개인 등 소장자 책임하에 보호·관리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예산과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문화재 보호법에 의거 지정된 문화재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전통사찰문화재가 문화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 사찰문화재 일제조사 실시(2002-2011), 사찰문화재 불화조사 실시를 통해 사찰유물 현황 파악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찰유물전시관 건립(완공 14개, 건립 추진 중 14개)등을 통해 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도 보호와 관리 등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의요지)

4. 문화재감정관실 운영과 관련, 관계전문가들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제기 및 인원부족에 따른 정확한 감정의 가능 여부에 대한 견해

(답 변)

○ 우리 청에는 문화재 밀반출 예방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감정관실 등 10개 시·도에 14개 문화재감정관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32명(상근 18명, 비상근 14명)의 감정위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위원님께서 우려하여 주신 우리 문화재 해외밀반출 예방을 위해 비행기 운항 횟수가 증가된(주 20회 운항) 비상근 대구국제공항 감정관실을 금년 5월부터 상근으로 전환 운영하는 등 인원 및 장비를 점차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문화재 감정 물량이 많다고 지적하신 부산국제여객부두는(상근 2명 근무) 도자기 등 최근에 만들어진 신작 수출품으로 인해 타 감정관실에 비해 감정물량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04년도에는 감정위원이 보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요지)

5. 국내 문화재의 거래 및 매매실태 파악 여부
(답 변)

○ 전국의 사찰·문중·개인 등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는 수백만 점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그 유형이 다양하고 수량도 많아 전체적인 현황 파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 그러나 비지정문화재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

고 있는 사찰문화재의 중요성을 감안, 현재 사찰문화재 일제조사(2002-2011)를 통해 현황을 파악 중에 있으며 앞으로 조사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사찰문화재 도난방지에 활용하는 등 보존관리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아울러 문화재 매매업자의 경우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45조 규정에 의거 문화재 매매 및 교환 등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화재 매매에 대한 투명성과 함께 거래 현황이 파악되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金一潤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질의요지)

1. 문화유산의 보존과 복원을 통한 적극적인 활용에 대한 계획수립과 관련한 견해와 대책

(답 변)

○ 문화유산의 원형보존뿐만 아니라 활용 측면을 문화재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는 말씀에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도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문화유산 활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의 관심이 크게 증대하고 있어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정책의 수행을 위하여는 앞으로 활용정책의 개발과 운영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문화재청은 이러한 정책 변화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난 2002년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효율적 활용을 3대 정책과제의 하나로 삼아 2011년까지의 중장기 계획을 제시하였고 금번 업무보고에서도 문화재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국민 문화향유 증진을 정책 기본방향의 하나로 표명한 바 있었습니다만 문화재의 활용 정책을 더욱 풍부하고 다양하게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검토를 강화함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등이 요구하는 문화유산의 각종 활용사업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요지)

2.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의 경우, 복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현 정부의 대선공약인 황룡사와 미륵사의 복원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답 변)

○ 황룡사와 미륵사는 우리나라 불교문화의 정수로서 세계에 자랑할 만한 문화유산인 것은 사실이지만 장기간의 연구조사에도 불구하고 당시

건물의 구조, 양식, 재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고증자료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미륵사 복원의 경우 지난 2001. 12. 7 문화재위원회에서 고증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원은 불가능하다고 심의 의결한 바 있습니다.

○ 또한 현 상황에서 동 사찰들을 복원하는 것은 고증을 통한 복원이 아닌 새로운 사찰을 건립하는 것으로 정부의 문화재 보수·복원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기존 유구 위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유구 파괴의 우려도 내포하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그리스, 이태리 등도 정확한 고증에 의하지 않은 추정 복원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실적이 축적되어 동 사찰들에 대한 정확한 고증 자료가 마련되고 복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등 복원을 위한 제반 여건이 갖추어 질 경우 복원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질의요지)

3. 문화재 보존관리 개념의 확대에 대한 견해와 대책

○ 문화유산 보호를 면적 개념으로 주변환경 보호까지로 확장하고 자연유산도 포함해야 한다는 위원님의 견해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제도, 문화재 주변 현상 변경 허가제도, 건설공사 시 문화재 영향 검토제도 등을 통하여 문화유산의 주변환경 및 경관까지를 포함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천연기념물·명승 등 자연유산도 문화재로 지정 보호토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님께서 제시하셨듯이 문화유산 보호정책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연유산까지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는 문화선진국처럼 정책역량의 강화와 함께 지방자치 행정과의 연계성이 보다 긴밀해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정책방향을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 행정의 기능과 역량을 재정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요지)

4. 고도보존특별법에 대한 의지와 입장

(답 변)

○ 경주 등 고도의 보존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등을 해소하고 문화재의 철저한 보호를 위해 고도보존법의 제정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검토

하고 있습니다.

○ 고도보존을 위한 막대한 재원 마련을 위한 근거규정과 타 법률과의 형평성이 크게 문제가 되는 보존·정비비용의 전액 국가부담, 행위제한에 따른 손실보상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과정을 통해 현실성 있는 법안이 만들어지도록 협의해 나가자 합니다.

(沈載權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1. 덕수궁터 미대사관 건축문제

(질의요지)

1-1. 지난 4월8일 문광부장관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문화재 조사를 거쳐 덕수궁 주변에 미국대사관과 직원숙소를 건립키로 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답 변)

○ 먼저 문화관광부 대통령 업무보고 시 “문화재 조사 후 덕수궁 주변에 미대사관과 직원숙소를 건립키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 문화재 지표조사는 문화재보호법에 일정규모 이상의 모든 건설공사 시 공사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 및 분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절차인 바, 이에 따른 문화재보호법상의 절차 진행을 위해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문화재 조사를 위해 협조해 주겠다는 의미이지 동 건물을 건립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 문화관광부(문화재청)는 문화재 보호 및 국내법 절차 진행을 위한 협조 차원에서 문화재 지표조사기관 선정을 도와 주고 조사기관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이번 사안에 대하여 문화재청은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보고서가 서울시를 경유하여 접수되면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통상의 절차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계획이며 건축허가 여부는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하는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요지)

1-2. 용산 헬기장 이전문제와 덕수궁 주변 미대사관 및 직원숙소 문제는 전혀 별개의 사안으로서 서로 연계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

(답 변)

○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문화재를 보존·관리하고 있습니다.

○ 우리 청과 관련된 사항은 덕수궁 주변 미대사관 및 직원숙소 건립 관련 사항이며 용산 미헬기장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요지)

1-3. 덕수궁 복원사업이 장기적으로 미대사관 부지는 물론 옛 덕수궁터를 포함하는 복원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답 변)

○ 덕수궁 복원사업이 장기적으로 옛 덕수궁터를 포함하는 복원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덕수궁(경운궁)은 1904년 화재 및 1910년대 궁궐터에 도로, 학교, 민가 등이 들어서면서 경역이 축소되고 토지의 사유화 등 주변환경이 급속히 변하여 현재로서는 옛 경운궁 시대의 규모로 덕수궁 전체를 완전히 복원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현재 계획 중인 덕수궁 내부 복원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대사관 부지 등의 옛 덕수궁터 복원은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토지매입, 건물 철거 등을 고려한 장기적인 복원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尹鐵相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질의요지)

1. 창덕궁 토끼 방사와 문화재 보호문제

(질의요지)

1-1. 현재 창덕궁 내에서 번식하고 있는 토끼의 수

(답 변)

○ 현재 창덕궁 내에 남아있는 토끼는 10여 마리가 있습니다.

(질의요지)

1-2. 언제 누구에 의해 방사되었는지 여부

(답 변)

○ 2001년 5월에 창덕궁관리소에서 50마리를 방사하였습니다.

(질의요지)

1-3. 국가지정문화재 안에서 동물의 사육이나 번식 등의 행위가 문화재보호법상 가능한 일인지?

(답 변)

○ 창덕궁 후원은 북악과 북한산 생태계와 연

결되어 있어 1970년대까지 야생토끼, 꿩 등이 서식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야생동물을 찾아보기가 어려워 동물 생태계를 파악하고 관람객에게 볼거리 제공하고자 토끼를 방사하였습니다. 토끼를 방사한 목적은 단순히 창덕궁 후원의 동물 생태계만 파악하고자 한 것이므로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동물의 사육이나 번식을 위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질의요지)

1-4. 창덕궁 내에 토끼를 방사한 행위가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얻은 사항인지 여부

(답 변)

○ 창덕궁관리소장이 동물 생태계를 확인코자 궁 경상관리라는 경미한 사항으로 생각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는 얻지 않았습니다.

(질의요지)

2. 하남시 백제유적지 그린벨트 해제문제

2-1. 하남시의 그린벨트 해제를 즉각 중단하고 이 지역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답 변)

○ 경기도 하남시에서 춘궁동·교산동·하사창동 일대 그린벨트 539만 8000㎡를 올 연말까지 해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지역은 일부 향토사학자 등으로부터 백제시대 유적의 존재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곳이나 아직까지 그린벨트 지역인 관계로 본격적인 조사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 상황에서 이 지역 일대를 문화재구역으로 지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통하여 중요성이 인정되는 유적에 대하여 문화재 지정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요지)

3. 미대사관 등의 건립에 대하여 지표조사의 타당성 및 동 건립계획의 철회 의견에 대한 견해

(답 변)

○ 문화재 지표조사 제도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시 문화유적 및 지표의 원형변경 없이 육안으로 조사하는 제도로서 동 사안은 서울시가 지표조사를 실시토록 명한 사안입니다.

○ 따라서 법에 규정된 절차 진행없이 특정 국가에게 법 적용을 배제한 채 불가입장을 통보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며 국내 사업자이든 외국 사업자이든 문화재보호법의 규정과 절차에 의거 문화재조사와 그에 따른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에 따라 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요지)

4. 사적 원구단 훼손문제 관련

4-1. 문화재청은 국가문화재의 보수, 복원사업 관련 사전에 설계도면의 점검과 공사 감독을 실시했는지 여부

(답 변)

○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 먼저, 국가문화재의 보수, 복원사업 시 당해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18조(수리 등), 시행령 제6조(수리) 및 시행규칙 제7조의 2(경미한 수리의 범위)에 의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감 있게 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이 중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설계도면의 점검과 아울러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경험과 실기이론 등이 검증되어 문화재청에 등록된 문화재 수리 기술자, 문화재 기능자 또는 문화재 수리업자로 하여금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원구단 주변 훼손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난 2001년 8월 원구단 주변지역 조경, 지하주차장 출입문 보수 등을 위한 현상변경 허가 신청이 있어 관계전문가 검토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일부 언론에 보도되어 알려진 출입문(협문)과 난간석의 경우는 (주)조선호텔 측에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규모를 변경하여 건립한 것으로 현장조사(2003.3.12)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청에서는 동 조사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중구청)와 조선호텔 측에 통보하여 시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 제출토록 하는 한편, 아울러 (주)조선호텔 및 관리단체인 서울시 중구청에 엄중 경고조치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조선호텔 측에서 협문 원상 복구 설계도를 작성 제출하여 와 문화재위원회 심의(2003.4.18)를 거쳐 원래 상태로 복구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황궁우(원구단)에 대하여는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서울시에 조경 및 시설정비계획을 관계전문가 자문을 통해 제출토록 하였는 바, 동 계획이 제출되면 이를 검토하여 황궁우(원구단)가 보다 효율적으로 보존·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요지)

5. 정동일대의 문화재보호지구 지정문제

5-1. 미대사관 건립부지는 문화재가 존재하는 터임이 분명함에도 지표조사의 실시는 건립 허용을 위한 수순이라고 보는데에 대한 견해

(답 변)

○ 문화재 지표조사 제도는 건축을 전제로 한 절차가 아니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입법된 제도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

○ 법치국가에서 내국인이든 외국국가이든 특정인·특정 국가에게 법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존·관리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문화재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문화재 지표조사가 실시되면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통상적인 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요지)

5-2. 서울시의 문화재보호조례나 건교부의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도 저촉되는 건물을 짓겠다면서 국내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행위가 과거 전례에도 있었는지?

(답 변)

○ 우리청은 문화재 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운영하고 있는 바, 동법과 관련한 개정요구 등 전례는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요지)

5-3.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는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건물을 짓기 위해 사전 지표조사를 실시할 이유가 있는지?

(답 변)

○ 일정 건설공사 시 500m 이내에 지정문화재가 있을 경우 지상의 문화재 및 경관보호를 위하여 현상변경 허가 유무를 검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땅속에 매장되어 있는 문화재의 보호를 위한 문화재 지표조사와는 별도의 허가사항으로 동 건의 경우 서울시에서 지표조사를 먼저 실시토록 명함으로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는 사안입니다.

○ 따라서 법에 규정된 절차 진행없이 특정 국가에게 법 적용을 배제한 채 불가입장을 통보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며, 국내 사업자이든 외국 사업자이든 문화재보호법의 규정과 절차에 의거 문화재조사와 그에 따른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요지)

5-4. 역사적 고증들이나 지리적인 자료들을 근거로 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우리 국민들에게 정동일대의 문화유적 현황과 그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답 변)

○ 현재 정동일대에는 구 러시아공사관, 정동교회, 약현성당, 성공회성당, 구 배제학당동관 등 많은 역사유적들이 분포되어 있으며 그동안 정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들이 학계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재청에서도 정동일대에 분포되어 있는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통하여 정동일대가 국민들의 생활 속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요지)

5-5. 정동일대를 문화재청이 서울시와 협의하여 문화재보호지구로 지정하여 개발을 방지하고 복원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답 변)

○ 정동일대 복원에 대한 당위성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등을 통한 정동일대의 복원에 대하여는 동 지역이 일제시대에 이미 훼손이 이루어져 근·현대사 과정을 통해 건축물이 건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유재산화 되어 있어 문화재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하여 보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따라서 동 지역의 보존·관리 문제는 도시기능과 문화재의 관계 등을 고려, 일차적으로 서울시에서 동 지역에 대한 학술 및 현황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도시정비계획 등과 연계한 문화재 보존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바탕으로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문화재청에서는 동 지역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가 보존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允盛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질의요지)

1. 문화재 관리 조직 기능 강화 관련

1-1. 문화재청이 차관급 기관으로 승격할 경우 문화재 관리 및 보존에 있어서 어떤 면이 효율적

일 것인가?

(답 변)

○ 우리 청은 문화재청의 차관청 승격에 맞춰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공통부서 보강과 문화재 분야별 전문행정체제 구축, 민간협력 확대 및 관광자원화 등의 기능 보강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본청을 4-5국(1기획관리관 포함)체제로 하고, 소속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기능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연구소를 증설할 계획이며, 아울러 문화재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연수 기능의 확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따라서 문화재청의 차관청 승격 시에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수립과 개발계획에 대한 통제조정 기능의 강화, 그리고 문화재의 활용과 국제교류 등의 업무에 있어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 또한 문화재 분야별로 조사·연구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설립과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등에 있어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요지)

1-2. 차관청 승격만으로 실무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한 관료를 충원할 수 있는지와 구체적인 방안으로 일각의 문화재청과 국립박물관의 통합 방안이 거론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

(답 변)

○ 문화재의 성공적인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풍부한 경험과 실무를 겸비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확충이 중요하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따라서 문화재청의 차관청 승격에 따른 조직개편 시 중요직위에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직 및 기술직 등으로 복수직화하는 등 전문인력의 확충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박물관은 동산문화재의 수집·보관·전시뿐만 아니라 교육·홍보 등 사회교육 기능 및 시민휴식공간 제공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표적 문화시설이므로 문화재청과 박물관의 인위적 통합보다는 각 기관의 역량을 전체적으로 제고하여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근무인력의 전문성을 보완·향상

하기 위한 인적교류는 필요하므로 향후 두 기간 간 인적교류 활성화 방안을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요지)

1-3. 차관급 승격 협조를 위해 일부 기자와 식사를 했다는 보도가 논란을 빚자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시민단체의 참여방안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고 해명했는데 보도내용과 해명 중 어느것이 맞는지?

(답 변)

○ 문화재의 온전한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현장 점검과 확인이 필수적임에도 문화재청에 지방조직이 없고 지방자치단체 인력체계 또한 열악하여 문화재청에서는 이의 보완을 위해 지난 2000년부터 민간인 자원봉사자를 문화재 행정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하는 등 국민과 함께 하는 문화재 행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는 국민의 문화재 보호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현장확인 행정을 위한 사업으로서 이를 보다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민·관 문화재관리기구의 구성방안에 대해 사전에 문화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 이 자리에 일부 언론사 기자가 참석한 것은 평소 문화재에 대해 관심과 이해가 많은 기자의 의견도 함께 수렴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결코 일부 언론사의 보도처럼 차관청 승격을 위한 홍보 목적이 아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요지)

2. 문화재연구소 유치 관련

2-1. 서울·충주·나주로 문화재연구소를 증설할 것이라고 공식화했음에도 번복하는 이유

(답 변)

○ 지방 문화재연구소의 증설과 관련해서 문화재청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문화재의 조사·연구기능의 강화와 전문화를 위하여 서울·충주·나주 등 권역별 지방 문화재연구소의 추가설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으로서 이를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광주 및 나주시의 문화재연구소 유치와 관련하여 문화재청에서 어떠한 결정이나 입장의 번복을 표명한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요지)

2-2. 문화수도 육성 방안으로 인해 지역 간 감

정과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예견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

(답 변)

○ 문화수도 육성과 관련해서는 지난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공약사항으로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추진내용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바가 없으며,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 정책의 총괄기관으로서 문화재의 보존관리와 관련하여 수립된 계획과 원칙에 따라 각 지방별로 균형 있는 지원에 충실을 기할 생각입니다.

○ 다만 문화재연구소의 유치와 관련한 지역 간 견해 차이 등에 대해서는 감정과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협의와 조정을 통하여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요지)

2-3. 문화수도라는 개념은 광주보다는 경주가 더 어울린다는 시각에 대해 국가 문화재정책 총괄청장의 견해

(답 변)

○ 문화수도의 육성과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주관부서가 따로 있는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 문화재청으로서 입장이나 의견을 표명하기는 어려운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와 상관없이 문화재청에서는 지역별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한 정책의 수립과 지원 등에 있어 특혜나 차별이 없도록 균형 있는 정책을 수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질의요지)

3. 현대미술관 건립과 관련한 문화재 등록문제

3-1. 광주시가 문화재청을 방문하여 문화재 등록 재고를 요청한 바 있는데 등록 재고 요청이유와 지역이기주의적인 발상 등에 대한 입장

(답 변)

○ 문화재 등록제도는 형성시기가 오래되지 않아 현 단계에서 역사적·학술적인 가치평가가 어렵고, 또한 보호를 하고자 하는 대상이 생활(학교, 은행, 종교시설 등)에 직접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근대에 형성된 건축물 등에 대하여 효율적인 보존방안을 강구하고자 기존의 지정문화재제도와 다른 등록문화재제도를 2001. 7월부터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 동 문화재 등록제도는 소유자의 이해와 협조를 통해 건축물 등을 보존·활용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유연한 보호수단(현상변경신고 등)

을 그 특징으로 하며 이러한 제도의 도입취지에 따라 현재 문화재로 등록된 것은 남대문로 한국전력공사 사옥 등 51건입니다.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주중앙초등학교 건물의 문화재 등록에 대한 조사 및 검토는 2002년 하반기에 동 초등학교 자모회로부터 동 건물의 보존가치 여부 조사요청(민원)이 있어 현지조사(2003.2)한 바, 1932년에 건립된 건축물로 그 상태가 양호한 점이 있으나 지역 미술계 인사들의 숙원사업으로 인하여 동 부지에 광주 현대미술관 건립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이와 관련, 광주시에서 동 부지에 현대미술관 건립계획이 기 수립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문화재 등록 시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여 줄 것을 실무적으로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3-2. 등록재고 요청에 대해 문화재위원회 결정에 달려 있다며 직접적인 해결방법을 강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여부

(답 변)

○ 중앙초등학교 건물의 문화재 등록에 대한 조사 등은 앞 (3-1)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며 기본적으로 문화재의 등록은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이루어짐을 말씀드립니다.

○ 참고로 광주시 실무자들에 대하여 이러한 내용과 절차를 설명, 이해를 도모토록 한 바 있으며, 동 건물에 대하여는 지난 문화재위원회 심의(2003.4.18)에서 광주시에 동 건물을 보존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권고하기로 의결되어 동 내용을 광주시에 통보할 예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요지)

3-3. 정부 측의 광주시 문화수도 육성에 대한 지침 하달 여부

(답 변)

○ 우리 청에서는 동 사안에 대하여 아는 바 없으며 기본적으로 문화재의 등록 여부는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짐을 말씀드립니다.

(질의요지)

4. 백제유적지 그린벨트 해제 관련

4-1. 하남시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백제 관련

유물·유적이 집중 발굴되는 곳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동안 문화재청의 관리계획 마련 여부

(답 변)

○ 하남시가 시 외곽 춘궁동·교산동·하사창동 일대 539만 8000㎡의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지역에 교산동 건물지, 춘궁동 동사지, 천왕사지, 소위 능너머고분 등이 산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의 발굴결과 뚜렷하게 백제 관련 유물·유적이 발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교산동 건물지의 경우 일부 학자와 언론에서 백제 왕궁지로 추정하고 있으나 기전문화재연구원의 4차에 걸친 발굴결과 통일신라 때부터 조선후기까지의 지방 관청 자리로, 광주 치소(治所)가 남한산성으로 옮기기 전까지 자리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춘궁동 동사지의 경우도 후삼국에서 고려 초기의 절터로 현재 사적 352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고, 천왕사지의 경우 아직까지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으로 백제와의 관련성을 속단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 소위 능너머고분군의 경우도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조사 결과 고분의 가능성이 극히 낮은 것으로 밝혀지는 등 백제 관련 유물·유적이 집중 발굴되고 있다는 견해는 아직까지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 그동안 문화재청에서는 이 지역의 미사리 선사유적지(사적 269호), 이성산성(사적 422호), 춘궁동 동사지(사적 352호) 등 3개 유적을 사적으로 지정·보호하고 있으며 교산동 건물지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 발굴분과위원회를 거쳐 지방문화재로 지정토록 권고한 상태입니다. 또한 교산동 건물지 및 천왕사지에 대한 발굴조사·토지 매입비를 지원하는 등 보존에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 하남시 문화유적 중장기 발전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동 계획에 따라 문화유산이 보존·관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재 보수·정비 및 발굴비 지원 (1988~2003)

- 문화재 보수·정비: 3234백만 원 (국비 1810, 지방비 1434)

· 이성산성·춘궁동 동사지·교산동유적 토지 매입, 광주향교 및 연자방아 보수

- 시굴 및 발굴비 지원: 2840백만 원 (국비 1020, 지방비 1820)

· 이성산성(820백만 원), 교산동 건물지(800백만 원), 천왕사지(600백만 원), 미사리 선사유적(620백만 원)

* 2003년도 토지매입(국비 11.5억): 이성산성(5억), 춘궁동 동사지(3.5억), 교산동유적(3억) (질의요지)

4-2. 교산동 토성, 능너머고분 등의 지표조사 결과, 문화재위원회의 보존대책 수립 및 하남시에 통보한 사항은 무엇이며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연기하고 있는 이유

(답 변)

○ 교산동 건물지는 기전문화재연구원의 4차에 걸친 발굴결과 통일신라 때부터 조선후기까지의 지방 관청 자리로, 이성산성, 천왕사지 등과 함께 중세도시의 주치(州治)를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중요성이 크다는 의견이 있어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를 거쳐 경기도에 지방문화재 지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 또한 소위 능너머 고분군의 경우 국립문화재연구소 탐사 결과 4곳에서 불에 탄 토양이 있을 가능성과 또 다른 4곳에서 석물(石物)이 있을 가능성을 제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석물은 큰 돌 또는 돌들의 군집을 의미하는 것으로 석실고분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보존 대책을 마련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정밀조사 후, 결과에 따라 문화재 지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요지)

4-3.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채 그린벨트 해제 시 문화유산이 무차별적으로 훼손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답 변)

○ 동 지역은 일부 향토사학자 등으로부터 백제시대 유적의 존재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곳이나, 아직까지 대부분이 사유지인 관계로 본격적인 조사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역사적 가치의 증거가 어려워 현 상황에서 이 지역 일대를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조사 및 학술적 연구를 통하여 중요성이 인정되는 유적에 대하여 문화재 지정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남시와 협의 하남시 문화유적 중장기 발전 연구용역에 이 지역에 대한 보호 대책이 마

련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질의요지)

5. 한일 문화재교류 약정 체결 관련

5-1. 약정 체결에 따른 한일 양국 간 문화교류의 전망

(답 변)

○ 한일 문화재 교류 및 협력을 위한 토의기록 체결의 의의는 그동안 양국의 문화재 분야 교류가 발굴 및 문화재 복원 기술 습득을 위한 직원 연수, 민속예능인 교류 등 부분적이고 산발적인 인적교류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앞으로의 문화재 분야 교류 및 협력은 전문가 교류, 유형 및 무형문화재의 교류,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공식적, 체계적인 교류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 이번 약정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의 문화재 교류와 상대국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한편 우리 문화재 보존관리 기술향상 및 국제문화재 보존협력체계 구축, 문화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 강화 등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질의요지)

5-2. 구체적인 사업인 부속사업서(Action Planning) 체결을 위한 준비

(답 변)

○ 양국은 ROD 체결의 실천을 위한 후속조치로 구체적인 교류·협력의 내용을 정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무자 차원의 협의를 실시하고 교류실적 및 교류계획에 관한 상호 확인을 거쳐 그 결과를 부속사업서로 체결할 것을 합의하였습니다.

○ 따라서 문화재청에서는 우선 문화재 전문가 및 행정가의 상호 교류를 추진하고자 하며 일본 측과 실무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구성, 부속사업서 내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를 거쳐 2003년도 하반기에 부속사업서를 체결하고 2004년도부터는 체결된 부속사업서를 토대로 예산 반영 및 해당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질의요지)

6. 문화재 관리체계 관련

6-1. 문화재청의 문화재 관리체계, 행정시스템이 서울시보다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문화재청의 문화재 보호에 대한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는데 대한 견해

(답 변)

○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의 지적대로 관리체계 및 행정시스템의 취약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세세한 부분까지를 관리하고 감독하기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그러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와는 그 역할과 업무의 범위 등에 차이가 있어 일괄적으로 문화재청의 관리체계와 행정시스템을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문화재청의 차관청 승격 등과 연계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한 조직과 시스템의 강화를 통하여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및 통제·조정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질의요지)

6-2. 차관청으로 승격해도 지자체와 관리권한을 해결하지 않고는 문화재청의 권위에 대한 잦은 지적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답 변)

○ 현재의 문화재청(1급)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리와 추진사업 등에 대한 통제·조정에 한계가 있으며 차관청으로 승격한다 해도 이에 걸맞는 조직과(국·과·소속기관 등) 인력의 확충 없이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에 문화재청에서는 차관청으로의 승격에 맞는 조직체계의 구성과 전문인력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차관청 승격에 대비한 조직개편안과 인력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위원님의 지적대로 지방자치단체와의 권한 및 관계설정을 위해서도 관련제도 및 법령 등에 대한 개선과 정비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요지)

7. 국가지정문화재 안에서 동물의 사육·번식 등의 행위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창덕궁관리소의 토끼 방사에 대해 문화재청이 아무런 시정조치를 않은 이유

(답 변)

○ 창덕궁 후원은 북악과 북한산 생태계와 연결되어 있어 1970년대까지 야생토끼, 꿩 등이 서

식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야생동물을 찾아보기가 어려워 동물 생태계를 파악하고 관람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1년 토끼 50마리를 방사한바 야생고양이에 의한 피해와 자연도태로 현재 약 10여 마리가 생존하고 있습니다.

○ 창덕궁 후원에는 수목, 풀 등 토끼먹이가 풍부하고 고 건축물에는 석간주, 방충·방염제 등이 도포되어 있어 토끼로 인한 목조문화재의 피해 실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토끼에 대해 지속적인 관찰을 실시하고 문화재 피해 등 문제점이 발생되면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토끼에 대한 조치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질의요지)

8. 이라크 문화재 약탈과 관련

8-1. 전시상황 시 국내 문화재 보존관리 대책

(답 변)

○ 비상시 문화재 보존관리 등을 위한 대책으로는 자체 충무계획, 문화관광부 집행계획(부록 #1 문화재보호관리) 등이 있으며 전시 등 유사시 문화재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있습니다.

○ 다만 충무계획 등은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비밀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

8-2. 해외로 약탈된 유물에 대한 역사적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구축과 약탈문화재 목록 공개 거부 이유 및 향후 해외 약탈문화재 반환 계획

(답 변)

○ 현재 해외 소재 우리나라 관련 문화재는 20개국 7만 5000여 점이 확인되고 있으며 기타 개인 소장 등을 추산하면 더욱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어떤 이유와 경로를 통해 유출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청에서는 우선 이들에 대한 정확한 소재 및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산하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연차사업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프랑스, 영국, 러시아, 일본 등의 소장 유물이 많은 일부 박물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조사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게 되면 이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Data-base)하여 공개할 계획에 있습니다.

○ 현재 해외 약탈문화재에 대한 목록은 없으

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까지 확인된 해외 소재 우리 문화재 관련 자료는 인쇄물로 간행되어 각 도서관 등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海外所在韓國文化財目錄’, 1984, 401쪽 ; ‘海外所在 韓國文化財 目錄’, 1986, 767쪽 ; ‘日本所在 韓國典籍 目錄’, 1991, 412쪽 ; ‘海外所在 韓國文化財 目錄’, 1993, 516쪽 ; ‘日本所在文化財圖錄’, 1995, 180쪽 ; ‘日本所在韓國佛畫圖錄’(京都, 奈良), 1996, 162쪽 ; ‘프랑스 국립기메동양 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1999, 347쪽)

○ 문화재 반환은 당사국과의 긴밀한 협조가 없으면 실효가 적은 사안이므로 우리 청에서는 해당국과의 지속적인 교섭 및 국제기구 등을 통한 반환 분위기 조성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산하 불법문화재 반환 촉진을 위한 정부 간 위원회의에 지속적으로 참가하는 한편(정기회 격년 개최), 관련 정보 수집 및 반환 추진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리 청 내에 이를 전담할 국제교류과(가칭) 신설 등을 추진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도 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민간 차원의 환수 방안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민간단체 등과도 자료공유 및 기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鄭範九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질의요지)

1. 동대문 균열부위의 해체 관련

1-1. 체성의 동벽과 서벽의 균열현상, 홍예석과 체성의 슬라이딩 이탈현상, 옹성의 균열 등 부동침하에 의해 발생하는 전반적인 현상은 외면하고 서북측 옹성에서 발생한 균열만을 문제삼는 것은 총체적이고 영구적인 문화유산 관리라고는 파악되지 않는데 이에 대한 견해

(답 변)

○ 동대문(홍인지문)은 2000. 10. 26 서북측 옹성에 균열 등 변형이 발생하여 성곽관계 전문가와 문화재전문위원 등이 3차례 현지조사와 2001. 5~10월 한국건설안전기술원에서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 그 결과 홍인지문 전체 지반의 교란이나 침하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현재는 지반이 안정화된 상태이나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지하수위가 저하되었고 옹성 복원 후 새로 하중이 추가된 점을 고려하여 지반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2차례의 문화재위원회 심의와 설계심사회의 등 관계전문가 검토회의에서 지반 보강에 대한 논의를 거쳤으며 지난 3월 26일에는 지질, 진동, 구조, 시공 등 각 분야별 관계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된 기술지도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지반 보강을 실시하되 좀더 신중하게 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균열 등 변형 구간의 응성을 현 지표하 1단까지 해체 한 후 성벽의 속채움과 성벽 하부 축조상태를 확인한 다음 기술지도위원회의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지반 보강 방안을 마련,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아 시행할 계획입니다.

(질의요지)

1-2. 홍인지문 균열의 주범인 지하수위 하락의 원인이 분명히 규명되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치유책을 제시하며 우리의 문화유산이 더 이상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

(답 변)

○ 지하수위 변동 등에 의한 부동침하 발생 등 근본적·종합적인 원인규명에 대하여는 향후 관계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홍인지문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보존·관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요지)

2. 경남 함양 국가지정문화재 소실 관련

2-1. 정여창 선생 고택의 화재를 알고 있는지와 지방문화재 관리실태 등에 대한 대책

(답 변)

○ 먼저 불의의 화재로 중요한 문화재가 소실된 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지적하신 정여창 선생의 고택 화재발생 다음날인 2003년 2월26일 화재현장에 담당직원을 파견, 화재실태 등을 조사토록 하여 그 내용을 파악하였는 바

- 화재 당시 동 고택에는 총 10개의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었으나 당시 불시에 발생한 화재로 인한 황급한 상황에서 관리인 등이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중요문화재에 대하여 불시시찰 및 점검이 필요하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향후 현 지실태조사 시 등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감독해 나갈과 아울러

-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문화재 관리자 교육, 문화재 수리기술자 교육, 문화재 관계관 연석회의 등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향후 부족한 문화재 관리인력, 조직확충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하여 나갈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질의요지)

3. 남북문화재 교류실태 관련

3-1. 국제교류를 담당하는 부서를 만들 필요성에 대한 견해

(답 변)

○ 문화재청이 청으로 승격된 1999년 이후 조직개편 과정에서 조직과 인력 예산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여 점차 늘어나는 국제교류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데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문화재청에서는 국제교류 업무의 내실을 추구하는 한편 문화재 관련 국제협약 가입 및 국제기구 진출 활동의 체계적 추진, 세계유산 등록·관리 및 문화유산 홍보 활성화, 국가 간 교류 다변화 및 남북한 문화재 교류에 관한 기획·조정업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해 국제교류 전담과를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질의요지)

3-2. 민간단체들과 북한 간에 남북문화재 교류를 추진함에 있어 관련 법규와 제도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의견

(답 변)

○ 민간단체들의 남북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 지원, 예산 지원 등을 포함한 지원책과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시각에서의 국가 차원의 총괄적 조정이 필요합니다.

○ 그러나 현행 민간 남북교류 지원 및 조정의 총괄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및 남북협력기금을 통하여 통일부에서 담당하고 있고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 대다수인 남북교류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문화재청 차원에서의 예산 지원 및 감독 등 문화재 교류의 주무기관으로서의 총괄적 조정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 따라서 문화재청에서는 설립추진 중인 문화재기금의 일부를 민간교류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국가정책과 모순되

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행정지도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요지)

3-3. 문화재 복원 관련 남북 간의 과학기술 및 장비 등 기술적 상호교류의 현황

(답 변)

○ 북한 벽화 및 금속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 간의 문화재 교류를 추진하였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실적은 없습니다.

○ 향후 남북 문화재 당국 및 국제기구, 민간 단체를 통하여 직·간접 협의 체계를 구축하여 문화재 복원 관련 약품 및 재료, 기술 및 장비 등 기술적 교류가 구체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요지)

3-4. 남북 문화재 교류와 관련하여 학술교류 외에 남북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만주, 중국 등 해외에 우리 문화재가 있는 곳 및 서로 간의 문화재들을 실제로 발굴, 조사할 계획

(답 변)

○ 중국 내의 우리 문화재 조사는 소수민족정책과 관련한 정치적 문제로 인하여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 따라서 한중 고고학문화공동학술연구협의서(2001.2.21) 체결, 도성(都城) 유적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우회적 방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를 통한 우호·선린관계 수립 후 남북합동조사단 등을 관계국과 협의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질의요지)

4. 문화재안내판 정비사업 추진 관련

4-1. 문화재안내판 모형 연구집에 의거 통일성 있게 교체 및 문화재안내판 제작, 설치, 규격, 등 제안에 대한 대책

(답 변)

○ 먼저 문화유적의 쾌적한 관람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문화재안내판 정비사업에 대한 위원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문화재안내판 정비사업은 2000년도 8월 문화재청에서 발간한 문화재안내판 모형개발 용역 연구집에 근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교체하고 있으며 교체 시 방문객 편의를 위한 시설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 경관 친화적으로 설치하

고 있습니다.

○ 또한 그 내용에 있어서도 중학교 수준으로 쉽고 간결하게 하고 전문용어 사용은 가급적 억제하며 부득이 전문용어 사용 시 한자를 병기토록 하는 등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남 화순 쌍봉사 불상의 안내판 내용은 수범사례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향후 안내판 정비 시 참고토록 통보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안내판 설치와 관련 시·도 단체의 이미지 통합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안내판 모형 작성방안에 상호 의견교환 필요성은 매우 적절하신 제안이라고 사료되며, 각 시·도 주관으로 작성한 소관 문화재안내판 문안집(책자) 상호교환 등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鄭柄國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질의요지)

1. 문화재 긴급 보존 및 수리시스템 구성 대책
(답 변)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문화재 긴급 보존 및 수리 필요 시 예산확보 및 집행을 위한 행정적 절차로 다소 시일이 걸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 이에 우리 청에서는 그 시일을 최대한 줄이고자 사전에 예상하지 못한 문화재 훼손 등 응급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긴급보수 용도인 사후관리비 예산을 편성·운용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긴급보수비를 확보하도록 권고하고(2002.4 / 2003.3) 있습니다.

2003년도 사후관리비 예산: 41.4억원(국비 20.7 지방비 20.7)

2002년도 사후관리비 예산: 41억원(국비 20.5 지방비 20.5)

2001년도 사후관리비 예산: 5.2억원(국비 2.6 지방비 2.6)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시적 관리시스템을 구성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국가가 긴급보수비를 전액 부담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문화재 긴급 보존 및 긴급 보수를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질의요지)

2. 무형문화재 지정의 비원칙성과 비체계성으로 인해 국가지정문화재의 가치 훼손이 수십 년

동안 진행되어 왔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

(답 변)

○ 지적하신 사항은 문화재청이 2002. 9. 9 ~ 2003. 2. 19간 한국 역사민속학회(회장: 박경하)에 의뢰하여 실시한 ‘중요무형문화재 단체종목 전승 실태조사 및 관리 방안 연구’ 용역보고서에서 제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동 연구용역사업은 놀이, 의식 등 지역별로 전승되고 있는 중요무형문화재 단체종목의 전승 실태를 파악하여 전승지원 및 관리방안의 마련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의 확보를 목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56개 보유 단체를 대상으로 종목별 전승현황, 사회교육현황, 보유장비실태, 지원 관리 방안, 해당 전승지에서 차지하는 문화적 기능과 단체종목의 효율적 분류시안 등에 대하여 한국역사민속학회 소속 32명의 연구자가 참여하여 조사연구를 하였습니다.

○ 조사결과 무형문화재 지정제도 시행 초기인 1970-80년대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대통령상 수상작을 주요 발굴원으로 하면서 일부 종목에 있어서 원형고증이 부실한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을 신앙과 관련된 공동체 놀이인 고싸움놀이의 경우 놀이와 깊은 관련이 있는 당제 등이 지정과정에서 고려되지 않는 등 일부 개선할 요소들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이에 대하여는 앞으로 관계 전문가와 의논하여 원형복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재구성하는 방안과 무형문화재의 체계적 재분류 방안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요지)

3. 등록문화재에 대한 근본적 대책

3-1. 공공성이 강한 건조물과 개별 건물을 분리하여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답 변)

○ 등록문화재제도는 형성시기가 얼마되지 않아 현 단계에서 역사적·학술적으로 가치평가가 어려운 건조물·시설물 등을 보호해 나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로 2001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동 제도의 도입에 따라 건축물 등을 조사·등록한 결과 학교, 종교시설, 병원 등 공공성 건

축물이 등록된 경우가 많았으며 개인소유의 경우는 자료조사가 충분치 않아 등록이 적었다고 봅니다.

○ 우리 청에서는 현재 각 시·도로 하여금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사업(2001~2004)을 실시토록 하고 있는 바, 동 조사가 완료되면 이를 분야별로 분류 평가하여 문화재로 지정·등록해 나가는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 이와 관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검토하여 등록문화재가 효율적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질의요지)

3-2. 우리 등록문화재제도도 실효성을 가지려면 지정문화재 못지 않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답 변)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공감하며 등록문화재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요지)

4. 문화재 수리기술자 정책 관련

4-1. 일정한 현장경험의 기한을 정해 그러한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에 한해 문화재 수리기술자 시험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답 변)

○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문화재 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학력 및 경력 등 응시요건을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 지침에 따라 폐지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학력 및 경력제한 폐지로 인한 합격자의 자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필기와 실기 및 면접시험에서 전문성과 기술력 등을 더욱 철저히 검증토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 응시요건 폐지로 인한 기술자와 기능자 자격 저하 등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경력 재규정 등 응시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요지)

4-2. 문화재수리자격증 대여 감시체제와 자격증 대여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답 변)

○ 문화재수리업은 문화재보호법의 등록요건에

따라 해당업종의 문화재 수리기술자(1~4인)를 보유하여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등록된 문화재 수리업체는 보수·단청업(112개 사), 조경업(39개 사) 등 6개 업종에 총 201개 사이며 이들 업체에 소속된 수리기술자는 548명입니다.

○ 등록증 대여 방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문화재 수리업체 및 공사현장의 실태 조사를(연 2~3회 조사)하는 등 수리기술자 자격증 대여여부에 대한 확인 조사를 강화하고 등록증 대여가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엄격히 하여 대여행위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격증 대여에 대해서는 현재 등록취소 등 행정처벌 외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을 개정 중(입법예고, 부처협의 완료, 규제개혁위원회 협의 예정)에 있습니다.

○ 그리고 수리업자 등록을 수시등록제로 변경하여 현행 일시에 수리기술자를 확보해야 하는 부작용을 해소하고 수시로 기술자를 고용하여 등록할 수 있게 함으로써 등록증 대여 소지를 원천적으로 방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